



2023.3.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추계&세제 이슈 | 제22호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CONTENTS

-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사업 재정소요 추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전망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조세동향 및 이슈 |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추경	1~11월
총수입(A)	341.8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09.1	571.6
국세수입	203.0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6.6	373.6
세외수입	25.3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28.3	27.4
기금수입	113.3	122.6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84.1	170.5
세입외	0.1	0.0	0.1	0.1	0.1	0.1	0.6	0.4	0.1	0.1	—	0.1
총지출(B)	323.3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79.5	622.5
예산	225.3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49.8	401.7
기금	95.8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29.7	209.5
세출외	2.3	0.3	0.2	0.2	0.3	4.0	6.6	11.2	0.4	2.6	—	11.2
통합재정수지(A-B)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70.4	-50.8
관리재정수지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0.8	-98.0
국가채무(중앙정부)	425.1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7.7	1,045.5
(GDP 대비, %)	(29.5)	(30.9)	(32.2)	(33.6)	(34.0)	(34.2)	(34.3)	(36.3)	(42.2)	(45.3)	(48.2)	—

주: 1.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 1~11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추경	2023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3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2	22.9
과학기술	5.3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9.9
교육	45.3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96.3
교통 및 물류	17.2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2.5	20.8
국방	31.2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1.5	55.3
국토 및 지역개발	6.0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4.2
농림수산	17.7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7	24.4
문화 및 관광	4.5	5.0	5.2	6.2	6.7	6.9	6.3	7.2	8.1	8.5	9.1	8.6
보건	7.8	8.8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6	20.0
사회복지	84.8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6.5	20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	16.4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69.4	26.0
예비비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5.5	4.6
일반·지방행정	54.1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10.8	112.2
통신	7.3	7.3	6.8	6.4	6.2	6.2	6.2	7.0	8.0	8.2	8.8	9.0
통일·외교	3.0	3.1	2.9	3.1	3.8	3.3	3.7	3.9	3.7	4.2	5.8	6.4
환경	5.8	6.1	6.1	6.7	6.9	7.1	7.0	8.5	9.3	10.2	11.5	12.2

주: 1.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출외는 제외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1 통권 제22호

Contents

주요 재정총량 지표	1
I. 재정추계 동향	
재정추계 동향	7
2022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동향	12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14
입법 재정소요 추계	17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8
의안 비용추계 사례	30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49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50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재정전망	61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69
II. 조세 동향 및 이슈	
조세 동향	87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88
맥주 및 탁주 등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 조정	93
최근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 동향	95
조세 이슈 및 분석	99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100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11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129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43

I

재정추계 동향

재정추계 동향
입법 재정소요 추계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재정추계 동향

2022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동향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22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국가채무 현황 및 국고채 발행 계획

2022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45.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48.9조원

- 2022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잔액은 1,045.5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05.3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0.1조원 증가, 외평채 잔액은 1.1조원 증가¹⁾

※ 2022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되므로 11월 기준으로 작성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	국채 합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3)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2)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3)	937.0	843.7	82.2	11.2	2.0	0.1
2022추경	1,037.7	(48.2)	1,035.8	937.5	85.9	12.3	1.9	0.1
2022.1	955.5	—	953.4	858.7	83.4	11.3	2.0	0.1
2022.2	973.6	—	971.5	877.6	82.5	11.3	2.0	0.1
2022.3	981.9	—	979.9	885.7	82.8	11.4	2.0	0.1
2022.4	1,001.0	—	999.0	904.3	83.0	11.8	2.0	0.1
2022.5	1,018.8	—	1,016.7	921.9	83.2	11.6	2.0	0.1
2022.6	1,007.5	—	1,005.5	910.3	83.2	12.0	2.0	0.1
2022.7	1,022.0	—	1,020.0	923.6	84.3	12.0	2.0	0.1
2022.8	1,030.7	—	1,028.7	933.4	82.8	12.4	2.0	0.1
2022.9	1,029.1	—	1,027.0	931.4	82.6	13.1	2.0	0.1
2022.10	1,038.2	—	1,036.2	940.7	82.4	13.0	2.0	0.1
2022.11	1,045.5	—	1,043.5	948.9	82.2	12.3	1.9	0.1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3.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11쪽.

2022년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77.3조원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104.7조원, 차환 규모는 72.6조원

- 2022년 당초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66.0조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1.3조원 증가(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음)
- 2022년 당초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의 총 발행 규모는 76.2조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5.0조원 증가(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추가적인 적자보전 없음)
 -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 중 일부를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
- 2022년 국고채 발행 실적은 168.6조원으로 추경 예산 177.3조원 대비 8.7조원 감소
- 2023년도 예산 확정(2022.12.24.)으로 2023년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으로 결정

표 2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2022			2023 예산
			본예산	추경	실적	본예산	추경	실적	
총 발행	101.7	174.5	176.4	186.3	180.5	166.0	177.3	168.6	167.8
순증	44.5	115.3	113.2	123.1	120.6	93.4	104.7	97.3	61.5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93.5	104.0	88.2	76.2	91.2	86.2	45.8
차환	57.2	59.2	63.2	63.2	59.9	72.6	72.6	71.4	106.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1.12.24.,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2.12.26.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고채 발행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

2022년 말 국고채 잔액은 937.5조원이며, 2022년 국고채 발행 실적은 168.6조원, 상환은 74.8조원

표 3 2021년 및 2022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2021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846.2	742.0	759.4	769.3	787.3	806.2	804.3	819.9	832.7	831.7	841.9	848.1	843.7	—
발행	186.3	15.6	17.7	17.2	18.2	19.1	18.3	18.0	16.0	11.5	12.8	10.4	5.8	180.5
상환	65.2	0.3	0.3	7.2	0.2	0.3	20.2	2.3	3.2	12.4	2.6	4.3	10.2	63.6
	2022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37.5	858.7	877.6	885.7	904.3	921.9	910.3	923.6	933.4	931.4	940.7	948.9	937.5	—
발행	177.3	15.4	19.3	18.5	18.9	17.8	14.6	15.6	12.1	11.9	11.2	9.5	3.8	168.6
상환	80.1	0.4	0.4	10.4	0.3	0.2	26.1	2.3	2.3	12.0	3.8	1.3	15.2	74.8

주: 2022년의 경우 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1~12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2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은 91.2조원이며, 2022년 적자보전 실적은 86.2조원

- 2021년의 경우 세수 호조로 추경 기준 104.0조원의 일반회계 적자보전 계획은 실제 88.2조원만 집행

표 4 2021년 및 2022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

(단위: 조원)

2021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4.0	11.0	13.0	13.0	6.0	—	18.0	6.0	6.0	10.0	—	—	5.2	88.2
2022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주: 2022년의 경우 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1~12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고채 금리 동향

2022년 12월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57%로 11월 이후 하락하여 연평균 조달금리는 3.17% 수준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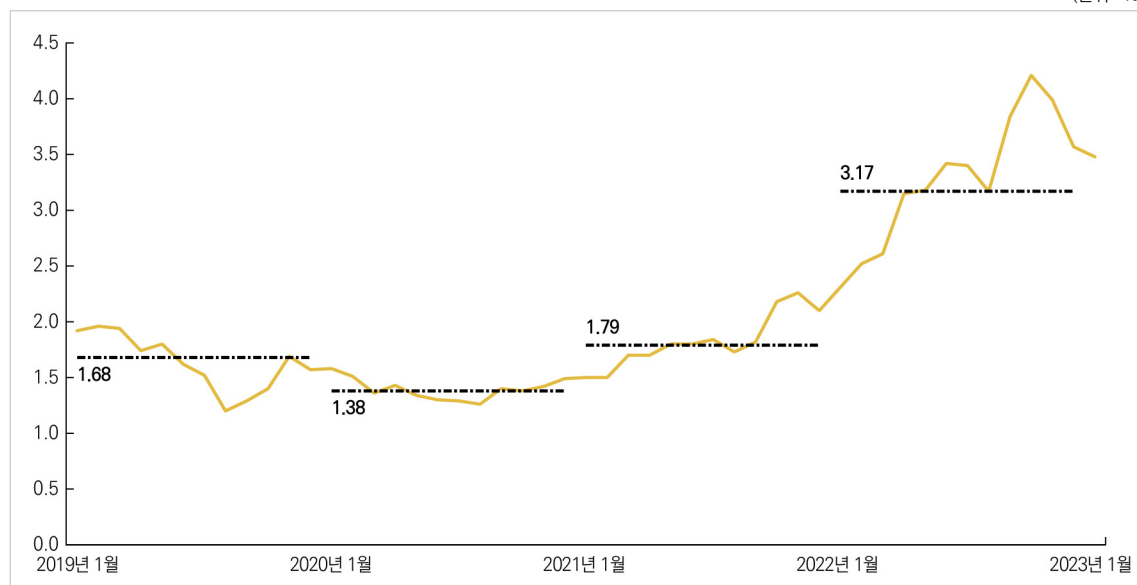
(단위: %)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조달금리		1.79	2.31	2.52	2.61	3.15	3.18	3.42	3.40	3.17	3.84	4.21	3.99	3.57
평균 유통금리	3년물	1.798	2.189	2.242	2.663	2.958	3.027	3.550	3.009	3.685	4.186	4.185	3.689	3.722
	5년물	2.011	2.396	2.468	2.856	3.172	3.256	3.653	3.067	3.781	4.175	4.263	3.697	3.743
	10년물	2.250	2.586	2.675	2.969	3.242	3.326	3.636	3.127	3.721	4.096	4.242	3.667	3.730
	30년물	2.310	2.524	2.632	2.817	3.163	3.133	3.477	3.048	3.570	3.837	4.073	3.689	3.683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2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3년 2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동향

김 우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국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2022년 11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방향과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2. 민간자문위원회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 보고(2023.1.5.)

공적연금 개혁의 4가지 원칙 제시

-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재원조정을 하되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 확보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및 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활성화
- 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국민연금·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별 개혁방향 및 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계획 제시

- 국민연금은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수급연령 조정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고려
 -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논의
 - (수급연령) 수급개시연령 및 가입상한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나 퇴직 후 노후소득 공백 문제 및 제도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사각지대 해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기초연금은 연금액, 대상 범위 조정 등 고려
 - ▶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반영하되, 기초연금액의 과도한 인상 시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
 - ▶ 대상 범위의 조정과 하위 소득자에 대한 차등 지원 검토
 - * 대상 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문제는 국민연금·퇴직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에 따라 접근
- 직역연금은 2015년 개혁의 성과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검토
 - ▶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 증가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 (군인연금) 2015년 직역연금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 방안 검토
 - ▶ (사학연금)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방안과 구조개혁 방안을 폭넓게 검토
 - ▶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입률과 연금수급률을 제고하는 방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다른 제도로 활용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검토

3. 향후 추진 계획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

- 민간자문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도출한 연금개혁 방안을 기초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참고]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 동향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2023년 3월에 발표하고,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에 앞서 시산결과를 발표(2023년 1월)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주: 1.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

2. () 값은 적립기금 규모

자료: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1. 총괄

2022회계연도의 총세입(총계기준)은 573.9조원, 총세출은 559.7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3.1조원)을 기록

표 1 2022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추경예산	총세입(A)	총세출(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합계	FY2022(a)	573.5	573.9	559.7	14.2	5.1	9.1
	FY2021(b)	506.7	524.2	496.9	27.3	4.0	23.3
	(a-b)	66.8	49.8	62.8	-13.1	1.1	-14.2
일반 회계	FY2022(a)	495.2	493.9	485.0	8.8	2.8	6.0
	FY2021(b)	424.4	438.4	417.7	20.6	2.6	18.0
	(a-b)	70.8	55.5	67.3	-11.8	0.2	-12.0
특별 회계	FY2022(a)	78.3	80.1	74.7	5.4	2.3	3.1
	FY2021(b)	82.3	85.8	79.1	6.7	1.3	5.3
	(a-b)	-4.0	-5.7	-4.4	-1.3	1.0	-2.2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 2.10.

2. 총세입 및 총세출

총세입¹⁾은 573.9조원을 징수하여 전년(524.2조원) 대비 49.8조원 증가, 예산대비 0.4조원 초과 수납

-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전년(344.1조원) 대비 51.9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예산 대비 0.7조원 부족 수납
 - ▶ 자산세수의 예산대비 수납액(조원): 양도소득세 △2.0, 상속·증여세 △1.3, 증권거래세 △1.2, 종합부동산세 △1.8

1) 총세입(총계기준)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으로 총수입과 다른 개념임. 총수입은 총세입에 기금수입을 더하고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 세외수입은 178.0조원으로 전년(180.1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1.1조원 초과 수납

표 2 2022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국세수입					국세외수입					총세입 증감	
	21년 결산	22년		증감		21년 결산	22년		증감			
		추경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추경예산	결산	전년대비	예산대비	전년대비	예산대비
계	344.1	396.6	395.9	51.9	△0.7	180.1	176.9	178.0	△2.1	1.1	49.8	0.4
- 일반회계	332.5	386.2	385.2	52.7	△1.1	105.9	109.0	108.7	2.8	△0.3	55.5	△1.4
- 특별회계	11.6	10.4	10.8	△0.8	0.4	74.2	67.9	69.3	△4.9	1.4	△5.7	1.8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 2.10.

총세출은 559.7조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62.8조원 증가

- 총세출은 559.7조원을 집행하여 전년(496.9조원) 대비 62.8조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77.7조원 대비 96.9%의 집행률을 보임
 - ▶ 재정지출의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의 지출 확대 편성 등에 기인

표 3 2022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추경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초과지출 승인액 등(C)	예산현액 (D=A+B+C)	지출액(E)	집행률(E/D)
계	573.5	4.0	0.2	577.7	559.7	96.9
- 일반회계	495.2	2.6	0.0	497.9	485.0	97.4
- 특별회계	78.3	1.3	0.2	79.8	74.7	93.6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 2.10.

- 불용규모는 12.9조원(불용률 2.2%)으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1조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2.1조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2조원) 등에 주로 기인
 - ▶ 불용(12.9조원) = 예산현액(577.7조원) - 총세출(559.7조원) - 이월액(5.1조원)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3.1조원)으로 전년대비 14.2조원 감소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0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국채상환 등으로 처리 예정
 - ①지방교부세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①]의 30% 이상),
③국채상환([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① - ②]의 30% 이상)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 예정

표 4 연도별 세계잉여금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0	11.3	13.2	2.1	9.4	23.3	9.1
- 일반회계	6.1	10.0	10.7	0.06	5.7	18.0	6.0
- 특별회계	1.9	1.2	2.5	2.1	3.6	5.3	3.1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 2.10.

입법 재정소요 추계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세 기본법안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신 헌 태 ·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4835)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 203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78건*(전체의 38.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3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56건
- 수입법률 15건 및 지출법률 37건 등 52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

수입법률 15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17조 4,591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연평균 16조 8,632억원, 지방: 연평균 5,959억원 수입 감소 예상

지출법률 37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7,76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7,136억원, 지방: 연평균 62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1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1.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2년 4분기 국회는 203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8.4%인 78건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52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¹⁾,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15건²⁾,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37건³⁾

1)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25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이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3년 발간예정)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2) 수입 15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91개(수입증가 5개, 수입감소 86개 요인)

3) 지출 37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59개(지출증가 59개 요인)

표 1 2022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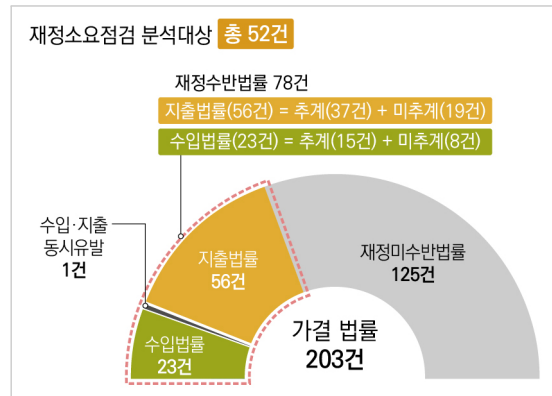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203	78 ²⁾ (52)	23 (15)	56 (37)

주: 1) ()안은 추계가 곤란한 26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를 점검한 법률 수

2)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1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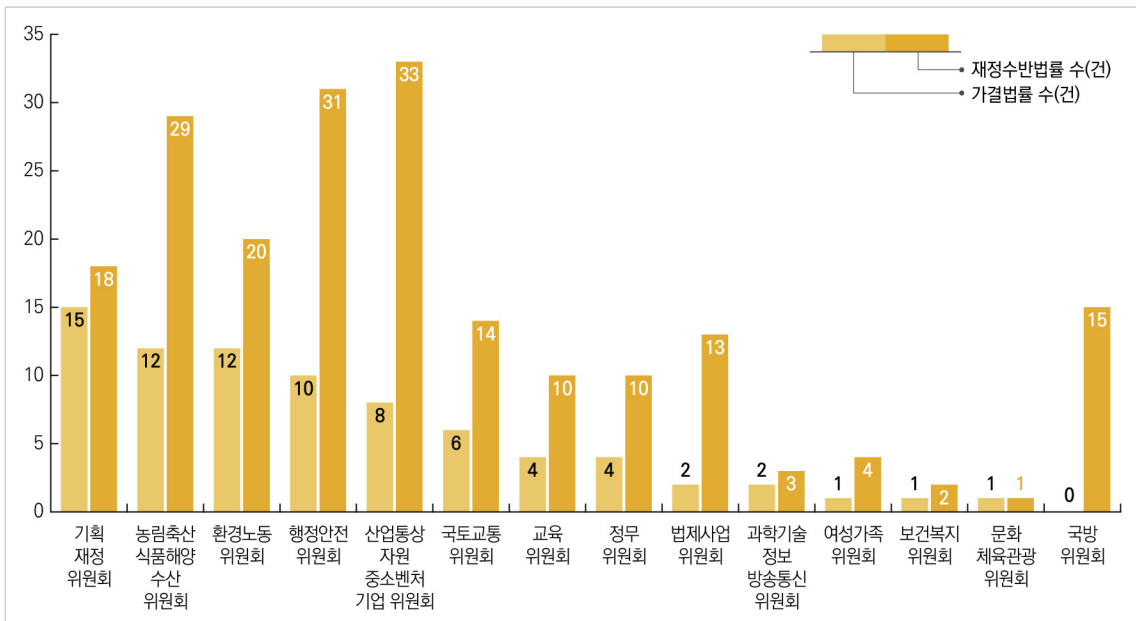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간략조화-재정통계-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그림 1 2022년 4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 (위원회별) 2022년 4분기 재정수반법률 건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1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건) 및 환경노동위원회(12건) 순
- ▶ 가결 법률이 가장 많이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3건), 행정안전위원회(3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9건) 순

그림 2 2022년 4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2.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수입 부문

2022년 4분기에 가결된 수입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5건 시행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조 4,591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표 2 2022년 4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수입합계 (연평균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168,634	-5,959	-174,593
	국세외수입	기금수입	-	-	2
		세외수입	2	-0.3	
	합 계		-168,632 (100.0%)	-5,959	-174,591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유형별) 조세수입이 연평균 17조 4,593억원 감소, 세외수입이 연평균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조세수입: 과표구간별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도록 한 「법인세법」 개정 등 14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17조 4,59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 세외수입: 세무공무원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 등 2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2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은 연평균 16조 8,632억원,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9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수입: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 등 14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16조 8,632억원 수입 감소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수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4건의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5,959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에 따라 재정수입이 연평균 17조 4,591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연평균 0.3억원) 순으로 재정수입 감소
 -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인하 등(「종합부동산세법」 등 14건, 연평균 17조 4,591억원)

-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 하향 조정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건, 연평균 0.3억원)

표 3 2022년 4분기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건수 ²⁾ (B, 건)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15	14	-174,591	1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0	-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1	0	-	1
국토교통위원회	6	1	-0.3	5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	-	-	-
합 계	23	15	-174,591	8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을 결과(위원회별)

나. 지출 부문

2022년 4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37건 법률 시행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7,76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 2022년 4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지출 (연평균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32	-	32
	재량지출	7,104	624	7,728
합계		7,136	624	7,761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유형별) 의무지출이 연평균 32억원, 재량지출이 연평균 7,7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의무지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3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재량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의 상향 조정을 규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36건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7,72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지출은 연평균 7,136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62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지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규정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등 33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7,13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 침수 대응 하수도 시물레이션 실시를 규정한 「하수도법」 개정 등 11건⁵⁾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62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정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소요가 연평균 5,033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위원회(연평균 1,41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연평균 867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 ▶ 정부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 연평균 5,033억원)

4) 의무·재량지출 동시유발법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건 포함

5)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출 동시유발법률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7건 포함

- ▶ 교육위원회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3건, 연평균 1,410억원)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0건, 연평균 867억원)

표 5 2022년 4분기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건수 ²⁾ (B, 건)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2	1	69	1
정부위원회	4	4	5,033	0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4	3	1,410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1	8	1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10	4	48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0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10	867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	5	171	3
보건복지위원회	1	0	-	1
환경노동위원회	11	8	116	3
국토교통위원회	-	-	-	-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1	38	0
합 계	56	37	7,761	19

주: 1)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금액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을 의미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3. 2022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을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수입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정부, 2022.12.23. 의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2조 2,95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1.1. 시행)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에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율변화를 적용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여 1인당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 과표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산정
 -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내 개인투자자 상장주식 등에 대한 세수와 현행 양도소득세 세수 간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9개 증권사 2008~2017년 국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 및 국세통계연보 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표 6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6,040	-34,396	-30,045	-30,891	-31,791	-143,164	-28,633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2,385	-2,385	-2,385	-2,385	-2,385	-11,925	-2,38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327	2,367	2,098	2,292	2,507	10,592	2,118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	-	8,066	16,131	16,131	40,328	8,066
기타 ¹⁾	-3,627	-1,578	-1,687	-1,802	-1,915	-10,607	-2,122
합 계	-20,725	-35,992	-23,953	-16,655	-17,453	-114,778	-22,956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조정 등을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정부, 2022.12.23. 의결)

-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세율 인하, 내국법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4조 1,16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1.1. 시행)
 - ▶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업규모 및 과표구간별 기업당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변화를 적용하고 2019~2021년 신고자료를 활용한 중간예납 비율 8.7%를 반영하여 추계
 - ▶ 내국법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년 수입배당금 명세서 상 배당금 및 익금불산입액을 바탕으로 익금불산입률 변화에 따른 과세표준 변화를 적용하여 추계

표 7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조정	-166	-1,963	-1,963	-1,963	-1,963	-8,016	-1,603
내국법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8,298	-8,298	-8,298	-8,298	-33,193	-6,639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	-1,044	-1,044	-1,044	-1,044	-4,177	-835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세율 인하	-3,130	-36,031	-37,422	-39,105	-40,909	-156,598	-31,319
외국법인 국제·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766	-766	-766	-766	-766	-3,830	-766
합 계	-4,062	-48,102	-49,493	-51,176	-52,980	-205,813	-41,16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정부, 2022.12.23. 의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1조 3,442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1.1. 시행)
 - ▶ 부동산 공시가격과 2017~2021년 평균 분납 비율 30%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년 귀속 과표구간별 결정세액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 유형 및 과표구간별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추계

표 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9,284	-14,482	-14,482	-14,482	-14,482	-67,212	-13,44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정부, 2022.12.23. 의결)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단순화·통합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9조 5,70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2023.1.1. 시행)
 -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단순화·통합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19년 귀속 공제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변화가 크지 않았던 2016~2017년 조세지출액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2021년 감면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1,337	-28,277	-29,120	-29,814	-	-88,548	-17,7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25,906	-27,282	-28,676	-	-81,864	-16,373
기타 ¹⁾	-63,178	-84,711	-79,182	-40,333	-40,730	-308,135	-61,627
합 계	-64,515	-138,894	-135,584	-98,824	-40,730	-478,547	-95,709

주: 1) 기타 재정수반요인에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사례: 지출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22.12.27. 의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4,44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1.17. 시행)
 - ▶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을 통해 2.22조원의 출자금에 2023년과 2024년에 균등 배분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

표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11,100	11,100	-	-	-	22,200	4,44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022.12.24. 의결)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1,40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1.1. 시행)
 - ▶ 국가 지출 증가분은 2023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정예산 내역 상 세출 총액에서 기존 사업 이관 분과 교육세 전입분을 제한 금액으로 가정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지방자치단체 지출 증가분은 2023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규 및 확대 사업 중 지방비 매칭을 통해 추진되는 내역사업의 지방비 매칭 계획액을 준용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335	2,335	2,335	-	-	7,006	1,401
- 국가	2,001	2,001	2,001	-	-	6,002	1,201
- 지방자치단체	334	334	334	-	-	1,003	20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2.12.8. 의결)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648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6.28. 시행)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가로림만 및 호미반도 해양정원 조성사업 등 2건이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
 -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577억원으로 평균 국고보조율은 65%이며, 호미반도 해양정원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1,666억원으로 평균 국고보조율은 62%

표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33	614	1,036	1,036	521	3,240	648
- 국가	22	396	657	657	323	2,056	411
- 지방자치단체	12	218	378	378	198	1,184	23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2.12.8. 의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2023~2027년 연평균 15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2.12.20. 시행)
 - ▶ 고엽제 검진은 등록신청자 감소를 반영하여 최근 4년간의 연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 ▶ 진료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진료지원 대상인원에 진료지원 이용률, 수진횟수, 진료비 단가를 곱하여 산정
 - ▶ 수당 지급과 교육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 대상 추정인원에 1인당 수당액 및 교육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정

- ▶ 고엽제전우회 보조금은 2021년 고엽제전우회 교부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 역학조사는 기존과 같이 4년에 걸쳐 실시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고엽제 검진	38	70	96	119	138	461	92
진료지원	27	28	27	26	25	133	27
수당 지급	29	30	30	31	32	152	30
교육지원	0.1	0.2	0.3	0.3	0.3	1.1	0.2
고엽제전우회 보조금	2.3	4.2	5.8	7.2	8.3	27.8	5.6
역학조사	1.0	1.0	5.1	0.4	-	7.4	1.5
합 계	97	133	165	184	204	783	15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2022년도 4분기 재정수반법을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수입	2117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78,547	-95,70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		
	2117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5,813	-41,163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세율 인하 등)		
	2117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4,778	-22,95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21171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7,212	-13,44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2117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15	-663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출	2117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38	-328
		(주세 물가연동 방식 변경)		
	21171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24	-225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2,200	4,440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211719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7,006	1,4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1187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40	648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출	21187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47	429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지급)		
	21187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3	157
		(고엽제 검진 등)		

- 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3~2027년 합계 500억원 이상의 재정변동이 예상되는 법률 제시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사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주 호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46)

1. 비용추계 개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2.14. 김홍걸의원 대표발의)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하여 식품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5,396억원, 연평균 1,079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8919호)
발의일	2022.12.14.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하여 식품지원 사업 -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심사경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2022.12.1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5,396억원, 연평균 1,079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함)가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비용추계 대상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aT가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비용¹⁾
 - ▶ 본 추계에서는 전체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및 전체 임산부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비용은 전체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에 과일간식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

- 전체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22년 기준 학생 수에 최근 4년(2019~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0.20%)을 곱하여 전망
 - ▶ 이때 서울 및 서울외 지역 학생수는 2022년 기준 서울(15.5%), 서울외(84.5%) 지역 비율 적용

1)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2018~2022년)'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2020~2022년)'은 2022년까지 실시됨

- 과일간식비 지원단가는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1인당 연간 6만원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비용은 지원대상 임산부 수에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

- 지원대상 임산부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출생아 수 추계를 바탕으로 전체 임산부 수를 추계한 뒤,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수를 차감하여 산출
 - ▶ 전체 임산부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출생아 수에서 다태아 중 둘째아 이상으로 태어난 수를 제외하여 추계
 - ▶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수는 2021년 기준 22,126명에 최근 10년(2012~2021년)간 연평균증가율(-1.2%) 적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단가는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1인당 연간 48만원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초등돌봄교실 학생 수^1) \times 과일간식 지원단가^2] \times 국비·지방비 부담률_i^3) + \{(지원대상 임산부 수^4) \times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5\} \times 국비·지방비 부담률_i^6)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운영비^7)]$$

이때, $i=1$ 일 때 서울지역, $i=2$ 일 때 서울외지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1) 초등돌봄교실 학생 수 _{t} = 초등돌봄교실 학생 수 _{$t-1$} ^{a)} $\times (1+\alpha^b)_t \times$ 지역 비율 _{i,t} ^{c)}
 - a) 초등돌봄교실 학생 수 292,068명(2022년 기준)
 - b) α : 연평균 증가율 0.20% (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
 - c) 지역 비율 _{i,t} : $i=1$ 일 때 서울 지역: 15.5%, $i=2$ 일 때 서울외 지역: 84.5%
- 2) 과일간식 지원단가 _{t} : 1인당 연간 6만원
- 3)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_{i,t} : 국비 30% 또는 50%(지난 시범사업 참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4) 지원대상 임산부 수 _{t} = 전체 임산부 수 _{t} ^{a)}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임산부 수 _{t} ^{b)}
 - a) 전체 임산부 수 _{t} 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중 출생아 수 활용
 - 최근 3년간 단태아(95.03%), 쌍태아(4.83%) 및 삼태아 이상(0.13%) 평균 비율을 곱하여 임산부 수 추계
 - 단태아 수의 전체, 쌍태아 수의 1/2, 삼태아 이상 수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임산부 수인 것으로 가정
 - b)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수 _{t}
 - 2021년 기준 대상자 수에 2012~2021년 연평균 증가율 -1.2% 적용
- 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단가 _{t} : 1인당 연간 48만원
- 6) 국비·지방비 부담률 _{t}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지난 시범사업 참고)
- 7)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운영비 _{t}
 - 클라우드 이전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교육·홍보, 콜센터 운영비 등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콜센터 운영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각각 적용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883억 900만원으로 추계

-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92,068명으로 최근 4년(2019~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 0.20%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학생 수 산출
 - ▶ 이때, 전체 학생 수에 2022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의 지역별 비율 적용(서울 15.5%, 서울외 84.5%)

표 3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 전망: 2024~2028년

	2024	2025	2026	2027	2028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A)	293,214	293,788	294,364	294,940	295,518
- 서울($B=A \times 15.5\%$)	45,328	45,417	45,506	45,595	45,684
- 서울외($C=A \times 84.5\%$)	247,885	248,371	248,858	249,345	249,83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과일간식비 지원단가는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1인당 연간 6만원(=2천원×30회)으로 가정
- 국비지원율은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30% 또는 50%로 가정
 - ▶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서울외) 국비 50%, 지방비 50%
- 추계결과, aT가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883억 900만원으로 추계
 - ▶ 국비: 5년간 총 414억 2,400만원
 - ▶ 지방비: 5년간 총 468억 8,500만원

나.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비용은 2024년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512억 7,600만원으로 추계

-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임신부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출생아 수 추계를 바탕으로 전체 임신부 수를 추계한 뒤,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²⁾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부 수를 차감하여 산출
 - ▶ 친환경 농산물 지원대상 임신부 = 전체 임신부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임신부
- 전체 임신부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중 출생아 수 추계 인원을 바탕으로 전망
 - ▶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통계청의 출생아 수 추계 인원(최근 3년간 단태아(95.03%), 쌍태아(4.83%) 및 삼태아 이상(0.13%) 평균 비율³⁾)을 곱하여 임신부 수 추계
 - ▶ 단태아 수의 전체, 쌍태아 수의 1/2, 삼태아 이상 수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임신부 수인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임신부(임신·출산·수유부) 수는 2021년 기준 대상자(22,126명) 수에 2012~2021년 연평균 증가율(-1.2%)을 곱하여 산출

표 4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임신부 수 전망: 2024~2028년

(단위: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전체 임신부 수(A)	228,073	241,457	254,533	266,990	278,502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임신부 수(B)	21,348	21,094	20,844	20,596	20,352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임신부 수(C=A-B)	206,725	220,363	233,689	246,393	258,150

자료: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는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1인당 연간 48만원(=4만원 × 12개월)으로 가정
-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지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40:40:20으로 가정
- 통합쇼핑몰 시스템 관리비, 홍보교육 등 사업운영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콜센터 운영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각각 적용
- 추계결과, aT가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512억 7,600만원으로 추계됨
 - ▶ 국비: 5년간 총 2,275억 3,500만원
 - ▶ 지방비: 5년간 총 2,237억 4,100만원

2)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실시

3)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다.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aT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4~2028년) 총 5,396억원(연평균 1,079억원)으로 추계됨

- ▶ 국비: 5년간 2,690억원(연평균 538억원)
- ▶ 지방비: 5년간 2,706억원(연평균 541억원)

표 5 영양취약계층(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식품지원 사업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A)	176	176	177	177	177	883	177
국비	83	83	83	83	83	414	83
지방비	93	94	94	94	94	469	9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B)	802	853	905	954	999	4,513	903
국비	405	430	456	481	503	2,275	455
지방비	397	423	449	473	496	2,237	447
추가재정소요(C=A+B)	978	1,030	1,081	1,131	1,176	5,396	1,079
국비	488	513	539	564	586	2,690	538
지방비	490	517	542	567	590	2,706	5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안 비용추계 사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효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27)

1. 비용추계 개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2.11.2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은 특수학교와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4,486억원, 연평균 89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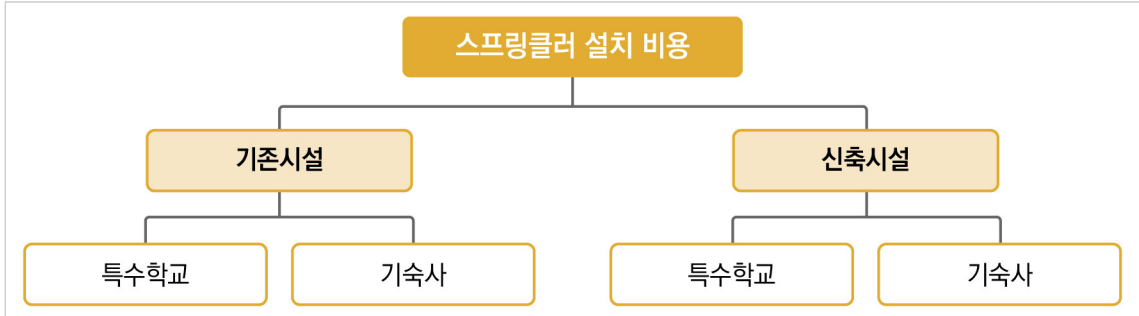
의안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460호)
발의일	2022.11.24.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주요내용	특수학교 및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심사경과	교육위원회 회부(2022.11.2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4,486억원, 연평균 897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국가재정으로 특수학교와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시설에는 '기존에 건축된 시설'과 '법 개정 이후 신축되는 시설'이 모두 포함
- 설치 의무 시설은 기존에 건축된 시설(기존시설)과 법 개정 이후 신축되는 시설(신축시설)로 구분하고, 이를 특수학교와 기숙사로 다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추계

그림 1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추계 방법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시설 면적에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를 곱하여 추계

- 기존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 및 기숙사의 총면적에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를 곱하여 추계
 - ▶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존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2024년에 필요한 스프링클러가 모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신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연간 신축시설의 수를 추정한 뒤 평균 면적을 곱하여 총면적을 산출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를 곱하여 추계
 - ▶ 신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연간 신축시설의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축시설 수를 준용하여 산출
 - ▶ 평균 면적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2021년 또는 2022년 기준 시설별 평균 면적을 준용
- 기존시설과 신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른 면적(m^2)당 스프링클러 보수 기준단가(2018년 기준 112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요소(2024~2028년) = 기존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¹⁾ + 신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²⁾

1) 기존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별 총면적^{a)} × 스프링클러 설치단가^{b)}
기존시설 설치 비용은 전액 2024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a)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별 총면적: 교육부 제출자료 활용

b) 스프링클러 설치단가: 한국교육개발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기준 연구」에 따른 면적당 스프링클러 보수 기준단가(2018년 기준 112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2) 신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 신축시설 수^{a)} × 시설별 평균 면적^{b)} × 스프링클러 설치단가^{c)}
신축시설 설치 비용은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a) 신축시설 수: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
- 특수학교: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신축 특수학교 수 적용
 - 기숙사: 최근 5년간(2017~2021년) 신축된 연평균 초중등학교 수에 기숙사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기숙사 보유비율: 2022년 4월 1일 기준 전체 초중등학교(특수학교 제외) 대비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비율 적용
- b) 시설별 평균 면적: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
- 특수학교: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2021년 기준 평균 교사 면적(m^2) 적용
 - 기숙사: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2022년 4월 1일 기준 평균 면적(m^2) 적용
- c) 스프링클러 설치단가: 기존시설 설치 비용의 스프링클러 설치단가와 동일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기존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2024년에 특수학교 1,218억원, 기숙사 2,976억원 등 총 4,194억원으로 추계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면적은 특수학교 942천 m^2 , 기숙사 2,301천 m^2
-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는 2018년 면적당 단가(112천원)를 기준으로 매년(2019~202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에 따른 2024년도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는 약 129천원으로 산출
- 미설치 시설의 면적에 스프링클러 설치단가를 곱하면 기존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수학교 1,218억원, 기숙사 2,976억원 등 총 4,194억원으로 추계

신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5년간(2024~2028년) 특수학교 215억원, 기숙사 77억원 등 총 292억원으로 추계

- 연도별 신축시설의 수는 특수학교 4개교, 기숙사 8개소로 산출
 - ▶ 특수학교(4개교)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신축 특수학교 수¹⁾를 적용
 - ▶ 기숙사(8개소)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신축된 연평균 초중등학교의 수(68개교)²⁾에 2022.4.1. 기준 전체 초중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비율(10.6%)³⁾을 곱하여 산출

1) 신규 건립 특수학교 수(2017~2021년)

(단위: 개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연평균
특수학교	4	3	4	4	5	20	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신규 건립 초중등학교 수(2017~2021년)

(단위: 개교)

- 시설별 평균 면적은 특수학교 $8,010m^2$, 기숙사 $1,413m^2$ 으로 산출⁴⁾
 - ▶ 특수학교($8,010m^2$)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2021년 기준 평균 교사 면적을 적용
 - ▶ 기숙사($1,413m^2$)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2022년 4월 1일 기준 평균 면적을 적용
- 신축시설의 수에 시설별 평균 면적을 곱하고 연도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단가를 곱하면 신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5년간(2024~2028년) 특수학교 215억원, 기숙사 77억원 등 총 292억원으로 추계

기존시설과 신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4~2028년) 총 4,486억원(연평균 897억원)으로 추계

표 3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기존시설	특수학교(A)	1,218	-	-	-	-	1,218	244
	기숙사(B)	2,976	-	-	-	-	2,976	595
	소계(C)	4,194	-	-	-	-	4,194	839
신축시설	특수학교(D)	41	42	43	44	45	215	43
	기숙사(E)	15	15	15	16	16	77	15
	소계(F)	56	57	58	60	61	292	58
특수학교 설치 비용 계(A+D)		1,259	42	43	44	45	1,433	287
기숙사 설치 비용 계(B+E)		2,991	15	15	16	16	3,053	611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총계(C+F)		4,250	57	58	60	61	4,486	8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연평균
초중등학교	77	59	67	76	57	336	68

주: 특수학교 제외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기숙사 비율(10.6%) = 기숙사가 있는 초중등학교(1,259개교) / 전체 초중등학교(11,876개교)

4) 시설 유형별 평균 교사면적

구분	총 (교사) 면적(A)	시설 수(B)	평균 (교사) 면적(A/B)
특수학교	$1,497,786m^2$	187개교	$8,010m^2$
기숙사	$1,778,544m^2$	1,259개소	$1,413m^2$

주: 1) 특수학교: 2021년 기준 평균 교사면적 적용

2) 기숙사: 2022년 4월 1일 기준 평균 면적 적용

자료: 교육통계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의안 비용추계 사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현 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1)

1. 비용추계 개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 이병훈의원 대표발의)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1(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은 5년간(2024~2028년) 1,682억원, 연평균 3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며, 시나리오2(의원 정수의 1.5배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는 5년간(2024~2028년) 2,622억원, 연평균 52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9383호)
발의일	2023.1.10.
대표발의	이병훈 의원
주요내용	시·도의회위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의원 정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심사경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3.1.11.)
추계결과	시나리오1(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 5년간(2024~2028년) 1,682억원, 연평균 336억원 시나리오2(의원 정수의 1.5배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 5년간(2024~2028년) 2,622억원, 연평균 524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현 시점에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도의회에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시나리오1)와 의원 정수의 1.5배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시나리오2)로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¹⁾ 시나리오1은 2년에 걸쳐서 증원하고 시나리오2는 4년에 걸쳐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 인원은 시나리오1의 경우 419명이고 시나리오2의 경우 832명임²⁾
- 각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 공간이 필요하나, 기존의 시·도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당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산출한 후 시나리오별 연도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인원을 곱하여 추계

- 인건비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에 기관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추계기간 동안 2023년 연봉액에 국회에 산정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3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기본경비는 서울시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2023년도 서울시의회 기본경비를 서울시의회 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4,196,924원³⁾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별 채용인원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모든 시·도의회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2)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872명(지역구 779명, 비례대표 93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를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는 시나리오1(의원정수와 동일)의 경우 419명이고 시나리오2(의원정수의 1.5배)의 경우 832명임

구 분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의원 정수	현행법에 따라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의원 정수의 2분의 1)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시·도 의회	시나리오1 (의원정수와 동일)	747	85	832	413	419
	시나리오2 (의원정수의 1.5배)	747	85	832	413	83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 기준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인건비¹⁾ + 기본경비²⁾ + 자산취득비³⁾)

1) 인건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인원 × 1인당 인건비^{a)}

a) 1인당 인건비: 일반임기제 6급 지방직공무원의 2023년 연간 보수(71,127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2) 기본경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인원 × 1인당 기본경비^{a)}

기본경비는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a) 1인당 기본경비: 서울시의회 사례를 참조하면, 서울시의회 정원은 401명이며 2023년 기본경비는 18억 2,312만원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455만원임

3) 자산취득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인원 × 1인당 자산취득비^{a)}

자산취득비는 신규 채용한 해에만 발생하므로 시나리오1은 2024년과 2025년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고 시나리오2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자산취득비가 발생

a) 1인당 자산취득비: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1인당 단가 419.7만원(2020년 기준)에 국회예산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시·도의회에는 시·도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경우 향후 5년간(2024~2028년)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1(의원 정수와 동일)의 경우 총 1,682억원으로 추계되고, 시나리오2(의원 정수의 1.5배)의 경우 총 2,622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1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4년 207명, 2025년 212명 등 총 419명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2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4년 207명, 2025년 212명, 2026년 204명, 2027년 209명 등 총 832명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인원⁴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하면, 향후 5년간 시나리오1은 총 1,576억원으로 추계되고, 시나리오2는 총 2,448억원으로 추계⁴⁾

-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인건비는 6급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보수에 기관부담금을 더하여 산출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하고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7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월 60,000원)을 적용하며,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추계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보수는 2023년 기준 71,127천원임⁵⁾
 - ▶ 추계기간 동안 보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고, 보수에 연동되는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본경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인원⁶에 1인당 기본경비를 곱하여 산출하면, 향후 5년간 시나리오1은 총 86억원으로 추계되고, 시나리오2는 총 133억원으로 추계⁶⁾

-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기본경비는 서울시의회 직원 1인당 기본경비를 적용하여 산출
 - ▶ 2023년 서울시의회 기본경비(18억 2,312만원)를 서울시의회 정원(401명)으로 나누면, 1인당 기본경비는 455만원임

4)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2024~2028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시나리오 1	1인당 인건비(A, 천원)	81,385	82,413	83,456	84,449	85,521	157,563
	정책지원관 수(B, 명)	207	419	419	419	419	
	소 계(A×B, 백만원)	16,847	34,531	34,968	35,384	35,833	
시나리오 2	1인당 인건비(A, 천원)	81,385	82,413	83,456	84,449	85,521	244,785
	정책지원관 수(B, 명)	207	419	623	832	832	
	소 계(A×B, 백만원)	16,847	34,531	51,993	70,261	71,153	

5)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보수: 2023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6급 지방공무원)	63,373	1,560	6,194	71,127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024~2028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시나리오 1	기본경비(A, 천원)	4,550	4,550	4,550	4,550	4,550	8,566
	정책지원관 수(B, 명)	207	419	419	419	419	
	소 계(A×B, 백만원)	942	1,906	1,906	1,906	1,906	
시나리오 2	기본경비(A, 천원)	4,550	4,550	4,550	4,550	4,550	13,255
	정책지원관 수(B, 명)	207	419	623	832	832	
	소 계(A×B, 백만원)	942	1,906	2,835	3,786	3,786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산취득비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하면, 향후 5년간 시나리오1은 총 20억원으로 추계되고, 시나리오2는 총 41억원으로 추계)

-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4,196,924원에 국회예산처 전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시나리오1은 2024년과 2025년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고, 시나리오2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자산 취득비가 발생함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4~2028년) 시나리오1(의원정수와 동일)의 경우 총 1,682억원(연평균 336억원)으로 추계되고, 시나리오2(의원정수의 1.5배)의 경우 총 2,622억원(연평균 524억원)으로 추계

표 3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인건비	168	345	350	354	358	1,576	336
	기본경비	9	19	19	19	19	86	
	자산취득비	10	10	0	0	0	20	
	계	187	374	369	373	377	1,682	
시나리오 2	인건비	168	345	520	703	712	2,448	524
	기본경비	9	19	28	38	38	132	
	자산취득비	10	11	10	11	0	42	
	계	187	375	558	752	750	2,6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2024~2028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시나리오 1	자산취득비(C, 천원)	4,801	4,916	5,020	5,120	5,222	2,036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수(D, 명)	207	212	0	0	0	
	소 계(C×D, 백만원)	994	1,042	0	0	0	
시나리오 2	자산취득비(C, 천원)	4,801	4,916	5,020	5,120	5,222	4,130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 수(D, 명)	207	212	204	209	0	
	소 계(C×D, 백만원)	994	1,042	1,024	1,070	0	

의안 비용추계 사례: 탄소세 기본법안

어 수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1. 비용추계 개요

「탄소세 기본법안」(2022.12.26.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은 휘발유·석유가스·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탄소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3~2027년) 129조 5,508억원, 연평균 25조 9,10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다만, 탄소세 신설에 따른 행태 변화가 없고,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세율의 조정 등을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	탄소세 기본법안(제19131호)
발의일	2022.12.26.
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신설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2.12.27.)
추계결과	5년간(2023~2027년) 129조 5,508억원, 연평균 25조 9,102억원 세수 증가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휘발유·경유 등 탄소세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치를 바탕으로 5년간(2023~2027년) 세수효과 추계

- 휘발유 등 유류, 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ext{tCO}_2\text{-eq}$)¹⁾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효과 추계
 - ▶ 과세대상: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도시가스, 부생연료유, 무연탄, 유연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ext{tCO}_2\text{-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 ▶ 과세표준: 각 온실가스 배출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수치)에 해당 물품의 수량을 곱한 것
- ▶ 세율: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5만원(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 세액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음)
- 각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 자료를 활용하며, 과세물품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를 적용하되, 추계기간(2023~2027년) 동안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품의 전체 수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세 신설로 인한 행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2 비용추계 산식

세수효과(2023~2027년, 징수기준*) = 각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¹⁾ × 과세물품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²⁾ × 세율³⁾

*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은 매월분의 탄소세를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연도 마지막 1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징수

1) 각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제출자료 활용

2) 과세물품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이산화탄소상당량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를 적용하되, 추계기간(2023~2027년) 동안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3) 세율: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5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나, 이는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각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치에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하여 각 과세물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산출

표 3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치: 2023~2027년

(단위: 백만TOE)

호	유형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1	휘발유	10.75	10.82	10.90	10.94	11.10
2	경유	23.55	23.59	23.65	23.71	22.89
3	등유	2.22	2.22	2.22	2.22	2.15
4	중유	3.63	3.70	3.76	3.81	3.79
5	프로판	9.80	10.00	10.21	10.42	10.39
6	부탄	4.67	4.77	4.87	4.96	4.82
7	천연가스	31.35	29.54	31.51	35.53	36.45
8	도시가스	25.57	26.05	26.43	26.79	26.98
9	부생연료유	0.19	0.19	0.20	0.20	0.20
	(등유형)	0.12	0.12	0.12	0.12	0.12
	(중유형)	0.07	0.08	0.08	0.08	0.08
10	무연탄	4.40	4.44	4.49	4.50	4.57
	(국내)	0.32	0.26	0.21	0.17	0.15
	(수입)	4.08	4.18	4.28	4.32	4.43
11	유연탄	70.76	71.67	69.55	67.45	66.43
	(연료용)	45.50	45.97	43.49	41.04	39.94
	(원료용)	25.25	25.70	26.06	26.41	26.49

주: 2027년 수요량은 「2022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른 2026년 수요량 전망치에 「2023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른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 다만, 에너지 밸런스가 2022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2022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2022.8. 발간)은 구 에너지밸런스를, 「2023 장기 에너지 전망」(발간 예정)은 개정 에너지밸런스를 바탕으로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과세물품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적용하여 2023년 596.48백만 tCO₂eq 등 2023~2027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4 과세물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2023~2027년

(단위: tCO₂eq/TOE, 백만tCO₂eq)

호	유형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1	휘발유	3.029	32.56	32.78	33.01	33.14	33.61
2	경유	3.084	72.63	72.75	72.95	73.11	70.59
3	등유	3.059	6.80	6.80	6.79	6.78	6.57
4	중유	3.262	11.83	12.08	12.27	12.44	12.37
5	프로판	2.706	26.53	27.07	27.64	28.20	28.12
6	부탄	2.778	12.98	13.24	13.52	13.79	13.38
7	천연가스	2.346	73.54	69.30	73.91	83.35	85.50
8	도시가스	2.339	59.82	60.93	61.81	62.66	63.09
9	부생연료유		0.61	0.62	0.63	0.63	0.64
	(등유형)	3.096	0.36	0.37	0.37	0.37	0.38
	(중유형)	3.358	0.25	0.25	0.26	0.26	0.26
10	무연탄		18.55	18.72	18.92	18.92	19.24
	(국내)	4.560	1.45	1.18	0.97	0.80	0.66
	(수입)	4.194	17.10	17.53	17.96	18.13	18.58
11	유연탄		280.63	284.22	275.70	267.25	263.13
	(연료용)	4.008	182.36	184.22	174.29	164.47	160.05
	(원료용)	3.891	98.27	100.00	101.41	102.78	103.08
합 계			596.48	598.51	597.15	600.27	596.24

주: 중유는 B-C유의 배출계수를, 수입무연탄은 수입무연탄(연료용)의 배출계수를 적용

최종 세수효과는 '각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 × 과세물품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 세율'로 산출하되, 징수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5년간(2023~2027년) 129조 5,508억원(연평균 25조 9,102억원)으로 추계

- 제정안이 2023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2023년은 수요량 전망치의 12분의 5를 적용하고, 각 연도 마지막 1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
 -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은 매월분의 탄소세를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세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연도 마지막 1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징수

표 5 탄소세 신설 세수효과 추계: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물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99,413	299,170	298,632	300,005	298,288	1,295,508	259,1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기존에 발의된 탄소세 관련 법률안 내용 및 세수효과 비교

구 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안, 2021.7.12. 발의)	「탄소세법안」 (용혜인의원안, 2021.3.12. 발의)	「탄소세 기본법안」 (기동민의원안, 2022.12.26. 발의)
과세대상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무연탄, 유연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부생연료유,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천연가스,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도시가스, 부생연료유, 무연탄, 유연탄
과세표준	수량	수량 ×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	수량 ×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
세율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1만원 (ℓ, kg 단위로 환산)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5만원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세율 특례	2022~2023년: 5.5만원, 2024~2025년: 6.875만원, 2026~2027년: 8.25만원, 2028~2029년: 9.625만원	~2021년: 4만원, 2022년: 5만원, 2023년: 6만원, 2024년: 7만원, 2025년~: 8만원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O	X	X
세수효과	2022~2026년 5년간 총 97조 2,367억원, 연평균 19조 4,473억원 증가	2022~2026년 5년간 총 229조 8,113억원, 연평균 45조 9,623억원 증가	2023~2027년 5년간 총 129조 5,508억원, 연평균 25조 9,102억원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재정전망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이윤경 · 박선아 · 문지은 · 남희 · 김효진 · 김우림 ·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02-6788-3729)

1. 2023년 복지분야 지출 예산 현황

2022년 12월 24일 국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예산액은 총 226.0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8% 증가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16대 분야¹⁾ 중 사회복지(080)분야 및 보건(090)분야의 2023년 지출 예산은 총지출(638.6조원)의 35.4% 수준인 226.0조원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보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
- ▶ 이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 예산액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부모급여 지원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1.0조원(5.7%) 증액된 206.0조원이고, 보건분야 지출 예산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7조원(△11.8%) 감액된 20.0조원임
- ※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080)분야의 하위 12개 부문을 복지일반, 보훈, 고용의 3개 부문²⁾으로 구분

표 1 2023년 복지분야 지출 예산 현황(국비 기준)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2022 본예산(A)	2023 본예산(B)	전년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사회복지	복지일반 ¹⁾	1,524,061	1,647,355	123,294 (8.1)
	보훈	59,308	62,475	3,167 (5.3)
	고용 ²⁾	366,163	349,935	△16,228 (△4.4)
	소계	1,949,533	2,059,745	110,212 (5.7)
보건		227,126	200,288	△26,838 (△11.8)
합계		2,176,658	2,260,032	83,374 (3.8)

주: 1) 복지일반부문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코드 080) 중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공적연금(083),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아동·보육(08A), 노인(08B), 여성·가족·청소년(08C)으로 함

2) 고용부문은 사회복지분야(080) 중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16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010), 공공질서및안전(020), 통일·외교(030), 국방(040), 교육(050), 문화및관광(060), 환경(070), 사회복지(080), 보건(090), 농림수산(100), 산업·중소기업에너지(110), 교통및물류(120), 통신(130), 국토및지역개발(140), 과학기술(150), 예비비(160), 세출 외(200)으로 구성

2) 사회복지분야 중 복지일반 부문은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공적연금(083),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아동·보육(08A), 노인(08B), 여성·가족·청소년(08C)으로, 보훈부문은 보훈(087), 고용은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으로 구분

2023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사업 예산액의 전년 대비 증감은 주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수 증감, 코로나 19 상황 개선으로 인한 환경변화, 복지수준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제도변화 등에 기인

● 주요 증액사업

- ▶ **(단가 인상 또는 지원대상자 수 증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의 사업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원단가 인상 또는 인구변화로 인한 지원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
- ▶ **(제도변화)** 부모급여, 주거급여, 위탁병원 진료, 사회복지사각지대해소,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의 사업은 2023년도 제도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

● 주요 감액사업

- ▶ **(환경변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등의 개선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액
- ▶ **(사업종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2022년에 청년 신규채용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액
- ▶ **(제도변화 및 지원대상자 수 감소)**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급대상 인원 감소,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부모보육료 예산액의 일부 이관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내역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은 목표인원의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함

표 2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증액·감액 사업 현황(국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사유	지출항목 ¹⁾	2022 본예산(A)	2023 본예산(B)	전년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증액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수 증가	기초연금	161,140	185,304	24,164 (15.0)
		국민연금	306,085	362,287	56,203 (18.4)
		장애수당	816	1,429	613 (75.1)
		생계급여	52,648	60,141	7,494 (14.2)
	제도변화	부모급여	3,731	16,215	12,483 (334.6)
		주거급여	21,819	25,723	3,903 (17.9)
		위탁병원 진료	2,526	2,674	148 (5.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466	10,764	298 (2.8)
		국가예방접종 실시 (로타바이러스)	-	187	187 (순증)
		감액	환경변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2,649
고용유지지원금	5,981			1,974	△4,007 (△67.0%)
사업종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52	2,294	△7,659 (△77.0)
제도변화 및 지원대상자 수 감소	영유아보육료		32,028	30,251	△1,777 (△5.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0,030	8,112	△1,918 (△19.1)

주: 1) 지출항목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이하 동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고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지출사업 중 단가인상, 대상자 확대 등 제도변화가 두드러지는 재정사업에 대하여 향후 5년간(2024~2028년)의 총재정소요액을 산출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도 함께 제시³⁾

-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지출사업 중 본고에서 추계하고자 하는 재정사업으로는 복지일반부문에서 장애수당(기초),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주거급여, 보건부문에서 위탁병원 진료, 고용부문에서 국민취업지원 제도(구직촉진수당), 보건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음

3) 본고에서는 2023년 복지분야 주요 지출사업 중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변화, 인구증가에 따라 자연증감된 사업과 추계에 필요한 자료 부족 등으로 추계가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 추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 **(장애수당)** 지급 단가를 재가장애인 6만원, 시설장애인 4만원으로 2022년 대비 각 2만원, 1만원 인상(예산 증액)
- ▶ **(영유아보육료)** 영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 및 기관보육료가 2022년 대비 각각 3%, 5% 인상,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세 및 1세의 부모보육료 예산이 부모급여 예산으로 이관(예산 감액)
- ▶ **(부모급여)** 0~1세 영아에게 부모급여(20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024년 이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예산 증액)
- ▶ **(주거급여)** 수급기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2023년 47%로 완화, 비정상적 거처 거주 수급자에게 이사비 지원(예산 증액)
- ▶ **(위탁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 중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시 기준 연령(2022년 기준 75세 이상)을 폐지(예산 증액)
-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2023년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구직촉진수당의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인원을 2022년 기준 50만명에서 2023년 40만명으로 약 10만명 축소 편성(예산 감액)
- ▶ **(국가예방접종실시-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영유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로 포함(예산 증액)

표 3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지출 예산 현황(국비 기준)

(단위: 억원)

분야	부문	지출항목 ⁴⁾	2022 본예산(A)	2023 본예산(B)	전년 대비 증감액(B-A)	제도 변화
사회 복지	복지일반 ¹⁾	장애수당(기초)	816	1,429	613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재가 월 4만원 → 6만원, 시설 월 2만원 → 3만원)
		영유아보육료	32,028	30,251	△1,777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영아의 부모보육료 예산액을 부모급여 사업으로 이관(예산의 중복 계상 방지)
		부모급여 ³⁾	3,731	16,215	12,483	•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0세 및 1세 영아에 대한 월 지원단가를 각각 인상
		주거급여	21,819	25,723	3,903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6→47%), 지원단가 인상(16.0만원→17.9만원)
	보훈	위탁병원진료	2,526	2,674	148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의 진료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현행 75세 이상)
	고용 ²⁾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10,030	8,112	△1,918	•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통한 구직촉진수당 개편, 목표인원 축소
보건		국가예방접종실시(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	187	187	• 2023년 신규사업으로 생후 2~6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지원

주: 1) 복지일반부문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코드 080) 중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공적연금(083),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아동·보육(08A), 노인(08B), 여성·가족·청소년(08C)으로 함

2) 고용부문은 사회복지분야(080) 중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으로 함

3)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되고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 수준이 확대됨

4) 위 사업 중 의무지출은 장애수당(기초),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주거급여, 위탁병원 진료, 재량지출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가예방접종 실시(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단, 부모급여는 의무지출인 '영아수당' 사업이 전환된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의무지출로 간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주요 복지사업 재정소요 추계

가. 복지일반부문

(1) 장애수당(기초)⁴⁾ 지원 단가 인상

- (제도변화) 장애수당 지원 단가를 재가장애인 6만원, 시설장애인 3만원으로 인상
 ▶ 2022년 지원 단가는 재가장애인 4만원, 시설장애인 2만원으로, 2015년 이후 동일 금액 유지
- (2023년 예산) 장애수당(기초)(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13억원 증액(75.1%)된 1,429억원(국비 기준)
- (5년 추계) 장애수당(기초)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4년 2,194억원, 2028년 2,090억원 등 5년간 총 1조 1,161억원(연평균 2,232억원)으로 추계되며, 동 사업의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32억원, 2028년 697억원 등 5년간 총 3,722억원(연평균 74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표 4 장애수당(기초) 사업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2,194	2,247	2,295	2,335	2,090	11,161	2,232
국비	1,470	1,506	1,538	1,564	1,400	7,478	1,496
지방비	724	742	757	770	690	3,683	737
추가재정소요	732	749	765	779	697	3,722	744
국비	490	502	513	522	467	2,494	499
지방비	241	247	253	257	230	1,228	246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국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7%)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3. 총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4.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제도변화를 반영한 총재정소요에서 2022년 기준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장애수당(기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중전3~6급)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2) 영유아보육료⁵⁾ 지급액 인상 및 예산 편성 변화

- (제도변화) 보육료 지급액 인상 및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 변화
 - ▶ (지급액 인상) 0~2세반 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⁶⁾는 2022년 대비 평균 3%, 기관보육료는 평균 5% 인상
 - ▶ (예산 편성 변화) 부모급여⁷⁾가 도입됨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액이 부모보육료 지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차액만큼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와 가정 양육 영유아의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예산의 중복 계상 방지를 위해 그동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편성되던 0세·1세의 부모보육료 예산액을 부모급여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
- (2023년 예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급 대상 인원 감소,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부모보육료 예산액의 일부 이관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조 251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3조 2,028억원 대비 1,777억원(이상 국비 기준) 감액
- (5년 추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2024년 3조 5,973억원, 2028년 4조 571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8조 5,680억원(연평균 3조 7,136억원)으로 추계되며, 제도 변화 이후의 재정소요 증감액(추가재정소요)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예산액 이관으로 인해 2024년 △6,583억원, 2028년 △7,93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3조 5,297억원(연평균 △7,059억원)으로 추계

표 5 영유아보육료 지원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35,973	35,398	35,905	37,833	40,571	185,680	37,136
국비	25,001	24,602	24,954	26,294	28,197	129,048	25,810
지방비	10,972	10,796	10,951	11,539	12,374	56,632	11,326
추가재정소요	△6,583	△6,542	△6,848	△7,390	△7,934	△35,297	△7,059
국비	△4,575	△4,547	△4,759	△5,136	△5,514	△24,531	△4,906
지방비	△2,008	△1,995	△2,089	△2,254	△2,420	△10,766	△2,153

주: 1. 제도 변화 이후 재정소요가 감소하는 것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예산액 이관에 기인함
(0세 및 1세의 부모보육료 예산이 부모급여 사업으로 이관되어 통합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
2. 국비 및 지방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9.5%)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영유아보육료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
6) 영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와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어린이집에 지불),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임
7) 0세 및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2023년에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0세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이 지급됨

(3) 부모급여 지원⁸⁾ 단가 인상

- (제도변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2022.5.)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0세와 1세에 대한 월 지원단가를 각각 인상⁹⁾
 - ▶ 기존 영아수당의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을 지급
 - ▶ 부모급여 지원단가는 2023년 0세에게 월 70만원, 1세에게 월 35만원을, 2024년부터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
- (2023년 예산)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부모급여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1조 6,215 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3,731억원 대비 1조 2,483억원(이상 국비 기준) 증액
- (5년 추계) 부모급여 지원에 소요되는 총재정소요는 2024년 4조 2,293억원에서 2028년 4조 9,695억원으로 증가하여 향후 5년간 총 22조 7,438억원(연평균 4조 5,488억원)으로 추계되며,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2조 5,700억원에서 2028년 2조 5,392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2조 305억원(연평균 2조 4,0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부모급여 지원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42,293	42,958	45,065	47,427	49,695	227,438	45,488
국비	29,119	29,577	31,027	32,653	34,215	156,591	31,318
지방비	13,174	13,381	14,038	14,773	15,480	70,847	14,169
추가재정소요	25,700	21,941	23,034	24,237	25,392	120,305	24,061
국비	17,695	15,106	15,859	16,687	17,483	82,830	16,566
지방비	8,006	6,835	7,175	7,550	7,910	37,475	7,495

주: 1. 국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68.85%)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2. 총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3.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제도 변화를 반영한 총재정소요에서 2022년 기준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부모급여 지원은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영아(2022.1.1.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부모급여액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원)

9)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국회 심사 중임

【참고】 영유아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강화되고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간 차등 해소를 위하여 지원단가 조정

■ 2023년 변화되는 아동·보육부문 재정사업 비교 ■

구분	기존(2022년)		현행(2023년)	
	영유아보육료 ¹⁾²⁾	영아수당 ³⁾	영유아보육료 ¹⁾	부모급여 ⁴⁾
0세	월 49.9만원	월 30만원	월 51.4만원	월 70만원 ⁵⁾
1세	월 43.9만원		월 45.2만원	월 35만원 ⁵⁾
2세	월 36.4만원	-	월 37.5만원	-

주: 1)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바우처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하며, 연령별(0세·1세·2세반)별로 보육료 단가를 산정
 2) 표의 영유아보육료 금액은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부모보육료)의 단가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급되는 보육료(기관보육료)는 제외되어 있음
 3) 영아수당은 2022년에 신규 도입된 재정사업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지급
 4) 부모급여는 2023년에 기존 영아수당에서 전환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 수준이 확대됨(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 영아에게는 부모급여액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급)
 5)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액으로 0세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¹⁰⁾ 수급대상 확대

- (제도변화) 주거급여 수급기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로 완화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 신규로 포함
 - ▶ (지급대상 확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수급권자를 확대
 - ▶ (신규사업 추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 거처 거주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이주비 지원
- (2023년 예산) 수급기준 완화와 이주비 지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의 2023년 예산은 2조 5,723 억원으로 전년 대비 3,903억원(이상 국비 기준) 증액
- (5년 추계) 주거급여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2024년 3조 3,199억원에서 2028년 3조 9,687억원으로 증가하여 향후 5년간 총 18조 2,358억원(연평균 3조 6,472억원)으로 추계되며,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2,947억원에서 2028년 3,398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5,941억원(연평균 3,188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0)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하도록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됨

표 7 주거급여 수급확대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33,199	34,866	36,500	38,106	39,687	182,358	36,472
국비	27,575	28,960	30,317	31,651	32,964	151,467	30,293
지방비	5,624	5,906	6,183	6,455	6,723	30,892	6,178
추가재정소요	2,947	3,064	3,177	3,354	3,398	15,941	3,188
국비	2,324	2,417	2,508	2,652	2,685	12,586	2,517
지방비	623	647	669	702	713	3,355	671

주: 1.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제도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지방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83.06%)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훈부문: 위탁병원 진료¹¹⁾ - 위탁병원 진료대상 연령제한 폐지

- (제도변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2022.5.)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 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75세 미만인 자도 위탁병원 지원대상자로 편입되어 진료비 증가
 - ▶ 위탁병원의 기준 연령 폐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12.5., 정부 제출)
- (2023년 예산) 75세 미만 무공수훈자 등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3년도 예산 2,674억원 중 19억 5,9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
- (5년 추계) 위탁병원 진료 대상자 확대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47억 7,000만원에서 2028년 6,1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64억 8,900만원(연평균 12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 ▶ 본 추계에서는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중 위탁병원 진료대상 연령제한(2022년 기준 75세 이상)을 폐지함에 따라 증가되는 추가재정소요를 분석

표 8 위탁병원 진료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770	1,117	412	129	61	6,489	1,298

주: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수(2022년 11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평균 연령은 82세)는 통계청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산하였고, 무공수훈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2022.12. 기준 총 640개소)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다. 고용부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개편¹²⁾

- (제도변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지급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에 대하여 2023년도부터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
 - ▶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부양가족에 따라 18세 이하인 자,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 (2023년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의 2023년도 예산은 8,112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1조 30억원 대비 1,918억원(이상 국비 기준) 감액
- (5년 추계) 구직촉진수당에 소요되는 총 재정소요는 2024년 8,836억원에서 2028년 8,084억원으로 감소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2,300억원(연평균 8,460억원)으로 추계되며, 2023년도부터 가족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379억원에서 2028년 346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794억원(연평균 3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본 추계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목표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조기취업성공수당 및 일경험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매년 평균 지급기간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3년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2022년 사업 추진 결과 실제 22만명에게 지급되는 등 당초 목표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지급 소요가 낮아질 수 있음

표 9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현실화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총재정소요	8,836	8,648	8,460	8,272	8,084	42,300	8,460
추가재정소요	379	364	356	348	346	1,794	359

주: 1. 총재정소요와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기준 부양가족 현황과 IAP 수립률 등이 추계기간(2024~2028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 결과
 2. 전액 국비지원 사업임
 3. 전체 사업대상자 수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대상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이고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

라. 보건분야: 국가예방접종실시¹³⁾ -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

- (제도변화) 국가예방접종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을 추가
 -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17종)¹⁴⁾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을 추가하여 0세 유아에게 2~3회 접종 시행
- (2023년 예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실시하며, 2023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산은 국비 기준 186억 6,900만원임
- (5년 추계)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신설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444억원에서 2028년 572억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500억원(연평균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본 추계에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세부사업 중 어린이예방접종실시(18종) 내역사업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추가재정소요를 분석

표 10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44	457	495	533	572	2,500	500
국비	208	214	232	249	267	1,170	234
지방비	236	243	263	284	304	1,330	266

주: 국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46.80%)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3)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14) 생후 60개월 이하 어린이에게 시행하는 17종 예방접종은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재정전망

여 은 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73)

1.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의료비 지원대상자(이하 ‘보훈의료지원대상자’라 함)는 2022년 기준 1,708,500명, 평균연령은 74세(2022년 기준)로 고엽제후유증, 외과적 질환 등 만성적인 질병이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제21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보훈관련 8개 법률의 개정안 중 보훈의료 지원대상 및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보훈의료관련 법률안이 50건으로 제20대 국회 39건에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보훈의료비 장기전망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2.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의료지원 실태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2022년 기준 1,708,500명이고,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훈의료비(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¹⁾ 사업의 2023년 예산은 6,574억원으로 국가보훈처 의무지출사업인 보훈급여금²⁾(5조 1,200억원)에서 보상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국가보훈처의 보훈병원진료 사업은 1961년부터 시작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감면(30~90%)하여 주고 있음³⁾
-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1986년 시작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함에 따른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50~90%)하여 주고 있음⁴⁾

1) 본 고에서는 의무지출사업인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2개의 세부사업을 묶어 보훈의료비로 통칭함

2) 보훈급여금(5조 1,200억원)은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국가보훈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5조 9,372억원)의 86.2%를 차지함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6개: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에 두도록 하고 있음

4)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근접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위탁병원은 1986년 제주에 2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총 640개로 꾸준히 확대

	1986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병원 수 (개)	2	~	311	313	310	310	310	315	320	418	518	640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아래 8개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환자,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및 각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진료 대상자와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구분

- 근거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표 1 근거법률별 보훈의료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근거법률	보훈의료지원대상자	
국비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애국지사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공상군경	106,298
		4·19혁명부상자	150
		공상공무원	3,3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상이자	2,27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5,232
		재해부상공무원	17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부상자	2,14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급기준 미달자	63,3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급자)	28,838
고엽제2세환자(등급자)		156	
등급기준 미달자		35,256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일학도의용군인(100% 감면)*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90% 감면)	104,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0% 감면)	35,3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공로자 등(60% 감면)	88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수권유족(60% 감면)	246,4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가족(6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기타 5·18유공자등(30~60% 감면)	5,22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복무제대군인(50% 감면)	45,289
군 복무 중 발병자(50% 감면)		1,050	
합 계			1,708,500

주: *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 진료 시 100% 감면, 위탁병원 진료 시 60% 감면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2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지원 현황

세부사업	진료대상	지원범위
보훈병원 진료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 상이유공자: 전액 국비 -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 등: 일부 감면(30%~90%)
위탁병원 진료		- 상이유공자: 전액 국비(비급여는 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지원, 약제비 지원) -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 등: 75세 이상 일부 감면(50%~90%)(비급여, 약제비 미지원)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는 진료비 지급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교부하고 동 공단은 이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 ▶ 보훈의료비 지원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병원의 의료이용이 확대되면서 위탁병원 진료비 비중은 2015년 38.3%에서 2023년 40.7%로 점진적으로 증가함

표 3 최근 9년간 보훈의료비 관련 예산 현황: 2015~2023년

(단위: 억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상승률(%)
보훈의료비(a)	5,260	5,524	5,666	5,913	6,406	6,276	6,422	6,380	6,574	2.8
보훈병원 진료(b)	3,244	3,404	3,449	3,647	3,872	3,782	3,943	3,855	3,899	2.3
위탁병원 진료(c)	2,016	2,120	2,217	2,267	2,534	2,494	2,479	2,526	2,674	3.6
보훈병원 비중(b/a, %)	61.7	61.6	60.9	61.7	60.4	60.3	61.4	60.4	59.3	-0.5
위탁병원 비중(c/a, %)	38.3	38.4	39.1	38.3	39.6	39.7	38.6	39.6	40.7	0.8

자료: 국가보훈처, 2021년,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3. 보훈의료비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보훈 관련 8개 법률의 입법 동향을 보면,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위탁병원 감면 대상 확대,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등 의료지원 관련 내용의 법률안⁵⁾ 제안이 증가하고 처리건수도 증가추세

- 제21대 국회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7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9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0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6건 등, 보훈관련 법률에 대한 총 257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69건이 처리(27건 공포, 대안반영 폐기 40건, 철회 2건)되었으며, 188건이 계류 중임
- 이 중 보훈 의료지원 관련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건 등 총 50건으로 전체 제안건수의 19.5%를 차지함

5) 본 고에서 의료지원 관련 내용의 법률안은 법안의 취지 또는 조문에서 의료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

- 또한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의 처리 실적을 보면, 제20대 국회에서 4년간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이 39건 제안되어 4건이 처리(임기만료폐기건수 제외)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2월 현재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이 50건 제안되고, 16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 제20대 및 제21대 국회 보훈 관련 8개 법률안 제안 및 처리 현황 비교

(단위: 건, %)

법률명	전체 제안건수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 제안건수				제안(처리)건수 대비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 비중(%)			
	제안(a)		처리(b)		제안(c)		처리(d)		제안(c/a)		처리(d/b)	
	제20대	제21대	제20대	제21대	제20대	제21대	제20대	제21대	제20대	제21대	제20대	제21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1	27	14(6)	6(4)	2	4	0	0	6.5	14.8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5	69	15(7)	15(4)	13	13	2(1)	2(1)	20.0	18.8	13.3	1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8	19	6(3)	8(2)	1	3	0	1(1)	5.6	15.8	-	1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1	20	8(4)	8(4)	1	2	0	2(1)	4.8	10.0	-	2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3	50	8(4)	8(4)	17	20	0	4(1)	32.1	40.0	-	5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5	25	12(6)	10(4)	2	1	1(1)	2(1)	8.0	4.0	8.3	2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	21	6(4)	5(2)	1	2	1(1)	2(1)	6.3	9.5	16.7	4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	26	10(6)	9(3)	2	5	0	3(1)	10.5	19.2	-	33.3
합 계	248	257	79(40)	69(27)	39	50	4(3)	16(7)	15.7	19.5	5.1	23.2

주: 1. 처리는 해당법률안의 원안결, 수정결, 대안반영폐기의결, 철회 포함이고, 임기만료폐기건수는 제외함

2. () 안은 개정법률 공포 건수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3.2.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21대 국회 보훈의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위탁병원 감면대상자를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거나(연평균 2,975억원),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약제비를 지원하는(연평균 7,600만원) 등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5 제21대 국회 보훈의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 및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의안명	제안자 (발의/제출일자)	재정수반요인	5년간 재정소요 (연평균)	비고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2020.6.23)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1,367 (273)	계류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2022.12.5)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560 (112)	계류 중
	전봉민의원 (2022.7.28)	위탁병원 감면대상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추가	12,058 (2,412)	계류 중
	강민국의원 (2020.6.22)	위탁병원 감면대상 65세~74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유족 추가	29,482 (5,896)	계류 중
	김성원의원 (2020.6.24)	위탁병원 감면대상자를 보훈병원 감면대상인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1,487,586 (297,514)	계류 중
	김철민의원 (2020.8.7)	위탁병원 감면대상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로 확대, 위탁병원 감면대상 내역에 약제비 추가 등	132,434 (26,487)	계류 중
	윤주경의원 (2023.1.20)	75세 미만 무공수훈자, 전연령의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를 위탁병원 감면대상 75세 이상에 추가 및 약제비 지원	77,632 (15,526)	계류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 (2022.12.5)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40,544 (8,109)	계류 중
	이학영의원 (2020.8.20)	65세~74세 미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지원 대상 추가	43,845 (8,769)	계류 중
	장제원의원 (2020.8.3)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위탁병원 100% 감면	92,046 (18,409)	계류 중
	성일종의원 (2020.11.12)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134,656 (26,931)	대안반영 폐기
	정진석의원 (2020.6.25)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연령제한 폐지 및 약제비 지원	184,082 (36,816)	계류 중
	이현승의원 (2020.9.17)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 면제, 65세~74세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지원대상으로 추가	95,228 (19,046)	계류 중
	구자근의원 (2020.12.23)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위탁병원 지원	88,945 (17,789)	계류 중
	심상정의원 (2021.4.26)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지원	131,002 (26,200)	계류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양기대의원 (2021.6.25)	등급미달 고엽제후유증환자 대한 의료지원	39,729 (7,946)	계류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만희의원 (2021.5.25)	7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약제비 지원	382 (76)	계류 중

주: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안자는 대표발의의원임

2. *표시한 2개의 개정안은 2022.12.5.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되어 2023년 2월 현재 계류 중이며, 정부는 동 2개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2023년 19억 5,900만원을 위탁병원 진료사업 내에 기편성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3.2.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보훈의료비 장기재정소요 전망

보훈의료비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별로 의료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로 구분하여 연인원을 각각 추정한 후, 여기에 각 진료단가를 곱하여 총진료비를 추산함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⁶⁾ 수를 추정한 후, 여기에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승수 2.09⁷⁾를 곱하여 산출하며, 연인원수는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대비 연인원 승수를 곱하여 추정
 - ▶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본인과 유족으로 구분하여 성별·연령별, 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을 적용하여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추정⁸⁾
 - ▶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대비 연인원 승수는 보훈병원 국비연인원의 경우 1.6, 보훈병원 감면연인원 1.0, 위탁병원 국비연인원 1.7, 위탁병원 감면연인원 0.6을 곱하여 추정⁹⁾

표 6 연인원 추계: 2024~2050년

(단위: 명, %)

		2024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보훈병원	국비	2,689	2,661	2,481	2,275	2,079	1,874	1,711
	감면	1,670	1,653	1,541	1,413	1,291	1,164	1,063
위탁병원	국비	2,897	2,867	2,673	2,451	2,240	2,019	1,844
	감면	1,000	989	922	846	773	697	6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별로 국비단가, 감면단가를 추세분석방법¹⁰⁾을 이용하여 추정

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는 834,126명이고, 1,708,500명에 달하는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중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는 속하지 않는 유가족, 등급기준 미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7)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승수는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를 국가보훈대상자 수로 나눈 값으로, 2019~2021년 기준 승수 2.09를 인용(국회예산정책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2022.8.)』, p83)

8)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 결과를 인용하여 현재의 연령별 인구변동 요인(사망률, 순이동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보훈대상자를 추정

9) 보훈의료지원대상자 대비 연인원 승수는 진료연인원 수를 보훈의료지원대상자 수로 나눈 값으로, 최근 8년간(2015~2022년) 평균치 적용

10)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 연구(2022.8.)」에 따르면, 진료단가 추계 시 추세분석모형의 오차율이 낮게 나타나고 이를 인용하여 산출

보훈병원 국비단가 추정식 = $3008.7 \times t + 71348$

보훈병원 감면단가 추정식 = $3228.04 \times t + 34464.48 + 4102 + 3228.04$

위탁병원 국비단가 추정식 = $1966.8 \times t + 51496 + 4385 + 1966.8$

위탁병원 감면단가 추정식 = $1110.8 \times t + 10213 + 2965.8$

표 7 진료단가 추계: 2024~2050년

(단위: 천원, %)

		2024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보훈병원	국비	105	107	121	134	148	162	175
	감면	88	91	107	123	139	154	170
위탁병원	국비	87	89	99	109	119	129	138
	감면	30	31	37	42	48	53	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위에서 산출한 연인원 수에 진료단가를 곱하여 보훈병원 총진료비와 위탁병원 총진료비를 추정한 후 합산한 보훈의료비는 2024년 7,118억원을 비롯하여 2050년에는 7,732억원으로 추정

- 보훈병원 진료비는 2024년 4,289억원을 비롯하여 2050년까지 4,805억원으로 추정되고, 위탁병원 진료비는 2024년 2,829억원을 비롯하여 2050년 2,927억원으로 예상

표 8 보훈의료비 추계: 2024~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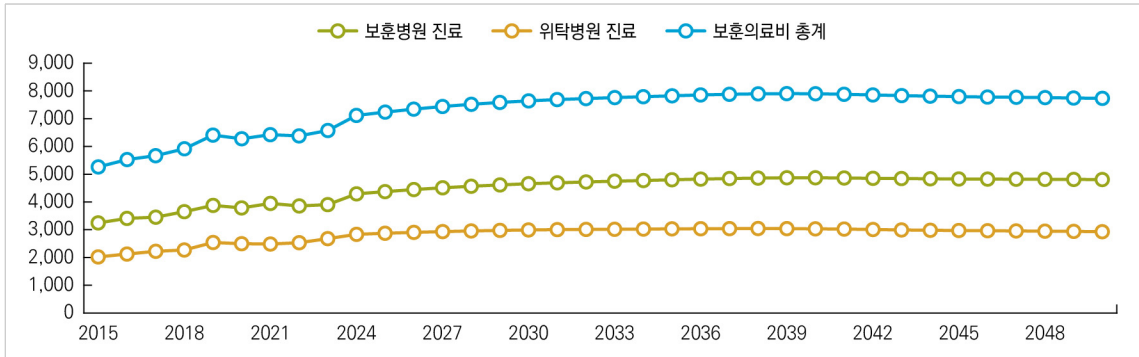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24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보훈병원	국비(a)	2,816	2,859	3,002	3,060	3,077	3,028	2,996
	감면(b)	1,473	1,510	1,651	1,737	1,791	1,798	1,810
	합계(c=a+b)	4,289	4,370	4,653	4,797	4,868	4,826	4,805
위탁병원	국비(d)	2,530	2,561	2,651	2,671	2,661	2,598	2,553
	감면(e)	298	306	337	356	368	370	374
	합계(f=d+e)	2,829	2,867	2,987	3,027	3,029	2,968	2,927
총진료비(c+f)		7,118	7,237	7,640	7,824	7,897	7,794	7,7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 보훈의료비 전망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결론 및 시사점

보훈의료비는 보훈대상자 수의 감소를 전제로 연인원을 추정하고, 진료단가는 추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장기전망 지출규모를 추정하였음

제21대 국회 들어 보훈의료지원 관련 법률안의 제안 및 처리건수 증가로 보훈의료지원이 확대되고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재정소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보훈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로 실질적인 증가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지원 정책의 변화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수요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재정 예측의 한계가 존재함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남 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7)

1. 논의배경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 및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은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보완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 증대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1)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연금체계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역할 및 기능은 미흡한 상황
 - ▶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2021년 기준 295조원)나 사용자부담 수준(임금총액의 8.33%) 등에 비해 연금화 비율이 낮고(2021년 기준 4.3%²⁾),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2021년 기준 5인 미만 11.8%)이 저조함에 따라 노후보장체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자료: 통계청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2022.9.29.

2)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

2.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기업분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사업대상)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특징)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가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갈등 및 재원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 (근로자)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직 등으로 인한 직장 변동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가능
 - ▶ (사용자) 법인세 절감³⁾ 및 정기적 부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 평준화 등 재무적 이점
- (수급요건)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참고]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 1953년 임의제도로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61년 의무제도로 변경, 이후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961년 30인 이상 → 1987년 10인 이상 → 2010년 모든 사업장)하였으며,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

Ⅰ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Ⅰ

구 분	연도	주요내용
퇴직금제도 도입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임의제도'로서 퇴직금제도 도입
퇴직금제도 강제 전환	1961년	퇴직금제도를 '의무제도'로 변경하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
퇴직금제도 확대	1987년	퇴직금제도를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정 및 퇴직연금제도 시행
퇴직금제도 의무화	2010년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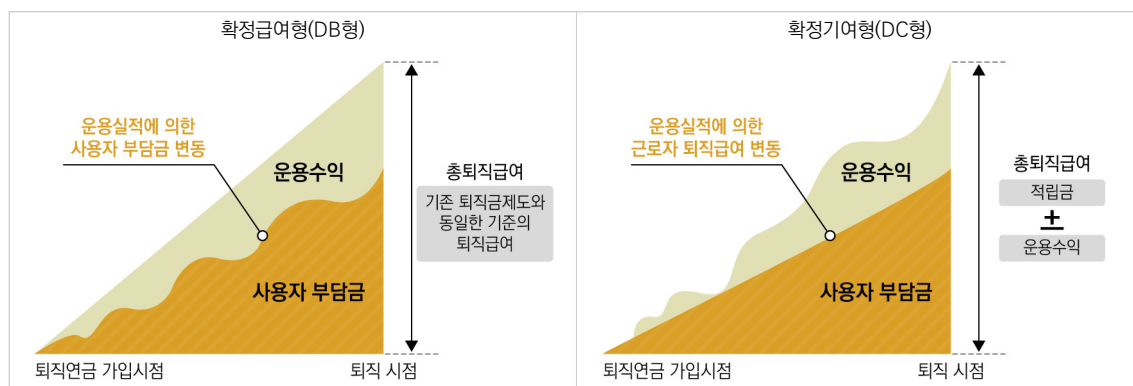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무사회, 「2022 퇴직연금도입·운영지원교육」, 2022.

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는 2016년부터 전면 폐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⁴⁾ 퇴직금과 동일)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수령하며, 사용자는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⁵⁾)되어 있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 ▶ 사용자는 매년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수령⁶⁾

그림 2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19.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6)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2022.04.17.

표 1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 수준	확정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일시금 기준)	변동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부담금 부담수준	—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금 운용 주체	—	사용자	근로자
적립금 운용 책임	—	사용자	근로자
연금 수령 조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2.do>(2023년 1월 24일 접속)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기업형 IRP, 개인형 IRP로 구분되며, IRP 특례는 기업형 IRP를 의미함⁷⁾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
 - ▶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및 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자영업자 및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과 유사하게 운영됨⁸⁾
 - ▶ IRP 특례란 기업형 IRP를 의미하며⁹⁾ 이는 소규모 기업에서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 가입자 교육의무 면제 등¹⁰⁾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를 의미함¹¹⁾

7) 류건식·강성호,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 「고령화리뷰」 제37호, 보험연구원, 2020.07.27.

8)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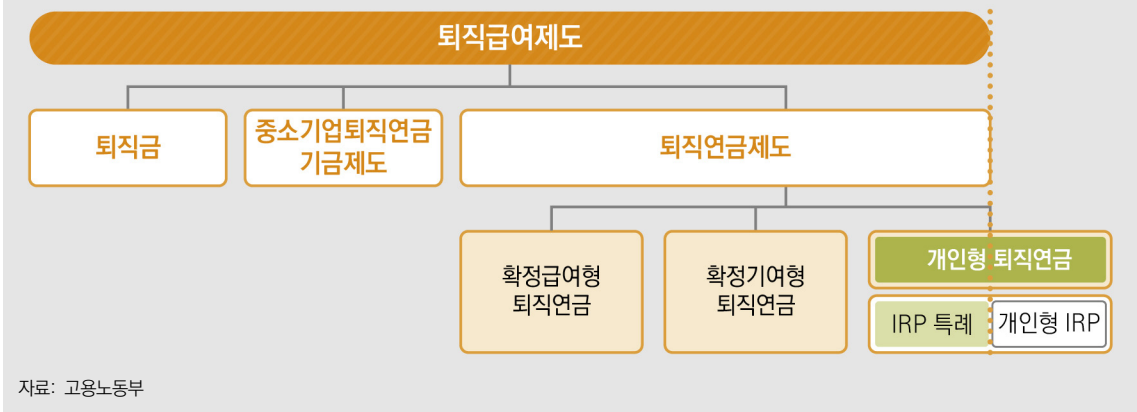
9) 류건식·강성호,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 「고령화리뷰」 제37호, 보험연구원, 2020.07.27.

10)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8.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참고]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 체계



3. 현황

퇴직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전년(52.4%) 대비 0.9%p 상승한 53.3%이며, 이들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원임¹²⁾

-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 적립금이 149조원으로 50.5%이며, 생명보험사 22.2%, 증권사 21.3%, 손해보험사 4.8%,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함

표 2 연도별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및 적립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입률(%)	48.2	49.3	50.2	51.3	51.5	52.4	53.3
적립액(조원)	125	145	167	189	220	255	295

합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주)}
295	149(50.5%)	63(21.3%)	65(22.2%)	14(4.8%)	4(1.2%)

주: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가입자로 참여(출처: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혁신」, 2021.10.)

자료: 1.국가통계포털, 퇴직연금 통계, 각 연도
2.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1.8%, 5~9인 사업장은 30.2%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7% 수준으로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12) 가입률이란,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가입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적립액이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특례 적립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표 3 2021년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단위: %)

합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53.3	11.8	30.2	48.3	56.3	60.8	68.5	70.7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

-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295조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58.0%),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6.0%), IRP특례(0.4%) 순서임

표 4 2021년 유형별 적립액

(단위: 조원)

합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IRP 특례
295	171	75	47	1.1

주: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

-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전년 (96.7%) 대비 1%p 감소한 95.7%이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4.3%임
 - ▶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기준 수급을 개시한 총 9.3조원 중 34.3%인 3.2조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일시금 수령 계좌가 상대적으로 계좌당 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2021년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원, %)

구 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좌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	0.16	—	0.24	—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2022.04.17.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구입(65.2%), 주거임차(23.5%)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88.7%에 이르며, 전체 중도인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94조원으로 연도 말 적립액 295조원의 0.7% 수준

표 6 2021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단위: 억원, %)

	주택구입	주거임차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기타	합계
금액	12,659	4,555	787	30	905	467	19,403
비율	65.2	23.5	4.1	0.2	4.7	2.4	100.0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12.

최근 퇴직연금 관련 입법동향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제도 일원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일원화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함
 - ▶ 2020~2023년(제21대 국회) 발의된 개정안 중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¹³⁾ 도입 등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108844)」 등은 의결됨

표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주요 개정안: 2020~2023년(제21대 국회)

구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유형	주요내용	심사진행단계
가결 법안	안호영의원 (2020-07-23)	퇴직급여제도 일원화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30인 이하 중소기업기업 종사자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 도입 등	공포
	환경노동위원장 (2021-12-08)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확정기여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 부여	공포
	윤창현의원 (2021-03-17)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대안반영폐기
	안호영의원 (2021-01-21)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산운용기관과 적 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체결 운용 허용 및 사전지정운 용제도 도입 등	대안반영폐기
	김병욱의원 (2021-02-02)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DB형 사용자와 자산운용기관과의 투자일임계약 허용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설정 사업장의 적립금운용계 획서 작성 의무	대안반영폐기
계류 법안	이수진의원 (2020-06-04)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소관위심사
	한정애의원 (2020-08-24)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 도입	소관위심사
	류호정의원 (2021-05-04)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의무화	소관위심사
	장철민 의원 (2022-04-07)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운영개 선계획서 제출 및 공개	소관위심사
	안호영의원 (2022-05-12)	퇴직급여제도 일원화	퇴직금 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소관위심사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3.1.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
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 주요 퇴직연금 제도개선 사항
 - ① (퇴직금제도의 IRP 적립 의무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연금계좌의 가입률 제고
 - ②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와 근로자 공동 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의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¹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 ③ (사전지정운용제도) 확정급여형과 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
 - *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익률 강화를 도모
 - ④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¹⁵⁾하여 수익률 강화를 도모
 - 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확정급여형과 퇴직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임금 피크제 및 소정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화
 - ⑥ (퇴직연금 적립의무 강화)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사용자는 최소 적립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하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1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무화¹⁶⁾

[참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현황) 2022년 4월 13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38호)」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022년 9월 계약체결 개시
- (내용)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 퇴직연금을 토대로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
 - * (사업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 (사업방법)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함으로써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 (재정지원) 2023년 기준 월 242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
 - * 1인당 최대 242,000원,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0명, 최대 3년
- (재정) 2023년 예산액 92억 4,000만원

14) 임예진·양현경,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약칭 중소퇴직기금)의 도입 의의와 방향성”, 「퇴직연금브리프」 2021년 제3호,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 2021.10.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38호) 개정이유

16) 관계부처 합동,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2022~2026년)”, 2022.10.

4. 퇴직연금에 관한 해외 동향

국제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multi-pillar pension system)를 권고

- (OECD) 의무연금(1층), 소득비례 공공연금(2층), 소득비례 퇴직연금(3층), 자발적 개인연금(4층)
- (World Bank) 공적부조 방식의 기초연금(0층),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1층), 의무 적용되는 개인연금(2층), 자발적 선택 연금(3층), 비공식직원(가족) 또는 의료 및 주택 등 공식적 사회보장제도(4층)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권고
 - ▶ World Bank의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은 2층에 속하며, 해당 영역은 투자 및 투자관리자 선택, 인출 등과 같은 다양한 설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시장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밝힘¹⁷⁾
- (ILO) ILO는 기초연금(0층), 의무 사회보험(1층), 보충연금(2층), 자발적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다층적 연금체계를 강조하였으며, ILO의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은 2층 보충연금에 해당함¹⁸⁾

미국

- 미국의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기업연금, 개인저축방식의 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되며, 401(K)는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임¹⁹⁾
 - ▶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에 있어 퇴직 전 연금의 중도 인출이 퇴직 이후 소득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이나 중도인출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01(K)는 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조세 페널티(tax penalty)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의 인출을 제한함²⁰⁾
 - ▶ 2020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퇴직연금은 35.3조 달러규모이며, 이 중 401(K)가 포함된 DC형이 10.0조달러에 이르며, 401(K)의 가입자의 운용현황을 보면, 뮤추얼펀드, 일반 주식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며, 이 중 뮤추얼펀드의 투자비율이 가장 높음

17) World Bank, Pension Systems and Reform Conceptual Framework,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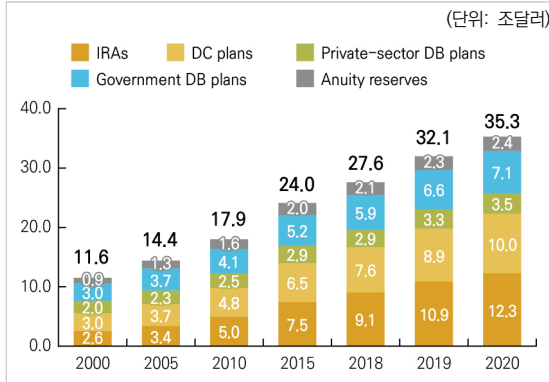
18) ILO Social Protection for All Issue Brief, The ILO Multi-Pillar pension model, 2018.

19) 미국의 퇴직연금 자산규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RAs(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노후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자료: <https://www.irs.gov/ko/newsroom/iras-are-one-tool-in-the-retirement-planning-tool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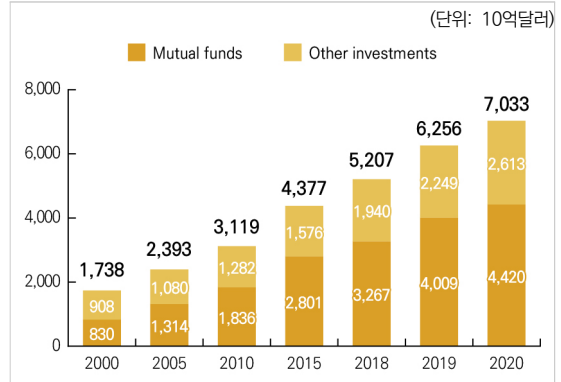
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ving for Retirement: Household Decisionmaking and Policy Options", 2020, p.23.

그림 3 미국의 은퇴시장(retirement Market) 자산규모



자료: https://www.ici.org/statistical-report/ret_22_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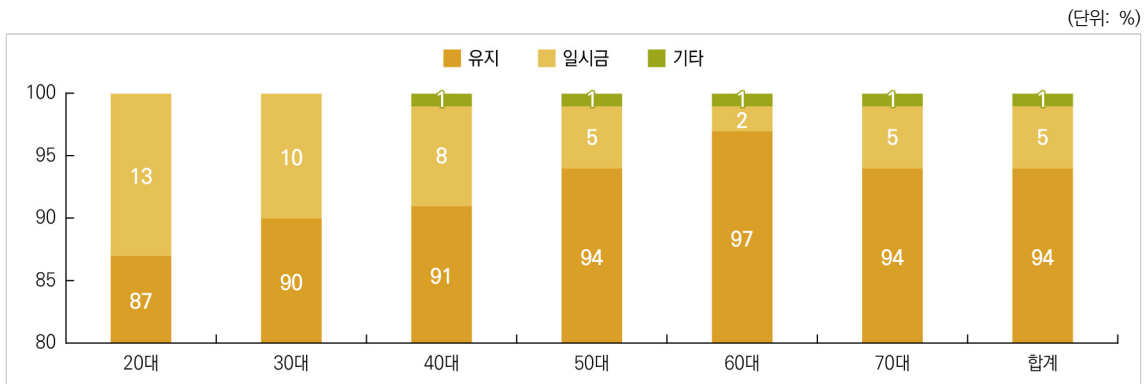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401(K) 운용현황



- 미국의 퇴직연금 인출 분포를 보면 대부분 연금화를 선택하고 있음
 - ▶ 미국은 은퇴가 시작되는 60대의 경우 연금자산의 2%만 일시금으로 인출함²¹⁾
 - ▶ 영국과 같은 퇴직연금자동가입제도는 없지만, 퇴직연금에 대해 부과하는 과세체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화를 선택하는 상황임
- 2020년 6월 미국 노동부는 401(K) 등과 같은 퇴직연금에서 private equity* 투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보서한(information letter)을 발표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²²⁾

* private equity란, 증권거래소에 공개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함

그림 5 미국의 DC형 적립금의 일시금인출 현황



주: 연령층별 연금자산 잔액기준 분배

자료: 송홍선,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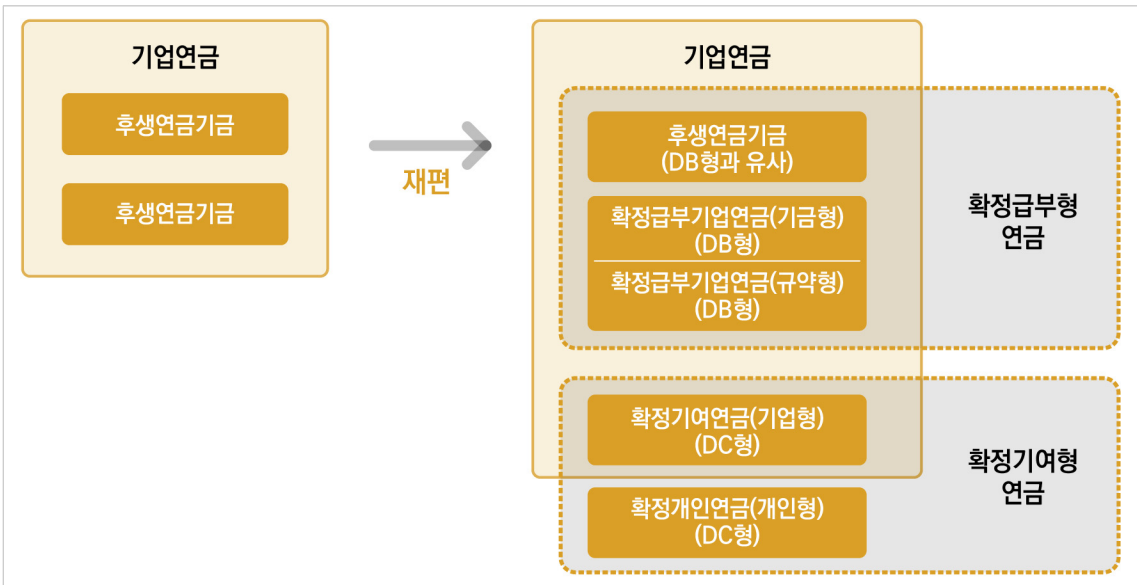
21) 송홍선,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22.03.

22) <https://www.dol.gov/agenci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information-letters/06-03-2020> (2023년 2월 2일 접속)

일본

- 일본의 연금제도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국민연금)을 토대로 파용자연금, 기업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된 다층 연금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 이 중 기업연금 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퇴직금에 대한 지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퇴직금 지불부담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적격퇴직연금제도와 후생연금제도를 토대로 시작
 - ▶ 이 중 적격퇴직연금제도는 신규 설립 중지(2002년 4월) 등으로 2012년 3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기여연금 등으로 이행
 - ▶ 또 다른 기업연금제도인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경영상황의 악화 및 기여금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2013년 법률의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신규 설립이 중지되었지만, 건전한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존속이 인정되고 있어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는 폐지된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기여연금이 공존하는 구조임²³⁾

그림 6 일본의 기업연금 재편 이후 기업연금의 종류와 형태



자료: 1.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https://www.pfa.or.jp/nenkin/nenkin_tsusan/nenkin_tsusan01.html (2023년 2월 2일 접속)
 2.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kigyounenkin.html (2023년 2월 16일 접속)

23)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https://www.pfa.or.jp/nenkin/nenkin_tsusan/nenkin_tsusan01.html (2023년 2월 2일 접속)

- 최근 일본은 2020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령자 취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형 DC의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단행
 - ▶ 또한 중소기업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을 종전 1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조정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시행²⁴⁾

영국

- 영국의 연금제도는 국가주도의 공적연금과 기업 혹은 개인 주도의 사적연금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다층구조를 지니며, 사적연금에 퇴직연금이 포함됨²⁵⁾
 - ▶ 영국은 2000년대에 이르러 퇴직연금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됨²⁶⁾
 - ▶ 영국 정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은퇴자산 옵션의 제공과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ment, AE)를 도입(2012년)하였으며, 이후 가입 의무 사업장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²⁷⁾한 결과 2023년 기준 1인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구조임²⁸⁾
 - ▶ 또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퇴직연금 전문 운용 공공기관인 국민고용저축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을 설립하였으며, NEST는 저렴한 수수료 등을 통해 중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률 확대를 위해 설계된 퇴직연금사업자를 의미함²⁹⁾
- 영국의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s) 가입자는 2012년 퇴직연금개혁(workplace pension reforms)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2012년 780만명이었던 현직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수(active membership³⁰⁾)는 2018년 1,730만명까지 확대되었으며, 퇴직연금의 가입확대는 2012년 자동가입제도의 도입에 기인함
 - ▶ 현직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중 민간부분(private sector) 가입자는 2012년 270만명에서 2018년 1,1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분(public sector)은 같은 기간 510만명에서 630만명으로 증가하여 자동가입제도의 도입으로 민간부분 가입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³¹⁾

24) 일본 연금통신, "사적연금의 제도 개정에 대해(개정판)", 2020.6.5. <https://nenkintsushin.dai-ichi-life.co.jp/index.php> (2023년 2월 16일 접속)

25) 한국재권연구원,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p.80.

26) 정민아,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27) 정원석,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가입률 변화와 시사점", KIRI리포트, 20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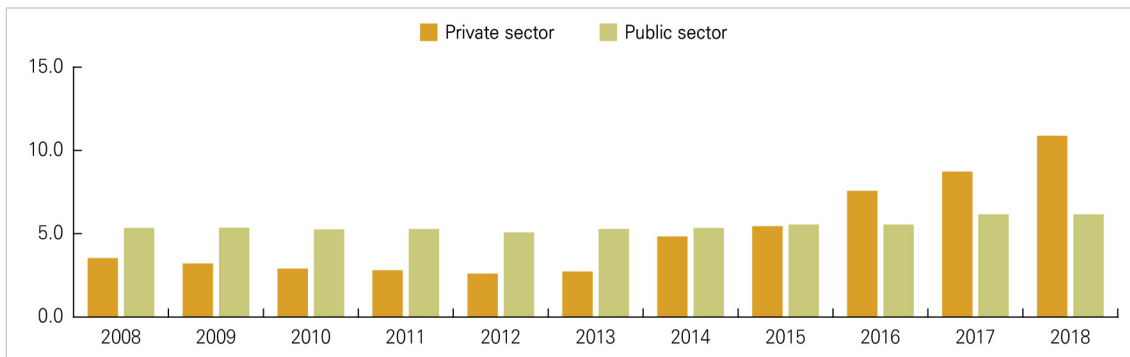
28) <https://www.thepensionsregulator.gov.uk/en/employers> (2023년 2월 3일 접속)

29) 정민아,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

30) current employees who would normally contribute

31)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pensionssavingsandinvestments/bulletins/occupationalpensionschemesurvey/2018#main-points> (2023년 2월 16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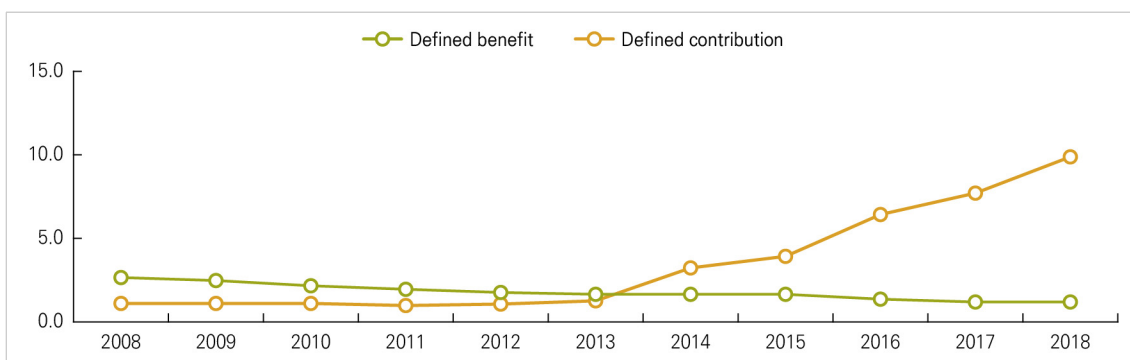
그림 7 영국 현직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현황



자료: 영국 통계청,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urvey", UK: 2018.

- ▶ 이러한 민간부분의 퇴직연금의 증가는 DC형의 증가에 기인하며, 2008년 100만명에 불과하던 민간부분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8년 990만명까지 증가함³²⁾

그림 8 영국 퇴직연금 중 민간부분(private sector) 가입 현황



자료: 영국 통계청,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urvey, UK: 2018.

- 최근 영국은 2021년 2월 연금법을 개정하여 집단형 확정기여(Collective DC, CDC)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짐
 - ▶ CDC형이란, 퇴직연금의 새로운 운영형태로 연금자산을 집단적으로 운용하여 연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DB형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의 부담이 적으며, DC형과 달리 집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간 위험을 분담한다는 장점이 있음
 - ▶ 그러나 CDC형은 투자 위험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세대 간 공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³³⁾

32) 영국 통계청,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Survey", UK: 2018.

5.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시사점

퇴직연금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부분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의 보완책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도의 역사가 짧고, 이로 인해 연금의 수령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임

퇴직연금의 가입률·연금전환율·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 (가입률)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2014년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며,³⁴⁾ 2022년에도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밝힘³⁵⁾
 - ▶ 실제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2021년 기준 53.3%)하고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11.8%,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30.2%만이 가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8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인 미만 사업장	10.6	11.0	11.3	11.3	12.1	11.9	11.8
5~9인 사업장	24.4	25.5	26.9	28.4	29.4	29.6	30.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연금전환율)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종사자의 4.3%(2021년 기준)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34.3%만이 연금으로 수령
 -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시금 형태의 수령은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연금퍼즐³⁶⁾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도인출이나 해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던 종전의 급여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종신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강화³⁷⁾ 등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33)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Pensions: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CDC) schemes, 2022.8.

34) 관계부처 협동,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4.08.27.

35) 관계부처 합동,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2022~2026년)”, 2022.10.

36) 연금퍼즐이란 은퇴자의 장수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신연금이 유리하다는 이론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화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37)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혁신」, 2021.10.

- (수익률) 퇴직연금의 2021년 기준 연간수익률은 전년(2.58%) 대비 0.58%p 감소한 2.00% 수준임
 - ▶ 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권역의 수익률이 3.17%이며, 생명보험(1.93%), 손해보험(1.69%), 은행(1.59%) 및 근로복지공단(1.31%)의 순서임

표 9 2021년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구 분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근로복지공단	전체
연간수익률(%)	3.17	1.93	1.69	1.59	1.31	2.00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퇴직연금 1년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달성”, 2022.04.17.

- ▶ 국내 퇴직연금은 2021년 기준 전체 적립금(295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에 적립된 재원이 255조원에 이르러 다양한 자산에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용상품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의 활성화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조한 가입률, 저조한 연금회율,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점이 있음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상품의 다양화, 소극적 자산운용체계의 개선을 통한 운용성과 제고, 가입자의 추가 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³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지닌 이와 같은 문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므로,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미국의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및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과세부과체계, 일본의 2020년 연금개혁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된다는 점과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차원에서 다층연금체계의 공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부과체계 및 적정수준에 대한 검증 필요

- 퇴직연금의 적립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2021년 기준 295조원에 이르고 장기적으로 운용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
- 최근 국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³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⁴⁰⁾하도록 함

38) 이태호, 「연금연구: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KDI 연구보고서, 2015.07.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수수료)

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1호의4

- 또한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⁴¹⁾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 퇴직연금 수수료는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⁴²⁾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나, 퇴직연금 유형⁴³⁾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율만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비교나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
- 퇴직연금은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재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해 운용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경우 대리인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⁴⁴⁾
 - ▶ 과도한 수수료가 가입자의 자산 축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의 2021년 기준 연간수익률이 2.0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수수료율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⁴⁵⁾

최근 국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2022년 새로운 퇴직연금 운영방식을 제시하였으므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필요

- 최근 국회는 2021년 4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신규 제도를 도입
 - ▶ 동 법의 개정에 따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퇴직연금 수입률 강화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화 등이 새롭게 시행
 - ▶ 이러한 개선방안은 법률의 경과 규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새롭게 도입된 개편 방안의 안정적인 안착 필요
 -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4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42) 금융투자협회,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main/main.xml>

43) DC형 및 DB형 등을 의미한다.

44) 신성환,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투자협회 Bulls Review」, 2012년 12월호, 2012, p.18

45) 실제 최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등이 제시된 바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2022.12.21.)

II

조세 동향 및 이슈

조세 동향
조세 이슈 및 분석

조세 동향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맥주 및 탁주 등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 조정
최근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 동향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2021년 대비 51.9조원(15.1%) 증가하였으며, 2차 추경예산(이하 추경예산) 대비로는 0.7조원(0.2%) 부족 수납

- 기업실적 호조 및 내수·고용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 시현
 - ▶ 최근 5년 국세수입 증감률(전년대비, %)
 - (‘18) 10.6 ⇒ (‘19) △0.04 ⇒ (‘20) △2.7 ⇒ (‘21) 20.5 ⇒ (‘22) 15.1

표 1 2022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1년 실적 (A)	'22년			'21년 실적 대비		'22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B)	2차 추경 (C)	실적 (D)	증감액 (E=D-A)	증감률 (E/A)	차이 (F=D-C)	차이율 (F/C)
총국세	344.1	343.4	396.6	395.9	51.9	15.1	△0.7	△0.2
◦소득세	114.1	105.8	127.8	128.7	14.6	12.8	0.9	0.7
- 종합소득세	16.0	21.6	21.6	23.9	7.9	49.7	2.4	11.0
- 양도소득세	36.7	22.4	34.2	32.2	△4.5	△12.2	△2.0	△5.8
- 근로소득세	47.2	47.7	58.0	57.4	10.2	21.6	△0.5	△0.9
◦법인세	70.4	74.9	104.1	103.6	33.2	47.1	△0.5	△0.5
◦상속증여세	15.0	13.1	15.9	14.6	△0.4	△2.7	△1.3	△8.2
- 상속세	6.9	6.1	7.7	7.6	0.7	9.6	△0.1	△0.9
- 증여세	8.1	7.0	8.2	7.0	△1.1	△13.4	△1.2	△15.1
◦부가가치세	71.2	77.5	79.3	81.6	10.4	14.6	2.3	2.9
◦개별소비세	9.4	10.1	10.1	9.3	△0.0	△0.5	△0.8	△8.1
◦증권거래세	10.3	7.5	7.5	6.3	△4.0	△38.5	△1.2	△16.4
◦인지세	1.0	0.9	0.9	0.8	△0.2	△16.8	△0.1	△15.7
◦과년도수입	5.1	6.2	6.2	7.3	2.2	42.1	1.2	18.9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5.4	10.9	11.1	△5.5	△33.0	0.2	2.0
◦관세	8.2	8.7	10.1	10.3	2.1	25.5	0.3	2.6
◦교육세	5.1	5.3	4.7	4.6	△0.5	△9.0	△0.1	△1.8
◦종합부동산세	6.1	7.4	8.6	6.8	0.7	10.9	△1.8	△21.1
◦주세	2.7	3.7	3.7	3.8	1.1	40.9	0.0	0.8
◦농어촌특별세	8.9	6.7	6.7	7.0	△1.9	△21.2	0.3	5.0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3.2.10.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이 2022년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

- 소득세(128.7조원)는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실적 증가에 따라 전년(114.1조원) 대비 14.6조원(12.8%) 증가
 - ▶ 근로소득세(57.4조원)는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과 함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47.2조원) 대비 10.2조원(21.6%)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20) △21.9 → ('21) 36.9 → ('22) 81.6
 - 명목임금 증감률(%): ('19) 3.4 → ('20) 1.1 → ('21) 4.6 → ('22)¹⁾ 3.5
 - 특별급여 증감률(%²⁾): ('20) △1.4 → ('21) △3.9 → ('22) 34.6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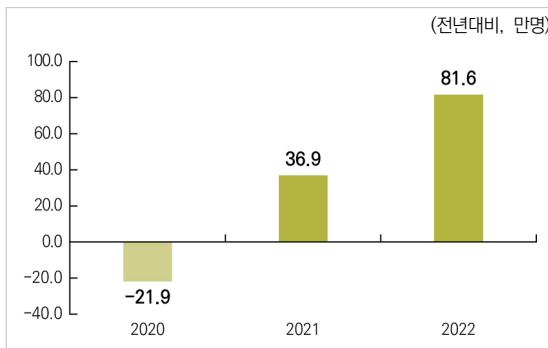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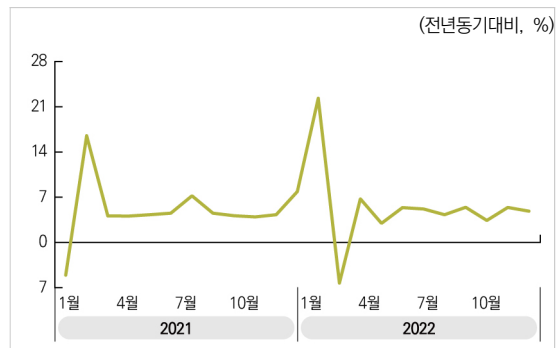


그림 2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통계청,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종합소득세(23.9조원)는 소비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증가로 전년(16.0조원) 대비 7.9조원(49.7%) 증가
 - 민간소비(명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 △3.8 → ('21) 6.2 → ('22. 상반기) 8.1
 -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0) △3.5 → ('21) 5.1 → ('22. 상반기) 15.4
- 법인세(103.6조원)는 대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2021년³⁾ 기업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70.4조원) 대비 33.2조원(47.1%) 증가
 - ▶ 통관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19) △10.4 → ('20) △5.5 → ('21) 25.7 → ('22. 상반기) 15.6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비금융) 세전순이익 증감률(연결기준, 전년동기대비, %): ('19) △50.0 → ('20) 9.4 → ('21) 121.6 → ('22. 상반기) 16.5

1) 202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2) 통상적으로 성과급 및 명절 상여 등 지급이 발생하는 12월, 1월, 7월, 9월 평균액의 합계 기준

3) 사업연도 종료 후 3~4개월 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영실적과 법인세 사이에는 통상 1년의 징수시차가 존재

그림 3 주요 수출품의 통관수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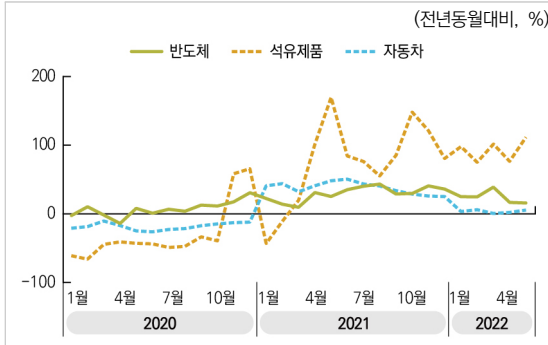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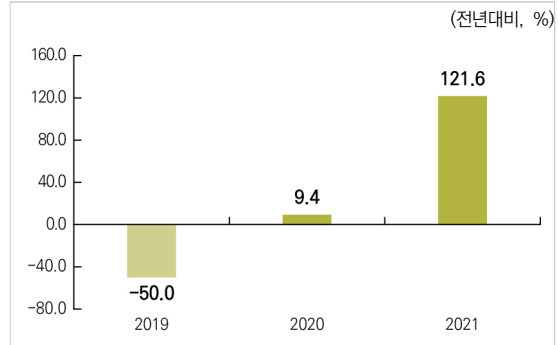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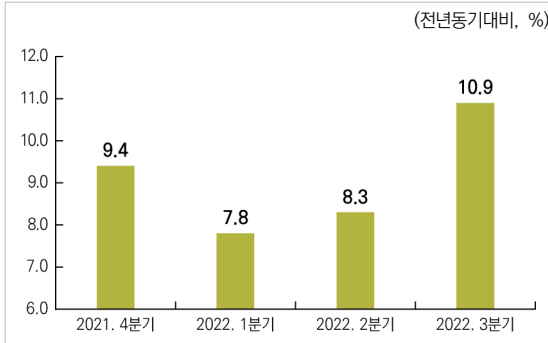
그림 4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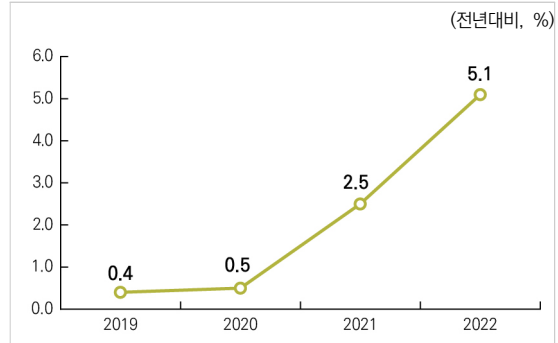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81.6조원)는 소비 회복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71.2조원) 대비 10.4조원(14.6%) 증가
 - ▶ 민간소비(명목)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1.4Q.) 9.4 → ('22.1Q.) 7.8 → (2Q.) 8.3 → (3Q.) 10.9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19) 0.4 → ('20) 0.5 → ('21) 2.5 → ('22) 5.1

그림 5 민간소비(명목)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6 소비자물가 상승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양도소득세(32.2조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36.7조원) 대비 4.5조원(12.2%) 감소
 - ▶ 부동산 가격 증감률(12월 가격 기준, %): 토지 ('20) 3.7 → ('21) 4.2 → ('22) 2.7
주택 ('20) 5.4 → ('21) 9.9 → ('22) △4.7
 - ▶ 부동산 매매건수 증감률(필지/동호수 기준, %): 토지 ('20) 35.8 → ('21) △5.6 → ('22) △37.8
주택 ('20) 58.9 → ('21) △20.6 → ('22) △49.9

- 증권거래세(6.3조원)는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주식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10.3조원) 대비 4.0조원(38.5%) 감소

▶ 연평균 주가지수(종가기준): 코스피 ('20) 2,220 → ('21) 3,111 → ('22) 2,522

코스닥 ('20) 753 → ('21) 996 → ('22) 816

▶ 주식 거래대금(조원): 코스피 ('20) 3,026 → ('21) 3,825 → ('22) 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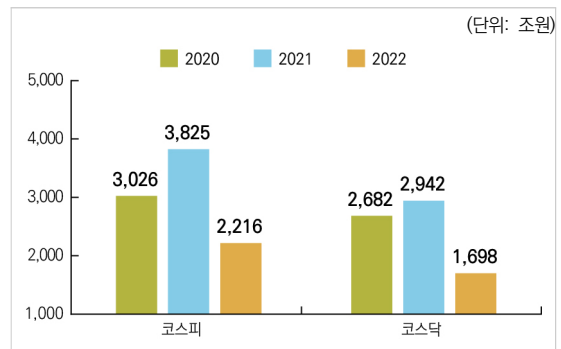
코스닥 ('20) 2,682 → ('21) 2,942 → ('22) 1,698

그림 7 코스피·코스닥 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8 주식 거래대금



- 증여세(7.0조원)는 증여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8.1조원) 대비 1.1조원(13.4%) 감소
 - ▶ 증여건수 증감률(필지/동호수 기준, %): 토지 ('20) 16.4 → ('21) 0.8 → ('22) △21.0
 - 주택 ('20) 37.5 → ('21) △10.0 → ('22) △30.9
- 반면, 종합부동산세(6.8조원)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전년(6.1조원) 대비 0.7조원(10.9%) 증가
 - ▶ 2022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전년대비): 토지 9.9%, 단독주택 6.6%, 공동주택 17.2%
 - ▶ 단,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는 세수 증가를 일정부분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20) 90% → ('21) 95% → ('22) 60%
 -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일시적 2주택자⁴⁾·상속주택⁵⁾·지방저가주택⁶⁾ 등 합산배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⁷⁾

4)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정)

5)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등(저가주택 및 지분율 40% 이하로 상속주택은 무기한 제외)

6) 지방(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에 소재하는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채

7) 직전연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및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

소비 관련 기타 세목의 경우, 관세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유류 관련 세목은 전년대비 감소

- 관세(10.3조원)는 통관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8.2조원) 대비 2.1조원(25.5%) 증가
 - ▶ 통관 수입액 증감률(전년대비, %): ('20) $\Delta 7.1 \rightarrow$ ('21) 31.5 $\rightarrow$ ('22) 18.9
- 교통·에너지·환경세(11.1조원)는 고유가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16.6조원) 대비 5.5조원(33.0%) 감소
 - ▶ 개별소비세(9.3조원)도 전년(9.4조원) 대비 0.5% 감소

표 2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적용세율

(단위: 원/ℓ,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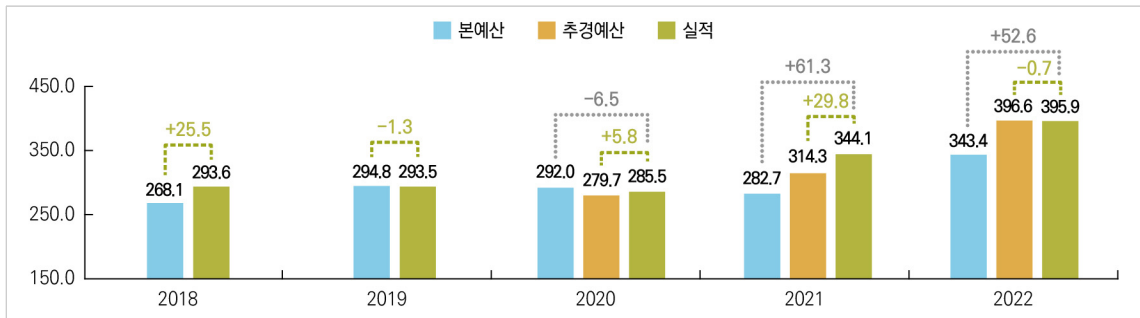
세목	품목	유류세 인하 전	유류세 한시 인하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529	423	370	332.5
	경유	375	300	263	238
개별소비세	부탄	275	220	193	176.4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자산시장 둔화 및 제도 변화⁸⁾ 등 영향으로 2022년 국세수입은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0.7조원(0.2%) 부족 수납

- 자산거래 감소세의 영향으로 관련 세수가 추경예산 대비 부족 수납
 - ▶ 양도소득세: 추경예산(34.2조원) 대비 $\Delta 2.0$ 조원 ($\Delta 5.8\%$)
 - 주택 매매건수(만호): ('22.1Q.) 13.8 $\rightarrow$ (2Q.) 17.2 $\rightarrow$ (3Q.) 10.8 $\rightarrow$ (4Q.) 9.1
 - ▶ 증권거래세: 추경예산(7.5조원) 대비 $\Delta 1.2$ 조원 ($\Delta 16.4\%$)
 - 코스피 월평균 거래대금(조원): ('22.1Q.) 218 $\rightarrow$ (2Q.) 202 $\rightarrow$ (3Q.) 159 $\rightarrow$ (4Q.) 159

그림 9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실적 추이

(단위: 조원)



주: 2018년과 2019년은 국세수입 총액을 변동시키는 세입경정이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22.7.1.)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2.8.2.)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2.9.15.)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맥주 및 탁주 등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 조정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1. 주요 동향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세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의 형태로 세율은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였는데¹⁾, 이러한 조정이 물가상승 시기에 주류 가격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종량세는 무게·수량 등의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출고량에 대해 동일한 세액이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어, 보완책으로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함
 - ▶ 참고로 종가세의 경우 출고가격의 변동이 세액에 자동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세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된 주세율의 상승이 주류 가격의 과도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주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세 종량세율을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됨²⁾

-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주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 「주세법」 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종량세율을 20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의 70% 수준인 3.57%로 변동할 예정³⁾
 - ▶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0년) 0.5 ('21년) 2.5 ('22년) 5.1
- 이에 따라 전년대비 주세율은 맥주 30.5원(855.2 → 885.7원/ℓ), 탁주 1.5원(42.9 → 44.4원/ℓ) 인상될 예정
 - ▶ 종량세율 인상폭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로 반영함에 따라 인하되는 세율은 맥주 13.1원/ℓ, 탁주 0.7원/ℓ 수준

1) 매년 4월 1일 반출(수입)분을 기준으로 조정

2) 시행 2023.4.1.(법률 제19201호, 2022.12.31. 일부개정)

3)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1.18.

표 1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세 종량세 세율 조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맥주 및 탁주의 주세를 조정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세율 × (1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세율 × (1 + 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주: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주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과세

2. 관련 제도 현황

2020년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가 주류에 대한 높은 과세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
 - ▶ 당시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인 제조장 출고가격에는 판매관리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데 반해,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인 수입신고 가격에는 국내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가세 과세체계 하에서 국산 주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 2020년 종량세 전환 이후 맥주의 세율은 2020년 830.3원/ℓ 에서 2023년 4월 885.7원/ℓ (예정)로, 탁주의 세율은 41.7원/ℓ 에서 2023년 4월 44.4원/ℓ (예정)로 상승

표 2 맥주 및 탁주의 주세를 변화

(단위: 원/ℓ)			
기간	과세체계	맥주	탁주
~2019년	종가세	72%	5%
2020년 1월~2021년 2월	종량세	830.3	41.7
2021년 3월~2022년 3월		834.4	41.9
2022년 4월~2023년 3월		855.2	42.9
2023년 4월~2024년 3월(예정)		885.7	44.4

- ▶ 참고로 종가세 적용 대상인 발효주(약주, 과실주, 청주)는 반출가격의 30%,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는 반출가격의 72% 세율을 적용

맥주의 경우 종량세가 적용된 2020년 이후 국내 및 수입맥주 간 과세 불균형 해소 등의 요인으로 국내분 맥주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⁴⁾

- 과세대상 출고량 중 국내분 비중(%): ('17년) 84.8 ('18년) 81.7 ('19년) 82.8 ('20년) 85.1 ('21년) 85.8

4) 탁주의 경우 국내분 출고량이 대부분을 차지

최근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 동향

문 석 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9)

1. 개 요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수 발표

-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에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을 발표
 - ▶ 한시적으로 유예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고,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2023년 7월)
-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023.1.3.)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자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 발표
 -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규제 추가 해제를 통한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 등
- 이 외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 2023.1.12., 2023.1.26.)을 통해 추가 규제완화책 발표
 - ▶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일시적 1주택 및 1입주권·분양권 보유자의 종전주택 및 대체주택 처분기한 연장
 -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2. 주요 개정안의 상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연장

- (개정내용)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며, 기존에 발표된 중과 배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임
-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¹⁾ 일부개정령 공포 완료(2023.2.28.)

1)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 관련 종전주택·대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3년으로 연장)
-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 관련)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3년으로 연장)

표 1 종전주택·대체주택 처분기한 관련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또는 대체주택 ¹⁾ 처분기한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 (조정→조정 ²⁾)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 1)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2)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2023.1.12.

-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일부개정령 공포 완료(2023.2.28.)
 - ▶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2.28. 공포), 종합부동산세²⁾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2.28. 공포)
 - ▶ (적용시기) 2023.1.12. 이후 양도 및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규제 추가 해제

- (개정내용)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³⁾, 투기과열지구⁴⁾를 유지(투기지역도 동일)하고, 기타 서울 21개구 및 경기 4개 지역(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⁵⁾ 추가 해제(2023.1.3. 발표)
 - ▶ 규제지역 해제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제도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해제하며, 2023.1.5.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 (시행) 2023.1.5.부터 효력 발생

2)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3) 「주택법」 제63조의2 등,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년연도 대비 30% 증가,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곳 등

4) 「주택법」 제63조 등,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 10: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실적·건축허가건수가 감소,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

5) 경기도 기타 22곳의 경우는 2022.11.10.에 규제지역 해제

표 2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 적용의 비교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거주	2년 보유 (단, 양도대상 자산은 최초 취득 시 비규제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 요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처분, 신규주택 전입 불필요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기본세율+30%p 단, 중과 배제 한시 유예(~'24.5.9.)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원칙, 단, 한시적으로 보유기간별 6~30%의 공제율 적용(~'24.5.9.)	보유기간별 6~30%의 공제율 적용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하 추진 예정

- (개정내용)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유형별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기본세율로 환원
- (개정경과)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개정안 발표 예정

표 3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의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보유기간	세율	보유기간	세율
분양권 ¹⁾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기본세율)
주택·입주권 ²⁾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기본세율)

주: 1)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소득세법 §88제9호, 동법 시행령 제152조외4)를 의미

2)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득세법 §88제9호)를 의미

1. 기본세율은 6~45%(소득세법 §104①1, §55①)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및 규제 완화 취지의 정책 발표

- (취득세) 2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 미적용 및 3주택 이상자 세율 인하는 국회 논의 중⁶⁾
 - (현행)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해 유형별로 중과세율 적용 (개인 1세대 2주택 이상 시 8~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 (개정안) 3주택자(조정지역 내 2주택) 8%→4%, 법인·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주택) 12%→6%

6) 추경회의원안(2021.1.29. 발의, 의안번호 2107758) 및 정부 수정의견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제403회 국회(임시회), 2023.2.15.)에서 심사

- (종합부동산세)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⁷⁾에 대한 세율 인하는 국회 논의 중⁸⁾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서 2주택 이하일 경우 기본누진세율(0.5~2.7%),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누진세율(0.5~5.0%)을 적용하고 있음(「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 (개정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7) ①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②공익법인, ③주택조합, ④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⑤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⑥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⑦종중, ⑧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8) 류성걸의원안(2023.1.30.발의, 의안번호 2119702) 및 고용진의원안(2023.2.2.발의, 의안번호 2119770)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제403회 국회(임시회), 2023.2.14.)에서 심사

조세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1. 배경

2022년 12월 23일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개정세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회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34건¹⁾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세법개정 법률안 17건이 각각 12월 23일과 28일에 의결
 - ▶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 이어 12월 28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세 관련 2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2022년 세법개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불안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등 취지의 입법이 주류를 이룸

- 세부적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으로 구성

표 1 2022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개정방향	주요 개정내용
경제활력 제고	- 법인세율 인하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 가업승계세제 완화
민생 안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조세인프라 확충 등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1) 2022년 신규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은 260건으로, 기존에 계류 중이던 법률안 74건을 합한 334건을 심사

2.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가. 소득세 분야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 및 고소득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축소

- (주요 내용) 소득세율 6~24%의 적용을 받는 8,800만원 이하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축소
 - ▶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표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현행)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조정구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그 외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1인당 50만원 → 20만원
- (취지 및 효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율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13.3조원(연평균 △2.7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2020년 귀속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총신고인원 중 46.8%(911.5만명), 종합소득세 총신고인원 중 38.5%(302.0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5년말까지 연장하면서, 공제한도 통합, 신규공제 추가 등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 구간의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통합하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허용

표 3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

개정 전				개정 후(현행)			
* 기본공제 한도				*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만원)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20%, 300)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20%, 300)		
7천만원~1.2억원	250			7천만원 초과	250		
1.2억원 초과	200						
* 추가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7천만원 이하	100	100	100	7천만원 이하	300		
7천만원 초과	100	100	-	7천만원 초과	200		-
				*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신설(7월부터 적용) - 도서·공연 등과 같이 30% 공제 적용			

주: 2023년 사용분 기준

- (취지 및 효과) 제도 단순화 및 대중교통비 등 부담 경감
 - ▶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기존 공제한도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를 활성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6년간 △8.9조원(연평균 △2.2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월세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무주택근로자 등의 월세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 무주택근로자나 성실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12%에서 15~17%로 상향
 - ※ 공제율: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0% →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 17%
 - 공제한도: 750만원(동일)

- ▶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취지 및 효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 최근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하여 전·월세시장의 불안정, 임차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 거주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3,946억원(연평균 789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재산요건을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 ※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요건: 1.4억원 이상 → 1.7억원
 - ▶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 한도 인상

표 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한도 인상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지급액 한도	근로 장려금 (만원)	단독	150	165
		홀별이	260	285
		맞벌이	300	330
	자녀(1인당) 장려금	홀별이	- 총급여 2,100만원 이하: 70만원 * 총급여 2,100~4,000만원의 경우, 급여에 따라 50~70만원 지급	- 총급여 2,100만원 이하: 80만원 * 총급여 2,100~4,000만원의 경우, 급여에 따라 50~80만원 지급
		맞벌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70만원 * 총급여 2,500~4,000만원의 경우, 급여에 따라 50~70만원 지급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80만원 * 총급여 2,500~4,000만원의 경우, 급여에 따라 50~80만원 지급

- (취지 및 효과)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 ▶ 최근 물가상승률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가구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4조 6,663억원(연평균 9,333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²⁾

- (주요 내용)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 미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
 - ※ 세율: 기본세율(6~45%) + 중과세율(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 (취지 및 효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
 - 최근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한시적 유예조항에 따라 주택의 매물출회를 유도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나. 법인세 분야

법인세 세율 인하

- (주요 내용)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p 인하
 - 현행 4단계 과표구간을 유지하면서 각 과표구간별 세율을 1%p씩 인하

표 5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단위: %)

과표구간	개정 전	개정 후(현행)
2억원 이하	10	9
2~200억원	20	19
200~3,000억원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 (취지 및 효과)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증진 및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
 - 법인세율 인화로 투자를 증진하고, 해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부담을 통해 투자유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15.7조원(연평균 3.1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2.28.)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우대공제 적용기술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및 우대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p 상향
 - ▶ 중견기업의 일반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일반시설 투자: 3% → 5%,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5% → 6%

표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현행)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3	10	3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3	3	6	12	3
국가전략기술	6	8	16	4	8	8	16	4

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자: 2023.2.28.)에 따라 기술범위 확대

- ▶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확대³⁾
 - ※ 국가전략기술: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기술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기존 260개 기술에서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 기술 추가(272개)
- (취지 및 효과)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핵심기술 등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7년간 9,127억원(연평균 3,969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 (주요 내용)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 ▶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던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적용
 - ※ 2023년의 경우, 개정 전·후의 제도 중 유리한 제도에 대하여 선택하여 적용 가능

3)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2.28.)

표 7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개정 전				개정 후(현행)	
* 일반법인 (단위: %)				* 모든 법인 (단위: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50~	100
30~100	50	50~100	50	20~50	80
~30	30	~50	30	~20	30
* 지주회사 (단위: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100	80~	100		
30~40	90	50~80	90		
~30	80	~50	80		

▶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률 95%) 도입

※ 해외자회사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율 10%(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보유한 법인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소득(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취지 및 효과)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해외유보자금의 국내 송금 제고

- ▶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하여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었던 익금불산입률 규정을 단순화함에 따라 납세법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익금불산입률을 확대하여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개선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도입하여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유입을 제고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3조 7,370억원(연평균 7,474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

● (주요 내용) 기존 고용 관련 개별 세액공제 조항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 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4개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4)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2.28.)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¹⁾

개정 전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3년간)		중견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²⁾³⁾	700	70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연령: 15~29세, ()안은 공제혜택 기간

*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등 인건비 × 공제율

(단위: %)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등*	30	15

* 경력단절여성(2년간) 및 육아휴직 복귀자(1년간) 포함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인원 × 공제율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단위: %)

공제율	중소기업
상시근로자(2년) ²⁾³⁾	5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2년)	100

* 전기통신업 및 인쇄물 출판업 등 75%

개정 후(현행)

*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3년간)		중견 (3년간)	대기업 (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²⁾³⁾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연령: 15~34세³⁾, ()안은 공제혜택 기간

**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주점 등)에 대해 미적용³⁾

* 추가공제: 정규직전환 등 증가인원 ×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전환자(1년) 및 육아휴직 복귀자(1년)	1,300	900

주: 1) 단,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후의 제도 중 유리한 제도에 대하여 선택하여 적용 가능
 2)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는 제외
 3)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정의, 청년연령 확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2.28.)

● (취지 및 효과) 고용지원 제도의 통합·단순화를 통한 기업 고용확대 지원

- ▶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여 기업의 세액공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고용유인을 강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7년간 9,267억원(연평균 2,317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율을 상향
 - ▶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

표 9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개정 전	개정 후(현행)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	지방광역시·대도시	5년 100% + 2년 50%	5년 100% + 2년 50% * 위기지역: 7년 100% + 3년 50%
	그 외	7년 100% + 3년 50%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10년 100% + 2년 50%

주: 위기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을 포함

- (취지 및 효과) 기업의 성장촉진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성장촉진 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7년간 4,870억원(연평균 1,217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주요 내용) 일반법인 및 연결법인 등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규정된 일반법인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80%로 확대
 - ※ 중소기업은 기존과 같이 이월결손금 한도 100% 적용
- (취지 및 효과) 공제한도 상향을 통한 이월결손금 보유 법인의 세부담 완화
 -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8,016억원(연평균 1,603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 한정

- (주요 내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로 연장하면서,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제한
 - ▶ 기업의 당기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한정
- (취지 및 효과) 대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유인
 - ▶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할 유인을 증가

다. 재산세 분야

가업승계세제 확대

-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 ▶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별로 100억원씩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등 확대

표 10 가업승계세제 확대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현행)
가업상속공제	* 적용대상(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사후관리 - 기간: 7년간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유지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100% 이상 유지 - 80% 이상 자산유지	* 적용대상(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사후관리 - 기간: 5년간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60% 이상 자산유지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과세특례 내용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사후관리 - 기간: 7년간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과세특례 내용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사후관리 - 기간: 5년간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납부유예

- (취지 및 효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투자·고용유인 제고
 - ▶ 가업승계세제 요인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경제활성화 및 투자·고용효과 증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 (주요 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 ▶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일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 기존 6단계 과표구간을 7단계로 분화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을 인하

표 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인하

(단위: 억원, %)

		개정 전		개정 후(현행)		
기본공제금액	개인	일반	6		9	
		1세대 1주택자	11		12	
	법인	없음		없음		
세율 (개인 기준) ³⁾	과표구간	2주택 이하 ¹⁾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²⁾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0	
	25~50억원			1.5	3.0	
	50~94억원	2.2	5.0	2.0	4.0	
	94억원 초과	3.0	6.0	2.7	5.0	

주: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로 구분
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2주택 이하로 구분
3) 법인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따른 최고세율을 적용

- (취지 및 효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 ▶ 최근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중과세율을 완화하여 주택 보유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일부 완화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7년간 5.6조원(연평균 1.1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증권거래세율 인하 일정 조정

- (주요 내용)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⁵⁾
 - ▶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 대비 0.08%p 인하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율(코스피 0.08 → 0%, 코스닥 0.23 → 0.15%)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22년) 0.08 → ('23년) 0.05 → ('24년) 0.03 → ('25년 이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이후) 0.15
- (취지 및 효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함에 따른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 조정
 - ▶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를 조정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10.9조원(연평균 2.2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라. 소비세 등 기타 분야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 (주요 내용) 휘발유·경유 및 부탄가스 등 유류소비에 과세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3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5~37% 인하
 - ▶ 휘발유: 529원/ℓ → 396.7원/ℓ (△25%), 경유: 375원/ℓ → 238원/ℓ (△37%),
부탄가스: 275원/kg → 176.4원/kg (△37%)
- (취지 및 효과) 유류비용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주체의 유류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

다자녀가구의 승용자동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주요 내용)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승용자동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취지 및 효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3,317억원(연평균 663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5) 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1.1.)

맥주, 탁주 등 주세 세율 계산식 개편

- (주요 내용) 맥주, 탁주 등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반영
 - ▶ 주세율 변동: (맥주) 855.2→885.7원/ℓ(+30.5원), (탁주) 42.9→44.4원/ℓ(+1.5원)⁶⁾
- (취지 및 효과) 물가상승이 주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 기존에 맥주·탁주 등 종량세 주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세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폭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로 완화하여 반영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⁷⁾

- (주요 내용) 제조자가 승용차 등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제조장 반출가격 추계치로 변경
 - ▶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여 적용
- (취지 및 효과)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인하효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와 실질적으로 제조장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받는 수입제조물품과의 과세 불형평성 개선

관세 부과시의 과세환율 변경⁸⁾

- (주요 내용) 관세부과시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 ▶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 1%p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 (취지 및 효과) 기업의 세부담 경감
 - ▶ 최근 원자재 및 제품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과세환율을 변경하여 경감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간 4,622억원(연평균 879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6) 주세율 변동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23.4.1.부터 적용

7)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시행일자: 2023.2.28.)

8) 2022년 정기국회 이전에 의결된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22.9.18.부터 시행된 사항

3.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간 64.4조원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법개정에 따른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에 주로 기인
 - ▶ 2023년 세수 감소효과는 6.0조원으로, 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1.6조원), 증권거래세율 인하(△0.9조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0.9조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0.8조원)에서 발생
 - ※ 세수효과('23~'27년): 법인세율 인하 △15.7조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 △13.3조원
증권거래세율 인하 △10.9조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 △5.6조원

표 12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3~2027년

(단위: 조원)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누적 (‘23~’27년)
계	-6.0	-14.4	-14.6	-14.5	-14.8	-12.9	-64.4
소득세	-3.6	-5.1	-4.0	-3.4	-3.4	-3.9	-19.4
법인세	-0.4	-6.2	-6.6	-7.0	-7.2	-5.5	-27.4
증권거래세	-0.9	-1.7	-2.7	-2.8	-2.9	-2.2	-10.9
종합부동산세	-0.8	-1.2	-1.2	-1.2	-1.2	-1.1	-5.7
기타	-0.3	-0.2	-0.2	-0.1	-0.1	-0.2	-0.9

주: 세수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 기준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9) 세수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 기준. 단,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가결법률안 재정소요점 검토는 일부 차이가 존재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박 지 원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2)

1. 논의 배경

소득세는 2012~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

- 국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2.6%에서 2021년 33.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비율은 22.6%에서 20.5%로 하락하였고, 부가가치세도 27.4%에서 20.7%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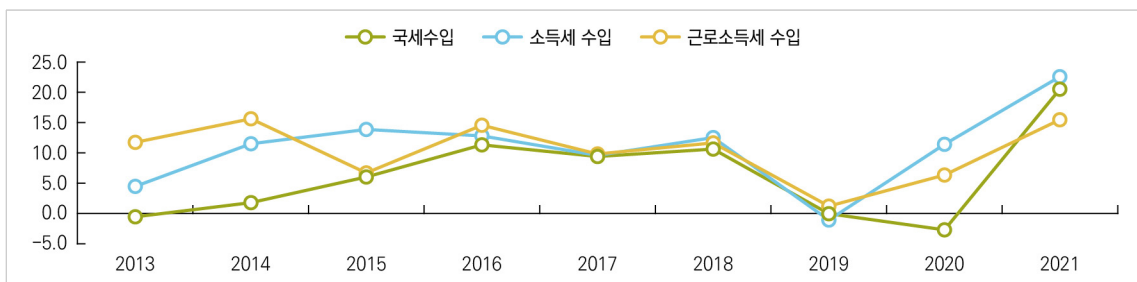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연평균 10.2%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며, 2021년은 전년대비 15.5%(6.3조원) 증가해 2012~2020년의 평균 증가액(2.7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확대

-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21년 평균 44.8% 수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2012~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4%(3.0조원) 증가, 2021년 19.3%(8.5조원) 증가

본고는 지난 10년 동안의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요인을 4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한편, 동 분석을 통해 2021년 증가세 확대에 예년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 2012~2021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세 증가요인을 신고자 수 변화, 평균소득의 변화, 소득구간별 평균실효세율 변화 및 소득구간별 소득비중(소득분포) 변화 등 4가지 요인으로 분해하고, 2021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2021년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 예년과는 다른 특이 요인이 작용했는지 살펴봄

그림 1 국세수입과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분석 개요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자료(2012~2021년 귀속)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수입 변동요인을 과세기반의 변화와 평균 실효세율 변화 요인으로 분해하고, 각 변화 요인에 대해 분석

-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당해연도 과세기반(총급여액)과 평균 실효세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먼저 근로소득세 증가요인을 과세기반과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개 요인으로 분해
- 과세기반의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인원과 신고자의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요인으로 분해
- 평균 실효세율의 변화는 제도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나타내는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와 소득분포의 변화를 나타내는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분해
 - ▶ 평균 실효세율은 평균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소득세 제도가 변화(명목세율 및 공제제도의 변화 등)하는 경우, 또는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평균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분포가 변화하는 경우에 변화
 - ▶ 예를 들어, 고소득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이 높은 소득구간의 소득 비중이 상승하고, 실효세율이 낮은 소득구간의 소득 비중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소득분포가 변화하는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상승
 - ▶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각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에 소득구간별 소득비중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개의 요인으로 분해하였으며, 동일 소득구간 내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유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제도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로 전체
- 분석자료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근로소득세 신고현황자료 활용
 - ▶ 국세통계연보의 2012~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기준의 근로소득세수 변동요인을 분석
 - ▶ 참고로, 최근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공개되었으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자 수 및 소득구간별 총급여액 등의 신고현황 통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공개 예정으로 활용 불가

3. 근로소득세 변동요인 분석

가.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

2012~2021년 기간동안 과세대상 소득인 총급여액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각각 연평균 6.2%, 11.4% 증가

- 신고인원은 2012년 1,572만명에서 2021년 1,991만명으로 연간 1.5~3.8% 증가
- 총급여액은 연간 4.0~7.7% 증가했으며, 2021년은 7.6%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간 7.3~14.0% 증가했으며, 2021년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19.3% 증가
 - ▶ 매년 결정세액은 연간 2.2~3.9조원씩 증가하였으나, 2021년은 전년대비 8.5조원 증가
 - ▶ 2021년은 총급여액의 높은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

표 1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총급여액(과세소득) 및 결정세액 변화율(귀속연도 기준)

(단위: 만명,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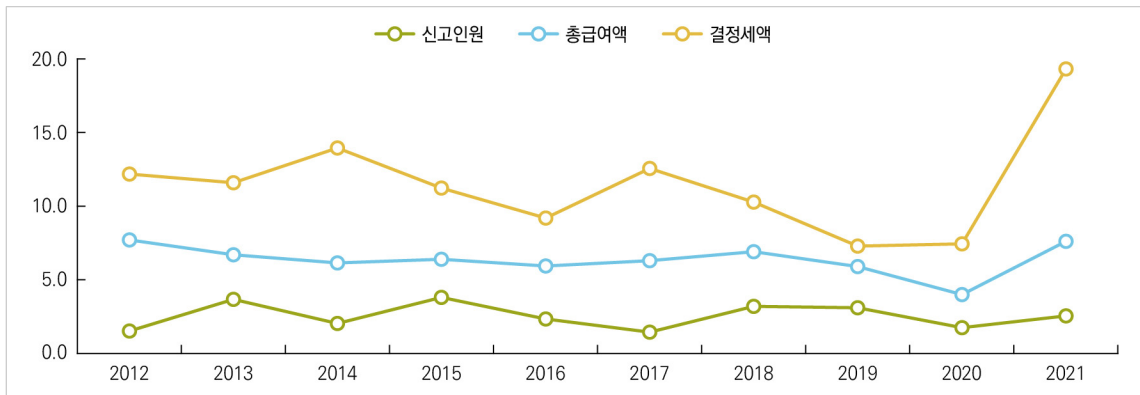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신고인원	1,572	1,630	1,663	1,726	1,767	1,793	1,850	1,907	1,941	1,991
	총급여액	467	498	529	563	596	634	677	718	746	803
	결정세액	20	22	25	28	31	35	38	41	44	53
	실효세율	4.3	4.5	4.8	5.0	5.2	5.5	5.7	5.7	5.9	6.6
증가율	신고인원	1.5	3.7	2.1	3.8	2.3	1.5	3.2	3.1	1.8	2.6
	총급여액	7.7	6.7	6.2	6.4	6.0	6.3	6.9	5.9	4.0	7.6
	결정세액	12.2	11.6	14.0	11.2	9.2	12.6	10.3	7.3	7.5	19.3
	실효세율	4.2	4.6	7.4	4.5	3.1	5.9	3.1	1.3	3.3	10.9
규모의 증감	신고인원	23.6	57.9	33.5	63.3	40.5	25.7	57.6	57.4	33.6	49.7
	총급여액	33.4	31.3	30.6	33.8	33.5	37.6	43.9	40.0	28.8	56.9
	결정세액	2.2	2.3	3.1	2.9	2.6	3.9	3.6	2.8	3.1	8.5
	실효세율	0.17	0.20	0.33	0.22	0.15	0.30	0.17	0.07	0.19	0.64

주: 신고인원은 총급여 신고인원 수, 실효세율은 총급여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연도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근로소득세 변동요인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평균 실효세율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보다 과세기반의 확대가 세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12~2021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는 과세기반 확대가 56.6%, 평균실효세율 상승이 43.4%를 설명
 - ▶ 2012~2021년 기간 중 대부분의 연도에서 평균 실효세율의 변화보다 과세기반(신고인원 및 평균소득) 변화의 영향력(51.7~81.6%)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2019년은 과세기반 확대가 근로소득세수 증가의 81.6%를 설명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 2019년은 실효세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화 및 명목 임금상승률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기반 요인이 세수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
- 그러나 2014년과 2021년은 평균 실효세율의 변화가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2021년은 평균 실효세율 변화의 영향력이 각각 54.3%와 58.4%로 과세기반 변화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2014년과 2021년의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이 각각 7.4%, 10.9%로 예년(1.3~5.9%)에 비해 높았던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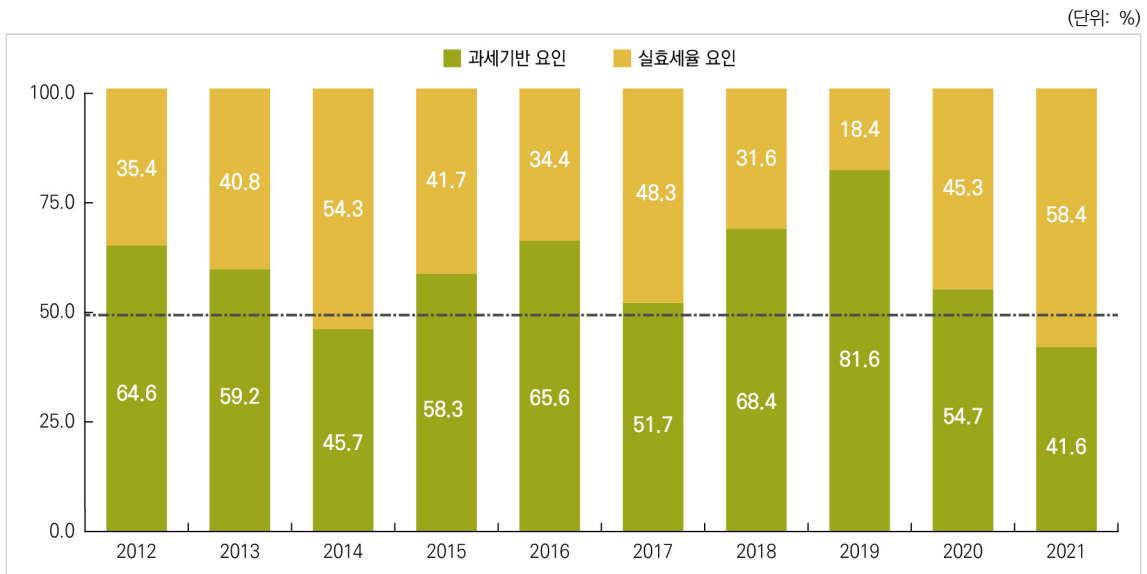
표 2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동요인 분해

연도	결정세액 증가 (조원)	기여분(조원)		기여율(%)	
		과세기반 요인	평균 실효세율 요인	과세기반 요인	평균 실효세율 요인
2012	2.2	1.4	0.8	64.6	35.4
2013	2.3	1.4	0.9	59.2	40.8
2014	3.1	1.4	1.7	45.7	54.3
2015	2.9	1.7	1.2	58.3	41.7
2016	2.6	1.7	0.9	65.6	34.4
2017	3.9	2.0	1.9	51.7	48.3
2018	3.6	2.4	1.1	68.4	31.6
2019	2.8	2.3	0.5	81.6	18.4
2020	3.1	1.7	1.4	54.7	45.3
2021	8.5	3.5	5.0	41.6	58.4
2012~2016	13.1	7.6	5.5	57.9	42.1
2017~2021	21.8	12.2	9.7	55.7	44.3
2012~2021	34.9	19.7	15.2	56.6	43.4

주: 과세기반 요인은 평균 실효세율이 일정할 때 과세기반의 변화가 세수 변동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평균 실효세율 요인은 과세기반이 일정할 때 평균 실효세율의 변화가 세수 변동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동요인 분해: 기여율 변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세기반의 변화를 신고자 수 변화와 평균소득의 변화 요인으로 분해하면, 평균소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12~2021년 기간 동안 과세기반 확대는 신고자 수 증가가 40.9%, 평균소득 증가가 59.1%를 설명
 - ▶ 분석기간 중 총급여 신고인원 수¹⁾ 증가가 가장 컸던 2013년, 2015년, 2019년은 신고자 수 변화가 과세기반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평균소득의 변화가 과세기반 확대에 더 크게 기여
 - ▶ 분석기간 중 평균소득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²⁾은 평균소득의 변화가 과세기반 확대의 79.7%를 차지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나타냄

1) 2012~2021년 기간 중 총급여 신고인원 수는 연평균 44.3만명 증가했는데, 연도별로는 2015년(63.3만명), 2013년(57.9만명), 2018년(57.6만명), 2019년(57.4만명) 순으로 신고인원의 증가가 가장 컸음

2) 2012~2021년 기간 중 1인당 총급여액(평균소득) 증가율은 2012년 6.1%, 2013~2021년 2.2~4.9%

표 3 과세기반 변화 및 평균 실효세율 변화의 요인 분해

연도	과세기반 변화의 기여율(%)		평균 실효세율 변화의 기여율(%)	
	신고자 수 변화	평균소득 변화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
2012	20.3	79.7	33.1	66.9
2013	55.6	44.4	31.6	68.4
2014	34.1	65.9	67.7	32.3
2015	60.2	39.8	20.7	79.3
2016	40.1	59.9	7.9	92.1
2017	23.6	76.4	14.2	85.8
2018	47.2	52.8	52.1	47.9
2019	53.2	46.8	39.8	60.2
2020	44.4	55.6	-11.2	111.2
2021	34.4	65.6	17.2	82.8
2012~2016	41.5	58.5	37.7	62.3
2017~2021	40.0	60.0	18.7	81.3
2012~2021	40.9	59.1	29.4	70.6

주: 1. 신고자 수 변화 요인은 1인당 평균소득이 일정할 때 신고자 수 변화가 과세기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평균소득 변화 요인은 신고자 수가 일정할 때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가 과세기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2.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요인은 소득구간별 소득비중(소득분포)이 일정할 때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가 전체 평균 실효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 요인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이 일정할 때 소득구간별 소득비중(소득분포)의 변화가 전체 평균 실효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평균 실효세율의 변화에는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보다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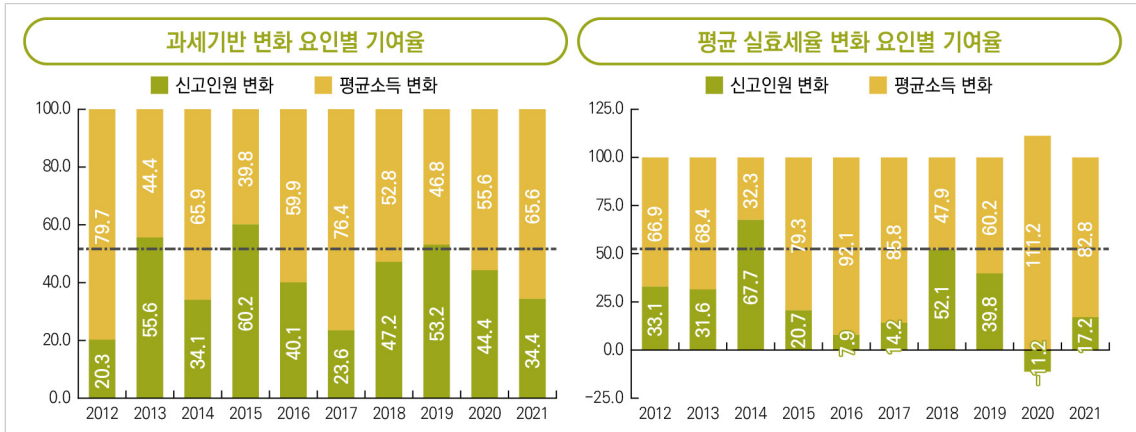
- 분석기간 동안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 대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의 기여율은 29.4%,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변화의 기여율은 70.6% 수준
 - ▶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소득구간별 소득비중의 변화가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체계를 따르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 수가 증가(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이 증가)하며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기 때문
 - ▶ 2014년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 세제개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역시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이 3억원과 5억원 이하 구간으로 재편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및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p 인상되는 등의 세제개편이 있었음
 - ▶ 2021년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2→45%) 등의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상 대상자 수가 적어³⁾ 제도적 요인보다는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 상승에 의한 평균 실효세율 상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임

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소득 기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약 3,800명

- ▶ 2012년 이후 기간을 전반기(2012~2016)와 후반기(2017~2021년)로 구분해서 보면 전반기(62.3%)보다 후반기(81.3%)에 구간별 소득비중 변화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과세기반 및 실효세율 변화 요인별 기여율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비중의 변화가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총급여 6천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평균 실효세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연도로 갈수록 평균 실효세율 상승을 주도한 소득구간이 고소득구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12~2015년은 6천만원 초과 구간, 2016~2020년은 8천만원 초과 구간, 2021년은 1억원 초과 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실효세율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분석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21년은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2021년은 주로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에서 소득비중이 상승하였는데,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2012~2020년 기간 동안 연간 0.43~0.77%p씩 소득비중이 상승하였으나 2021년은 1.95%p 상승하였으며,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같은 기간 매년 0.03~0.18%p씩 소득비중이 상승하였으나 2021년은 0.54%p 상승, 10억 초과 구간도 예년(-0.17~0.14%p)에 비해 큰 폭(0.26%p)으로 상승
 - ▶ 2021년 총급여액 1억원 초과 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은 해당 소득구간의 신고인원 수 증가에 기인

표 4 총급여규모별 소득비중의 변화(전년대비 변화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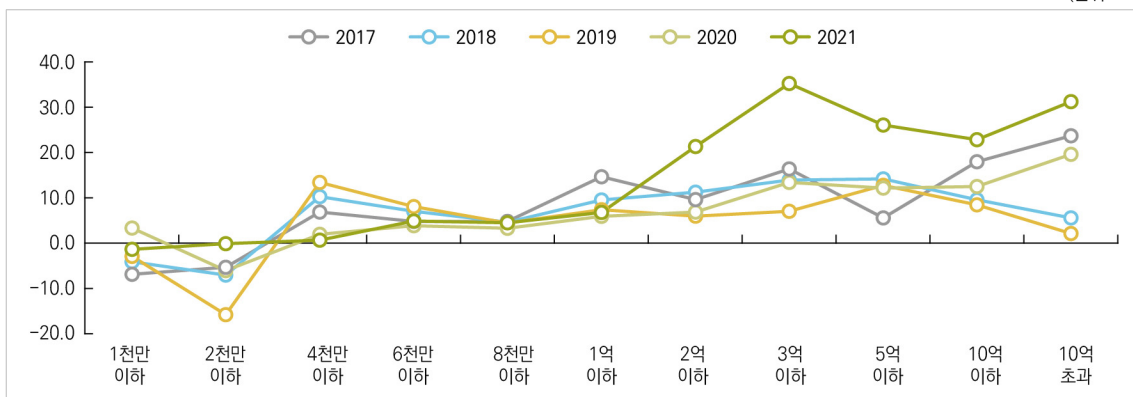
총급여 규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천만원 이하	-0.99	-0.27	-0.53	0.05	-0.37	-0.40	-0.22	-0.18	-0.02	-0.14
2천만원 이하	0.04	-0.46	-0.42	-0.59	-0.57	-1.00	-1.06	-1.85	-0.64	-0.43
4천만원 이하	-0.32	-0.41	0.17	-0.61	0.21	0.15	0.70	1.62	-0.35	-1.54
6천만원 이하	-0.19	-0.19	-0.01	-0.77	-0.37	-0.30	0.02	0.39	-0.02	-0.51
8천만원 이하	0.56	0.27	0.07	0.41	-0.04	-0.22	-0.33	-0.21	-0.11	-0.44
1억원 이하	0.22	0.23	0.04	0.59	0.50	0.74	0.26	0.16	0.21	-0.07
2억원 이하	0.60	0.69	0.56	0.77	0.44	0.51	0.58	-0.02	0.43	1.95
3억원 이하	0.13	0.06	0.03	0.09	0.10	0.15	0.12	0.03	0.18	0.54
5억원 이하	0.04	0.05	0.06	0.08	0.03	-0.01	0.08	0.08	0.10	0.24
10억원 이하	-0.03	0.04	0.01	0.02	0.03	0.09	0.01	0.02	0.08	0.13
10억 초과	-0.06	0.00	0.01	-0.05	0.05	0.29	-0.17	-0.03	0.14	0.26

주: 연간 총급여액 중 각 소득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변화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 총급여규모별 신고인원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난 10년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해보면, 평균소득의 증가와 상위소득 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가장 크게 기여

- 지난 10년 간 근로소득세 증가는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보다 과세기반 확대의 영향이 컸으며, 과세기반 확대에는 신고자 수 증가보다 평균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
-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은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소득 분포의 변화)이 더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연도로 갈수록 소득비중 변화에 대한 기여율이 확대되는 모습

- 특히 2021년의 경우 구간별 소득비중의 가파른 변화가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8.5조원)의 거의 절반(4.1조원)을 설명하므로 2021년 근로소득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표 5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대한 4가지 요인별 기여도

(단위: %, %p)

	결정세액 증가에 대한 기여율 ¹⁾					결정세액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²⁾				
	과세기반		평균 실효세율		합계	과세기반		평균 실효세율		합계
	신고자수 변화	평균소득 변화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신고자수 변화	평균소득 변화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소득구간별 소득비중	
2012	13.1	51.5	11.7	23.7	100.0	1.6	6.3	1.4	2.9	12.2
2013	33.0	26.3	12.9	27.9	100.0	3.8	3.0	1.5	3.2	11.6
2014	15.6	30.1	36.7	17.6	100.0	2.2	4.2	5.1	2.5	14.0
2015	35.1	23.2	8.7	33.1	100.0	3.9	2.6	1.0	3.7	11.2
2016	26.3	39.3	2.7	31.6	100.0	2.4	3.6	0.2	2.9	9.2
2017	12.2	39.5	6.9	41.4	100.0	1.5	5.0	0.9	5.2	12.6
2018	32.3	36.1	16.5	15.2	100.0	3.3	3.7	1.7	1.6	10.3
2019	43.4	38.2	7.3	11.1	100.0	3.2	2.8	0.5	0.8	7.3
2020	24.3	30.4	-5.1	50.3	100.0	1.8	2.3	-0.4	3.8	7.5
2021	14.3	27.3	10.1	48.4	100.0	2.8	5.3	1.9	9.3	19.3
2012-2016	24.0	33.9	15.9	26.3	100.0	17.6	24.8	11.6	19.3	73.3
2017-2021	22.3	33.4	8.3	36.1	100.0	15.8	23.6	5.9	25.5	70.8
2012-2021	23.1	33.4	12.8	30.7	100.0	45.3	65.5	25.0	60.1	196.0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동분에 대한 과세기반 및 평균 실효세율의 기여율을 구한 후, 과세기반 기여율에 각 요인(신고자수 변화, 평균소득 변화)별 기여율을 곱하고, 평균 실효세율 기여율에 각 요인(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구간별 소득비중 변화)별 기여율을 곱하여 4개 요인의 기여율 산출

2) 연도별 결정세액 변동분에 4개 요인별 기여율을 곱하여 추정한 결정세액 변동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분을 바탕으로 결정세액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2021년 근로소득 증가 요인 분석

2021년 근로소득세 상승의 주 요인인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은 고소득자 비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근로소득 증가에 예년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지 살펴봄

- 사업체노동력조사⁴⁾의 연간 월평균 임금에 종사자 수(근로자 수)를 곱하여 추정한 연간 임금총액⁵⁾을 바탕으로 2021년 임금증가의 특징을 살펴봄

4)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사업체의 노동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표본조사이며, 국제통계는 업종별·사업체규모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수 및 총급여액(근로소득)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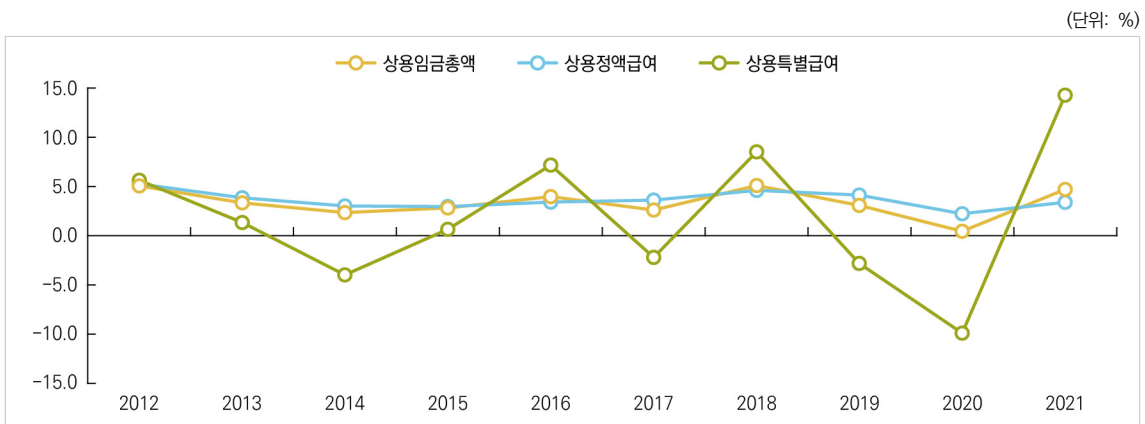
5) 상용근로자수 및 임시·일용근로자수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추정

-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의 종사자 수 및 임금은 근로소득세 신고자 수 및 총급여액(과세소득)과 포괄 대상 및 범위가 다르지만, 업종별·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수와 평균임금 수준, 급여유형별(정액급여/특별급여 등)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2021년 소득증가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전년대비 종사자수 감소(-0.03%)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20년 1.1%, '21년 4.6%)에 기인하여 임금총액(추정치)은 전년대비 4.5% 증가
 - ▶ 국세통계연보 기준의 증가 추이⁶⁾와는 차이가 있으나 2020년과 비교해 2021년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2021년 변화에 주목하여 임금총액 증가의 특징을 살펴봄

2021년은 전체 임금총액 증가분 중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했고,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

- 2021년은 정액급여 상승률(2.2%→3.4%)보다 특별급여 상승률(-9.9%→14.3%)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임금총액 증가분에서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
 - ▶ 전체 임금총액 증가분 중 정액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75~96% 수준이었으나 2021년은 57%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에서 39%로 확대

그림 6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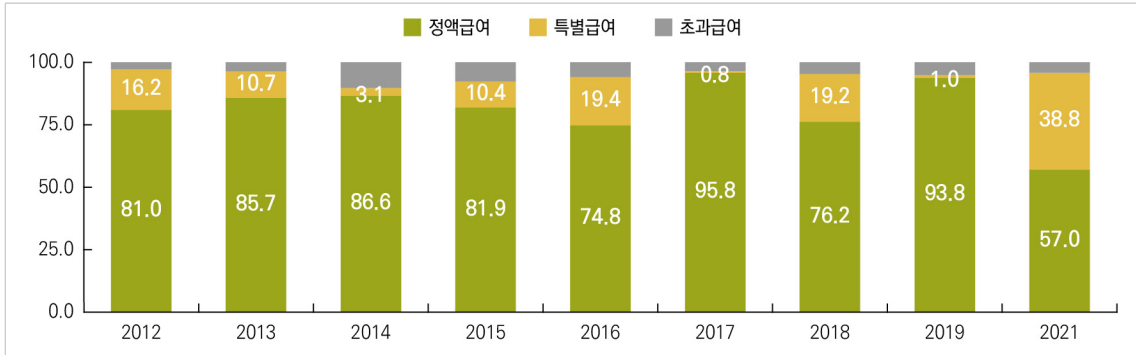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2021년 귀속 총급여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2.6% 증가, 총급여액은 7.6% 증가

그림 7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증가에 대한 급여유형별 기여율 추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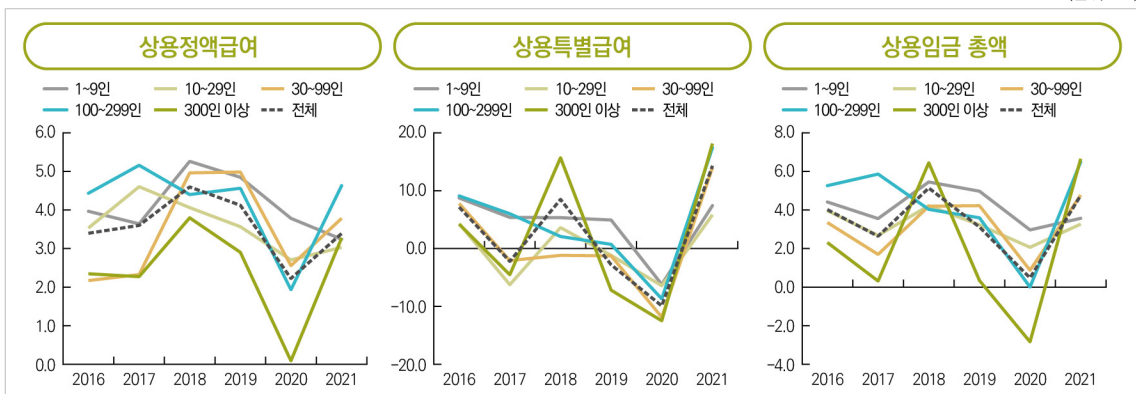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수에 급여유형별 평균 급여액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연간 상용임금총액 추정 후, 상용임금총액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급여유형별 기여율을 산출
 2. 2020년은 상용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급여유형별 기여율에 편차(정액급여 -228%, 특별급여 306%)가 크고 음의 값이 존재해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업체별로는 종사자 수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급여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
 - ▶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의 경우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2020년 대비 2021년 임금상승률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 특별급여 역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산한 상용임금총액의 임금상승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각각 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8 사업체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임금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에 대한 업종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했으며, 과거 임금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던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여율은 하락
 - ▶ 2016~2019년 기간 중 전년대비 임금총액 증가폭이 가장 크고,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5.3%)도 가장 높았던 2018년과 비교하면⁷⁾, 2021년의 경우 제조업의 기여율이 26.6%로 가장 큰 가운데 2018년보다 비중이 확대되었고, 2016~2019년 평균 비중보다는 약 10%p 상승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보험업')의 기여율은 2018년 33.2%에서 2021년 52.9%로 확대
 - ▶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하 '음식·숙박업'), 건설업의 기여율은 2018년 24.2%에서 2021년 -2.0%로 크게 하락

표 6 임금근로자 임금총액 증가분의 주요 업종(10개 업종)별 기여율 추정

(단위: %)

산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16~2019 평균 ²⁾
합계	80.1	76.8	90.2	83.3	85.5	82.6
제조업	16.1	15.5	25.4	11.0	26.6	17.0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9.9	15.1	14.5	16.1	19.8	13.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0.7	2.0	10.4	11.7	15.6	8.7
정보통신업	3.7	3.6	3.7	4.8	10.2	4.0
금융·보험업	3.0	2.1	4.6	5.0	7.3	3.7
운수·창고업	4.8	3.0	3.0	2.7	5.4	3.4
교육 서비스업	4.3	5.0	4.4	3.4	2.6	4.3
도소매업	12.9	18.2	11.8	12.7	2.2	13.9
건설업	12.0	7.5	6.4	9.2	1.2	8.8
음식·숙박업	2.9	4.7	6.1	6.8	-5.5	5.1

주: 1. 상용임금총액 및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의 전년대비 증가분에서 각 업종별 임금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2. 대분류기준 총 18개(농림어업 제외)개의 산업 중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중이 높은 10개 업종 제시

3. 2020년은 전년대비 임금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임금이 감소한 업종은 양의 비중값을 나타내고, 임금이 증가한 경우 음의 비중값을 보이며, 업종별 기여율에 편차(제조업 -235%, 보건·사회복지 -197% 등)가 커 [표]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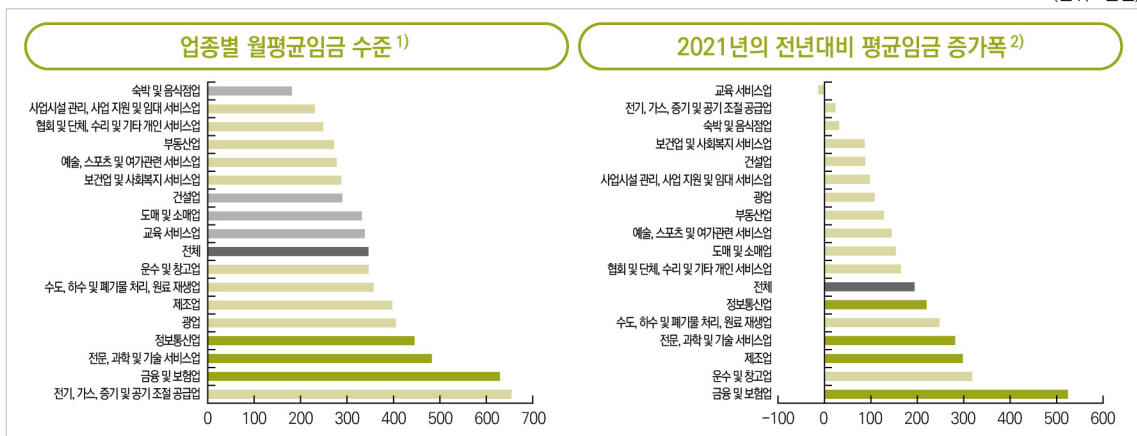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2018년은 제조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건설업 순으로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았으나, 2021년은 제조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높게 나타남

- ▶ 한편, 2021년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의 임금 증가분을 급여유형별로 구분하면, 정액급여보다 특별급여 증가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 임금상승을 주도한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경우 18개 산업 중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에 속하며, 2016~2019년에 비해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하락한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은 평균임금 수준이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은 업종이 속함

그림 9 업종별 임금수준 및 임금 증가폭 비교

(단위: 만원)



주: 1) 2017~2021년의 연도별 월평균 임금의 평균값을 사용

2) 업종별 월평균 임금을 연간 임금(=월평균임금×12)으로 환산하여 사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한편, 지난 10년 간 산업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⁸⁾에서도 분석기간 동안 연구개발업, 전자부품 제조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등 고임금 산업에서는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회복지 및 교육서비스업 등 저임금 산업에서는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산업별 임금 프리미엄 격차가 확대된 것이 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

종합해 보면, 2021년은 예년과 비교하여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했으며,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증가가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즉,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증가가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 상승으로 이어져 평균 실효세율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보임

8) 이종하·오상일(2023),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한국은행 조세통계월보, pp.3~16.

- ▶ 실효세율이 높은 소득구간의 소득비중이 상승하고, 실효세율이 낮은 소득구간의 소득 비중이 낮아지면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는데, 2021년은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실효세율도 큰 폭으로 상승
- ▶ 2021년은 신고자 수 증가(2.4%)보다 임금상승(1인당 총급여액 증가율 4.9%)의 영향으로 전체 총급여액의 증가세(7.6%)가 확대된 가운데, 총급여액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실효세율 상승세가 확대되어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임
- ▶ 2020년 이후 기업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도 근로자의 총급여액 증가 및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폭 확대에 기여
- 실제 명목세율을 결정짓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별 신고인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2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7 소득세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인원 비중 변화

(단위: %)

과세표준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¹⁾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천만원 이하	49.2	46.7	44.6	42.1	42.4	39.3 (-3.1)
4.6천만원 이하	40.1	41.9	43.4	45.6	45.0	46.7 (+1.7)
8.8천만원 이하	8.4	8.9	9.3	9.5	9.6	10.3 (+0.7)
1.5억원 이하	1.7	1.9	2.1	2.1	2.2	2.7 (+0.5)
3억원 이하	0.4	0.5	0.5	0.5	0.6	0.8 (+0.2)
5억원 이하	0.09	0.09	0.10	0.11	0.12	0.14
10억원 이하	0.04	0.04	0.04	0.04	0.05	0.06
10억원 초과	0.01	0.01	0.01	0.01	0.02	0.02

주: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신고인원 비중 증가 폭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결론 및 시사점

2012~2021년의 근로소득세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43.4%)보다 과세기반의 확대(56.6%)가 근로소득세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과세기반 확대에는 신고자 수 증가보다 평균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
-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는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이 더 크게 기여하였고, 최근 연도로 갈수록 소득비중 변화의 기여율이 확대되는 모습

2014년과 2021년 경우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이 근로소득세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였는데, 2014년은 제도변화가, 2021년은 고소득자 비중 증가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가 평균 실효세율 상승을 주도했다는 차이가 있음

- 2014년은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 변화로 평균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
 - ▶ 분석기간 중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21년(10.9%), 2014년(7.4%)으로, 나머지 기간은 1.3~5.9%의 증가율을 보임
- 2021년은 고소득자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평균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
 - ▶ 실효세율이 높은 구간의 소득 비중이 상승하고, 실효세율이 낮은 구간의 소득 비중이 낮아지면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는데, 상위 소득구간의 소득비중 증가폭이 클수록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폭도 커짐
 - ▶ 분석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증가와 함께 고소득자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분포가 변화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해온 측면이 있는데, 2021년은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실효세율의 상승을 견인
 -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 비중 증가폭(전년대비): 2012~2020년 0.1~0.3%p, 2021년 0.9%p
 -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 비중 상승폭(전년대비): 2012~2020년 0.1~0.9%p, 2021년 3.1%p
 - *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액) 상승폭(전년대비): 2012~2020년 0.15~0.33%p, 2021년 0.64%p

2021년 고소득자 비중 증가는 평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임금 산업과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한 데 기인

-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증가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특별급여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 반면, 평균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크게 하락('18년 24.2%, '21년 -2.0%)
-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급여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2020년 이후 기업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업의 특별급여 확대도 근로자의 총급여액 증가 및 상위 소득구간에서의 소득비중 상승폭 확대에 기여

종합해 보면, 2021년 근로소득세의 큰 폭 증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 기업영업실적 호전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일시적 요인, 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 천 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8)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비교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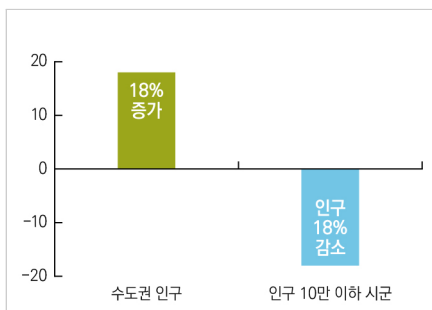
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내용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도입 배경)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한 새로운 자원확보로 지방의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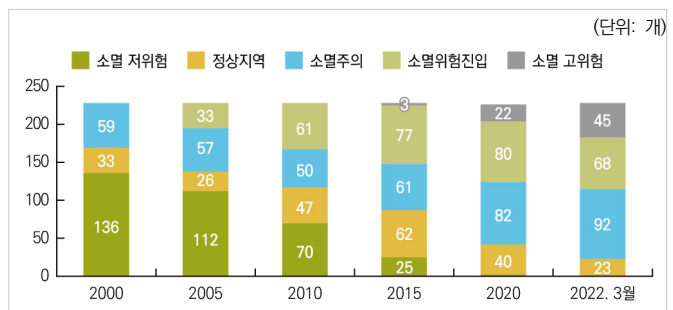
- 수도권 인구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소멸위험지역이 2005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3곳에서 2022년 3월 현재 그 절반에 가까운 113개로(49.6%)로 증가

그림 1 지역 인구감소(2000년~2020년 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2 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 수(시·군·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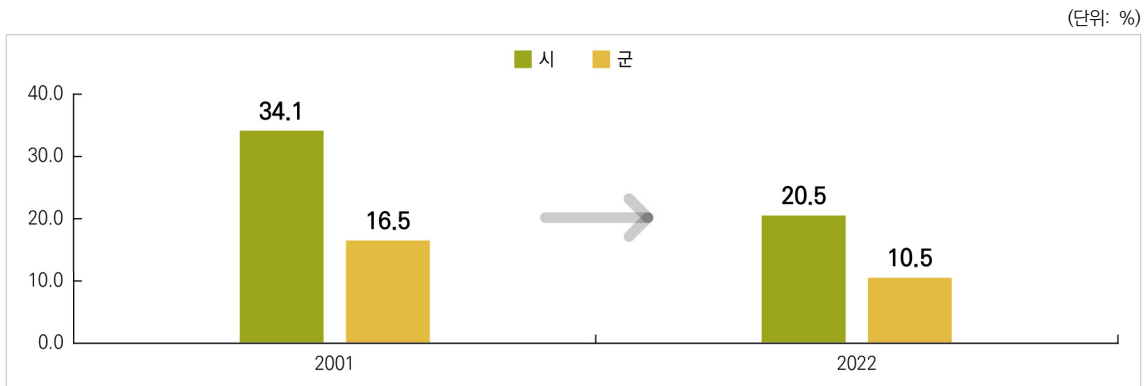


자료: 이상호,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불호(통권3호), 한국고용정보원, 2022.4.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la.re.kr/>, 고향사랑기부제) 참조

- 이러한 재정여건 악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계속하여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2001년 이후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시는 34.1%에서 2022년 20.5%로 13.6%p 하락하였고 군의 경우에는 2001년 16.5%에서 2022년 10.5%로 6%p 하락

그림 3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1년/2022년)



주: 산정기준은 당초 예산기준

자료: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도입 경과) 2009년 최초 법안 발의 후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의 큰 진전 없이 이어져 오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2020.9.22.)²⁾이 국회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공포 2021.10.19., 시행 2023.1.1.)

- 2009년 최초발의 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 2009.3.13.) 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가 있는 자에게 고향투자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2009년 이후 제18대 국회 2건, 제20대 국회 1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됨
- 2017년까지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방식과 ‘기부금’ 형태의 법안들이 혼재되어 발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기부금’ 형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화³⁾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도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9월 22일 심의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간 계류되었다가 2021년 9월 24일 심의 의결됨

2) 이개호의원(2020.6.3.)·김태호의원(2020.7.2.)·한병도의원(2020.7.23.)·이원욱의원(2020.8.18.) 등이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및 김승남의원 대표발의(2020.7.7.)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시 위원회 대안법안(「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으로 가결 되었음

3) 홍근식 외 2인,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2019. 12. pp.193~197.

그림 4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경과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나. 주요 내용

(기부자 및 기부처) 기부자(개인만 가능)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예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서울특별시(본청)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고향사랑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e음 정보시스템(온라인), 지방자치단체 지정금융기관(농협)에서 신청가능

(답례품 제공)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답례품은 지역특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및 지역상품권 등 다양⁴⁾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16.5%(종합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를 세액공제⁵⁾

- 1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 - 기부금 $\times$ 100/110, 지방소득세 기부금 $\times$ 10%
- 10만원 초과 500백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 - 10만원 $\times$ 100/110 + (기부금 - 10만원) $\times$ 15%
지방소득세 - 소득세 공제액 $\times$ 10%

4)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www.ilovegohyang.go.kr/>)에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 확인 가능

5)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입법미비 사항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2025.1.1.→2023.1.1.)과 관련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임

그림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기부·모금 강요의 금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해당 기관 및 공무원은 처벌

- 위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고,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사용)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그림 6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영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가. 도입목적 및 주요 개정 연혁

(도입목적 및 경과)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制度)는 지방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등의 감소에 대응하고 지방과 수도권(대도시)과의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

- 고향납세제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2001~2006년)에서 마련된 삼위일체 개혁⁶⁾ 이후 확대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서 출발
 - ▶ 관공서, 기업, 인구, 세수입 등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대도시)으로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산업쇠퇴,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삼위일체 개혁으로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 대도시와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 후쿠이현(福井県) 니시카와 잇세이(西川一誠)지사는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된 세수 일부를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향기부금공제'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무성 내의 고향사랑 연구회의 논의⁷⁾를 거쳐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제도 신설
 - ▶ 2006년 니시카와 지사의 제안은 지방 출신 도시 거주자가 기부를 통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에 보답한다는 인식⁸⁾하에 출발
 - ▶ '고향납세'는 국민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간 세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구조는 국민이 세제상 직접 관련성이 없는 타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기부(특수한 형태⁹⁾)이지만 고향납세 형식으로 납부하고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자가 기납부(고향납세)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¹⁰⁾

(주요 개정연혁)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 도입 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 적용 하한액 인하 등 4차례의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짐¹¹⁾

6) 삼위일체 개혁(국고보조금, 세원이양,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일반 재원화(교부세화)하거나 삭감하고, 세원이양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혁임. 대표적인 세원이양은 국세인 소득세의 세원을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로의 이양임(세율 조정: 국세인 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10~37%)을 6단계 누진세율(5~40%),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는 3단계 누진세율(5~13%)에서 과세소득 관계없이 일률 10% 적용)

7) 2007년 6월에 총무성에 의해 'ふるさと納税研究会'가 출범되고, 2007년 10월에 동 연구회의 논의 결과가 '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로서 정리(日本総務省, 「ふるさと納税研究会会議資料・開催案内等」, 2007.)

8) 대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태어나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 육아, 의료, 교육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았으나, 대학 진학 및 취업을 통해 대도시로 이주하여 생활함. 그 결과 자신이 태어나 자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은 하지 않고 취업 후 거주하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세부담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9) 기부금의 특수한 형태라고 한 이유는 통상적인 기부금은 거의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고 환급되지 않지만, 고향납세 기부금은 자기부담금(현재 2,000엔)의 초과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형태로 반대급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10) 이와 같은 성격으로 '고향기부'이라는 용어가 아닌 '고향납세'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1) 이 부분은 佐藤良, 「ふるさと納税の現状と課題」, 「調査と情報」 No.1147, 国立国会図書館, 2021. 4. pp. 4~6. 및 日本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를 참조하여 작성

-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는 개인(법인제외)이 선택한 임의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할 경우 답례품(금액적 제한이 없음)과 납세액 가운데 자기부담금(5,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확정신고 시 소득세 및 개인 주민세 세액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출발
- 2012년 고향납세 보급 확대를 위해 고향납세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세액공제 적용 하한액(자기부담금)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¹²⁾
- 2015년 제2차 아베정권(安倍政權)의 지방창생(地方創生) 국정과제¹³⁾ 추진의 하나로 개인주민세 특별공제분을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윈스톱특례제도 도입
 - ▶ 윈스톱특례제도란 납세자가 고향납세를 한 후 추가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2016년 지방창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고향납세 허용¹⁴⁾
-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경쟁 방지를 위해 고향납세 지정제도 도입
 - ▶ 고향납세 지정제도는 고향납세 개인주민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신청에 의해 총무대신(総務大臣)이 지정하며¹⁵⁾, 고향납세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총무대신의 권고사항¹⁶⁾을 준수해야 함

표 1 고향납세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혜택 차이

구 분	개인주민세 특례분 적용 여부	권고사항 준수 여부
고향납세 지정 지방자치단체	○ (주민세 소득할액의 20%)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을 납부액의 30% 범위에서 제공하고, 답례품은 지역내 생산 또는 서비스에 한정)
고향납세 비지정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개인은 개인주민세 특례분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에 대한 금액 및 생산지에 제약을 받지 않음)

12) 고향납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 하한액(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13)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지방의 창조적 재생을 말하며, 이는 지방소멸이란 위기위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마련하였음. 지방창생정책의 기본 방향은 마을, 사람, 일자리의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의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제정되었음

14) 법인은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応援税制)로 분류하며, 이는 기업이 지역재생계획(地域再生計画) 상의 사업에 기부를 행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일부를 법인주민세 등에서 세액공제(기부금의 세부담 경감비율은 현행 최대 90%)하는 제도임

15) 2022년 9월 현재 고향납세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전체 지방자치단체수	지정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지정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	47	46	46
시구청촌(市区町村)	1,741	1,739	1,739
합계	1,788	1,785	1,785

주: 1. 지정대상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2. 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단체: 東京都, 兵庫県, 洲本市(2022년 4월 지정취소), 宮崎県 都農町(2022년 1월 지정취소)

자료: 日本 総務省 보도자료(“ふるさと納税指定制度に係る総務大臣の指定”, 2022.9.22.)

16) 총무대신의 권고사항은 고향납세 답례품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 이하,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정

나. 주요 내용

(고향납세의 납부 주체 및 납부처) 일본의 고향납세 납부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자신이 선택한 임의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가능

- 납부대상에는 납부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지만, 이 경우 답례품은 제공되지 않음
- 고향납세의 한도액은 없음
 - ▶ 다만, 일반적으로 공제한도에 맞춰 납부하며, 공제한도는 소득세의 경우 총소득의 40%, 개인주민세(기본분)는 총소득의 30%. 개인주민세(특별분)은 소득할액의 20%로 규정
- 고향납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고향납세 전용 무통장입금 용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납입통지서 등에 의해 납부하거나, 소득세(주민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는 주민세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특례제도 이용

(답례품 제공) 답례품 제공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총무대신은 납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

- 답례품은 농수산물 및 특산품(농수산물, 전통주 등), 체험형 답례품(로컬철도 운전 체험, 숙박권 등), 배려형·기증형 답례품(제설작업 체험 참가, 장애인시설 생산 상품, 상품성 없는 과일 등), 관계형 답례품(빈집 관리대행 등)¹⁷⁾

(세액공제) 고향납세액 가운데 2,000엔(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상한액까지 공제¹⁸⁾

- ▶ ① 소득세: [(고향납세액 - 2,000엔) × 소득세율(0~45%)]¹⁹⁾

17)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관련 ふるなび 홈페이지 참조(<https://furunavi.jp/>)

18)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 과세표준 및 부과징수가 다음과 같이 달리 되고 있음. 이는 과세표준 결정 및 부과징수가 과세관청(국세 세무서, 지방세 도(현)세사무소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국세 - 소득세	•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지방세 - 개인주민세	• 전년도 소득금액
신고(부과) 및 납부(징수)	국세 - 소득세	• 소득세의 확정방식은 신고납세방식 • 신고납부 - 사업자 등(종합소득세 신고자)은 3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 급여자 원천징수: 매달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매년 10월~11월 필요서류 회사에 제출하여 12월~1월 급여에 반영
	지방세 - 개인주민세	• 개인주민세 확정방식은 부과과세방식 • 개인주민세(10%): 도부현민세(광역자치단체) 4%, 시정촌민세(기초자치단체) 6% • 부과 및 징수: 시정촌이 도부현민세 포함하여 일괄처리 - 일반사업소득자: 매년 5~6월 부과결정 후 납부서 고지(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 8월, 10월 다음 해 1월 각각 납부) - 급여소득자: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시정촌에 납부

- ▶ ② 개인주민세(기본분): (고향납세액 - 2,000엔) × 10%
- ▶ ③ 개인주민세(특례분): (고향납세액 - 2,000엔) × [100%-10%(기본분)-소득세율(0~45%)]
- ▶ ①과 ②에서 공제되지 못한 기부액은 ③에 의해 전액 공제(소득세의 20% 한도)

그림 7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고향납세 기부금 30,000엔			
자기부담액 2,000엔	공제액 28,000엔		
	소득세^{주1)} (소득공제에 의한 경감) 5,600엔 =(3만엔-2천엔) × 20%^{주3)}	개인주민세 세액공제(기본분)^{주2)} 2,800엔 =(3만엔-2천엔) × 10%	개인주민세 세액공제(특례분) 19,600엔 =(3만엔-2천엔) × (100%-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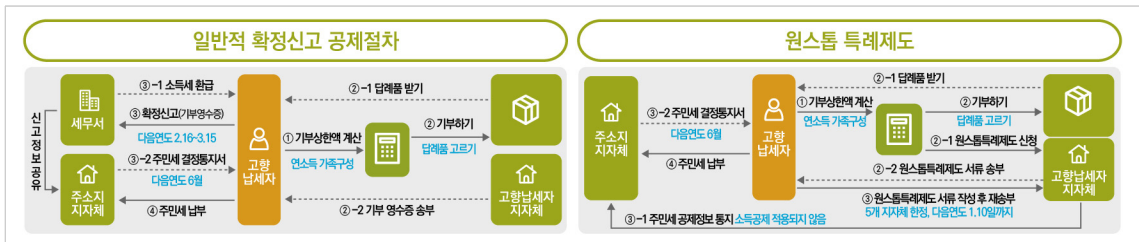
- 주: 1. 고향납세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은 소득세의 경우 총소득 금액의 40%가 한도임
 2. 개인주민세(기본분)의 경우 총소득 금액의 30%가 한도임
 3. 일본 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현행 0~45%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연간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자녀0명인 부부의 경우)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

자료: 日本 総務省 홈페이지(ふるさと納税のしくみ)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원의 사용) 고향납세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일반 재정사업에 사용되지만, 납세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고향납세 기부 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용 용도를 지정²⁰⁾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는 대체로 건강·의료·복지·교육·육아·지역부흥 및 산업부흥·환경·스포츠·문화진흥·관광·안전·방재·재해지원 및 부흥 등 다양

그림 8 고향납세의 확정신고 공제절차



자료: 전성만,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설명 및 활성화 전략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간담회 자료, 2023. 2.15.

19) 2037년까지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 원칙적으로 그해 기준소득세액의 2.1%)를 가산한 세율임

20) 고향납세 모집시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746개 단체로 전체(1,788개 단체) 9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택할 수 없는 단체는 42개 단체로 2.3%에 불과함. 선택할 수 있는 단체 가운데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단체는 1,698 단체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단체도 460개 단체가 있음(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2022.7.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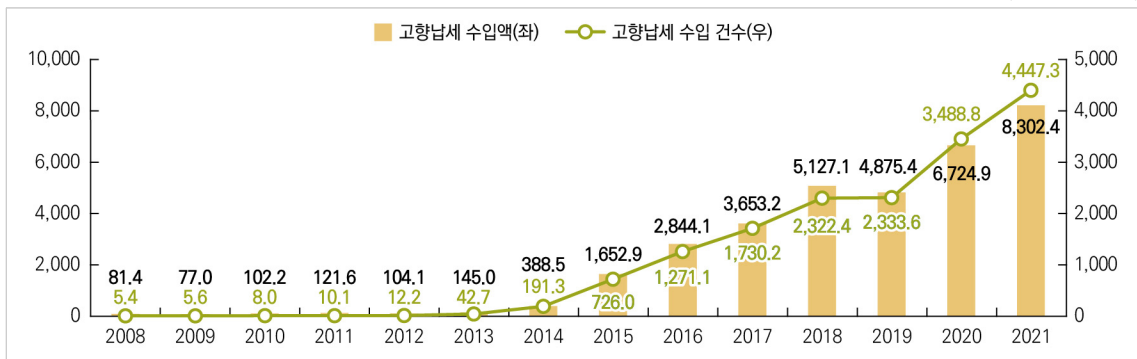
다. 현황

(고향납세 수입액 및 건수 추이) 2021년 기준 고향납세 수입액은 8,302.4억엔(4,447.3만건)으로 2008년 도입 당시 81.4억엔(5.4만건) 보다 100배 이상 증가²¹⁾

- 고향납세 수입액은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및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세액공제 적용 하한액을 5,000엔에서 2,000엔 인하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5년 ‘지방창생’ 정책·개인주민세(특례분) 공제인상·신용카드 납부 및 윈스톱특례제도 도입 등 납세환경 정비 이후 가파르게 증가

그림 9 고향납세 수입액 및 수입건수 추이

(단위: 억엔, 만건)



자료: 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2022.7.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향납세 순수입 현황) 고향납세 순수입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홋카이도(北海道)로 1,070억엔의 세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야자키현(宮崎県)이 443억엔·가고시만현(鹿児島県) 369억엔 순

- 반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1,379억엔, 가나가와현(神奈川県) -441억엔, 사이다마현(埼玉県) -268억엔 순으로 고향납세에 따른 순수출이 발생함

표 2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향납세 순수입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엔)

도도부현명	기부금 수입 (A)	주민세 공제액 (B)	기부금 순수입 (A-B)	도도부현명	기부금 수입 (A)	주민세 공제액 (B)	기부금 순수입 (A-B)
홋카이도 (北海道)	121,747	14,701	107,046	시가현 (滋賀県)	10,503	5,756	4,747
미야자키현 (宮崎県)	46,365	2,110	44,255	아오모리현 (青森県)	5,802	1,611	4,191

21) 참고로 2021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은 138.8조엔(도도부현 68.3조엔, 시정촌 70.5조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세수는 42.4조엔(도도부현은 22.2조엔, 시정촌은 20.2조 엔)을 나타내고 있음(日本 総務省 보도자료, “令和3年度普通会計決算の概要”, 2022.11.30.)

도도부현명	기부금 수입 (A)	주민세 공제액 (B)	기부금 순수입 (A-B)	도도부현명	기부금 수입 (A)	주민세 공제액 (B)	기부금 순수입 (A-B)
가고시마현 (鹿児島県)	40,023	3,128	36,895	에히메현 (愛媛県)	6,932	3,051	3,881
야마가타현 (山形県)	37,415	1,821	35,594	시마네현 (島根県)	4,559	1,090	3,469
사가현 (佐賀県)	35,000	1,799	33,201	미에현 (三重県)	9,012	6,278	2,734
후쿠오카현 (福岡県)	44,673	17,249	27,424	군마현 (群馬県)	7,853	5,257	2,596
야마나시현 (山梨県)	28,030	2,351	25,679	후쿠시마현 (福島県)	5,377	2,978	2,399
쿠마모토현 (熊本県)	25,583	3,577	22,006	오카야마현 (岡山県)	6,934	5,700	1,234
니가타현 (新潟県)	24,615	4,173	20,442	이시카와현 (石川県)	4,484	3,398	1,086
나가노현 (長野県)	24,170	4,686	19,484	도치기현 (栃木県)	6,162	5,102	1,060
시즈오카현 (静岡県)	28,028	12,091	15,937	효고현 (兵庫県)	29,007	28,052	955
와카야마현 (和歌山県)	17,346	2,726	14,620	교토부 (京都府)	13,049	12,181	868
이와테현 (岩手県)	14,826	1,697	13,129	도쿠시마현 (徳島県)	2,111	1,807	304
고치현 (高知県)	13,919	1,282	12,637	토야마현 (富山県)	2,357	2,423	-66
기후현 (岐阜県)	18,803	6,853	11,950	야마구치현 (山口県)	2,542	3,173	-631
이바라키현 (茨城県)	20,223	8,331	11,892	나라현 (奈良県)	2,730	5,856	-3,126
후쿠이현 (福井県)	12,565	1,913	10,652	히로시마현 (広島県)	4,636	9,353	-4,717
나가사키현 (長崎県)	13,235	2,691	10,544	치바현 (千葉県)	11,737	30,854	-19,117
미야기현 (宮城県)	16,180	6,325	9,855	오사카부 (大阪府)	25,806	46,504	-20,698
오이타현 (大分県)	9,659	2,324	7,335	아이치현 (愛知県)	19,430	42,420	-22,990
아키타현 (秋田県)	7,905	1,266	6,639	사이타마현 (埼玉県)	5,468	32,225	-26,757
오키나와현 (沖縄県)	9,354	2,782	6,572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15,502	59,574	-44,072
카가와현 (香川県)	7,768	2,842	4,926	도쿄도 (東京都)	4,961	142,870	-137,909
돗토리현 (鳥取県)	5,854	1,032	4,822	합 계	830,239	567,237	262,977

주: 1.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액은 도도부현분과 시구정촌분의 합계

2. 기부금 순수입은 자료의 한계로 단순히 주민세만 제외한 것으로 담례품 및 홍보비 등을 포함할 경우 순수입은 상기 금액보다 적음

자료: 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2022.7.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향납세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고향납세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답례품 조달 비용이 2,267억원 (기부금 수입 대비 27.3%)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 관련 비용이 712억엔(8.6%) 답례품 배송비용 637억엔(7.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제 관련 비용 187억엔(2.2%) 및 홍보 관련 비용은 49억엔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 모집 관련 비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엔)

구 분	금 액	기부금 수입 대비 비율
답례품 조달 관련 비용	226,733	27.3%
답례품 배송 관련 비용	63,686	7.7%
홍보 관련 비용	4,923	0.6%
결제 관련 비용	18,654	2.2%
사무 관련 비용	71,151	8.6%
합 계	385,148	46.4%

자료: 日本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2022.7.

3. 비교 및 시사점

가. 비교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지만, 제도상 차이 존재

- 우리나라는 순수한 기부금적 성격이 강하여 각 개별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이전의 성격이 강하여 별도의 규정 없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 규정을 둠
 - ▶ 우리나라는 법률 및 기금회계에 맞춰 기금사업 등이 운영되지만, 일본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기부사업 및 답례품 등에 대해 각 주체별 선택을 존중
- 우리나라는 기부대상을 개인에 한정하고 기부대상은 기부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 우리나라는 기부금(연간 500만원) 및 답례품 한도(기부금의 30%)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고향납세 기부 및 답례품에 대한 법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 다만, 일본은 일반적으로 고향납세 공제한도에 맞춰 고향납세 기부를 하며, 총무대신의 권고로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세인 소득세 공제 중심으로 국가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형태이지만, 일본은 주민세 공제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이 이전되는 형태

표 4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일본 고향납세 제도와의 비교

구 분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성격	• 순수한 기부금적 성격이 강함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이전의 성격이 강함
법적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세액공제 항목 추가
기부대상 및 주체	• 기부주체: 개인 • 기부대상: 기부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제외	• 기부주체: 개인 및 법인(지방창생응원세제) • 기부대상: 제한 없음(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포함, 단 답례품 미제공)
기부금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금액 한도 없음. 다만 공제상한액은 있음 [소득세 총소득의 40%, 주민세(기본분) 총소득 금액의 30%, 주민세(특별분) 2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이내 제한	• 제한 없음. 단 총무대신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권고
재원 이전	• 국세인 소득세 공제 중심 - 중앙 → 지방 이전(91%) - 지방 → 지방 이전(9%) * 세액공제 국가 부담 91%	• 지방세인 주민세 공제 중심 - 중앙 → 지방 이전(소득세율, 평균 23%) - 지방 → 지방 이전(주민세, 약 77%) * 소득에 따라 중앙·지방 비율이 상이하며, 지방부담 비율 높음
세액공제 방법	•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국세 소득세: 10만원×(100/110) - 지방세 지방소득세: 국세공제액×(10/100) [10만원 초과시: 16.5%] - 국세 소득세: 10만원×(100/110)+(기부액-10만원)×(15/100) - 지방세 지방소득세: 국세공제액×(10/100)	• 소득에 따라 공제상한액이 다름 - 국세 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2천엔)×소득세율 - 지방세: 주민세(기본분): (기부금-2천엔)×주민세율(10%) 주민세(특별분): (기부금-2천엔)×(100%-10%-소득세율) * 공제상한액 초과분부터 세액공제하지 않음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 해외제도 비교) 및 日本 総務省 홈페이지(ふるさと納税ポータル) 자료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시사점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약 10년간의 경험사례를 토대로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가 이루어졌음²²⁾

-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의 한도액(기부금의 30%) 설정
▶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물품으로 한정
-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한도액(연간 500만원) 설정²³⁾
- 기부·모금 강요 등을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고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2) 이하의 기부금 한도액 등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사항

23)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2021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2021.10.29. p.16.

고향사랑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등의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특산물의 판로 및 소비 확대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세수(지방세, 자주재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가교역할 기대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50% 이하²⁴⁾로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은 매우 낮음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필요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이 도시지역으로 이전되는 역류현상 및 기부재원 사용제한 등의 한계 존재

- 기부금이 농어촌지역에서 수도권 등 도시지역으로 이전되는 역류현상 발생 우려
 - ▶ 고향사랑기부는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 등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력 있는 답례품 또는 기부체험 등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경우 역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수도권 등의 도시지역으로 고향기부가 이전될 여지가 있음
 - ▶ 답례품으로 환금성이 높은 지역화폐(상품권)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등에 집중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민 또는 대도시지역의 주민(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허용)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부를 선호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원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4) 2022년 기준(당초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세종 포함, 평균 61.9%)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4.9%를 나타내고 있음(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재정지표-재정자립도)

재정추계&세제 이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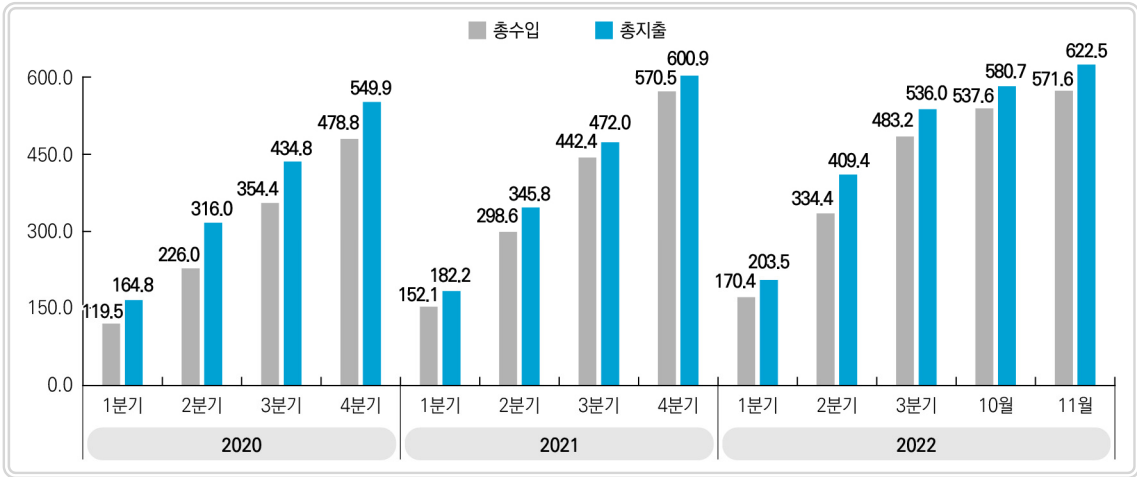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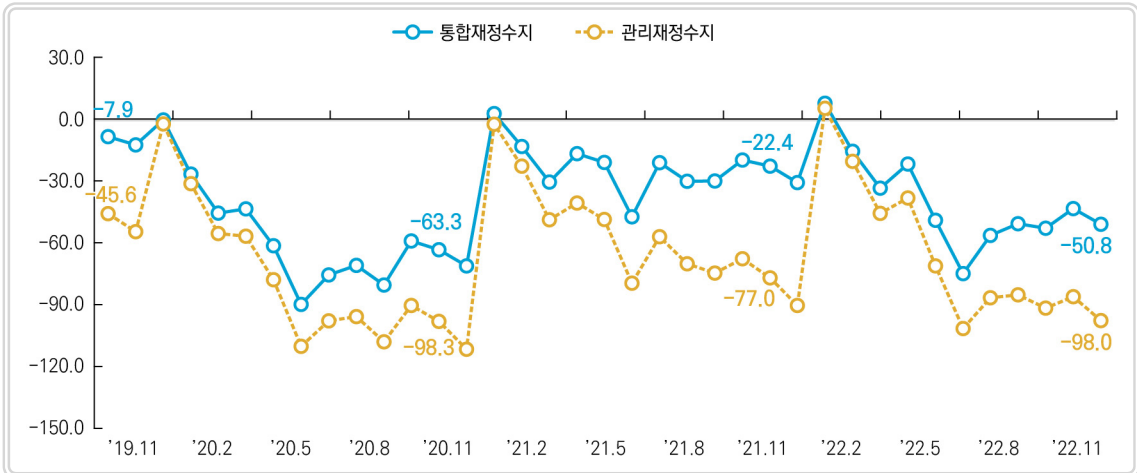


주: '22.12월 총수입·총지출은 정부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3.4월 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총수입·총지출 (www.nabostats.go.kr)

재정수지(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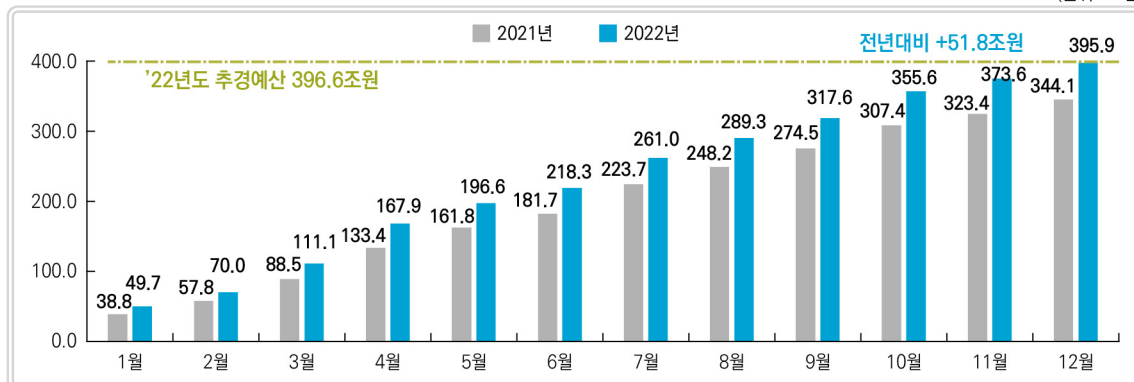


주: '22.12월 재정수지는 정부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3.4월 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재정수지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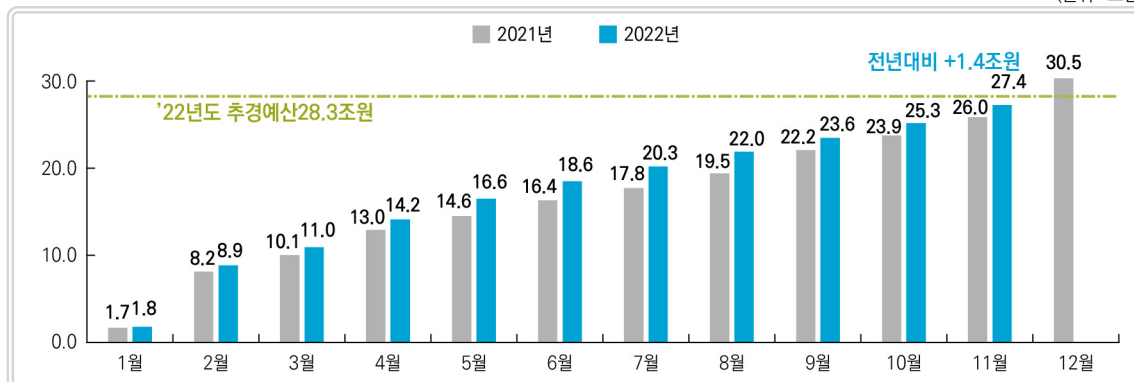
국세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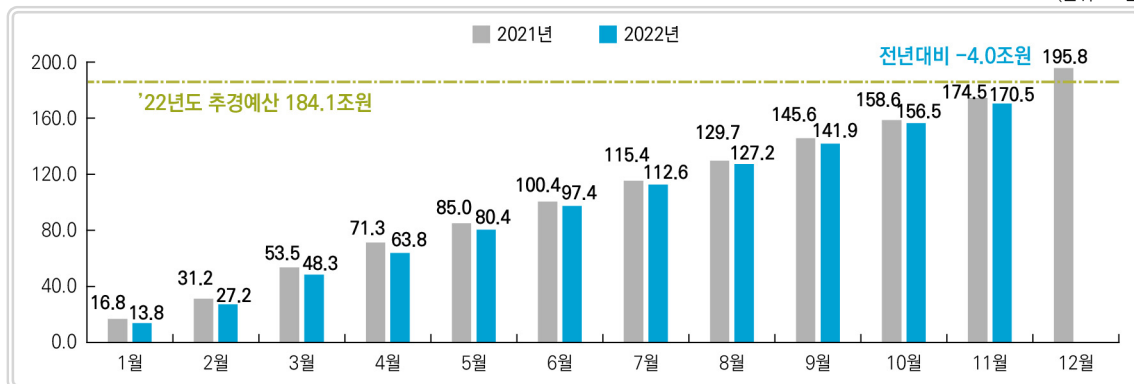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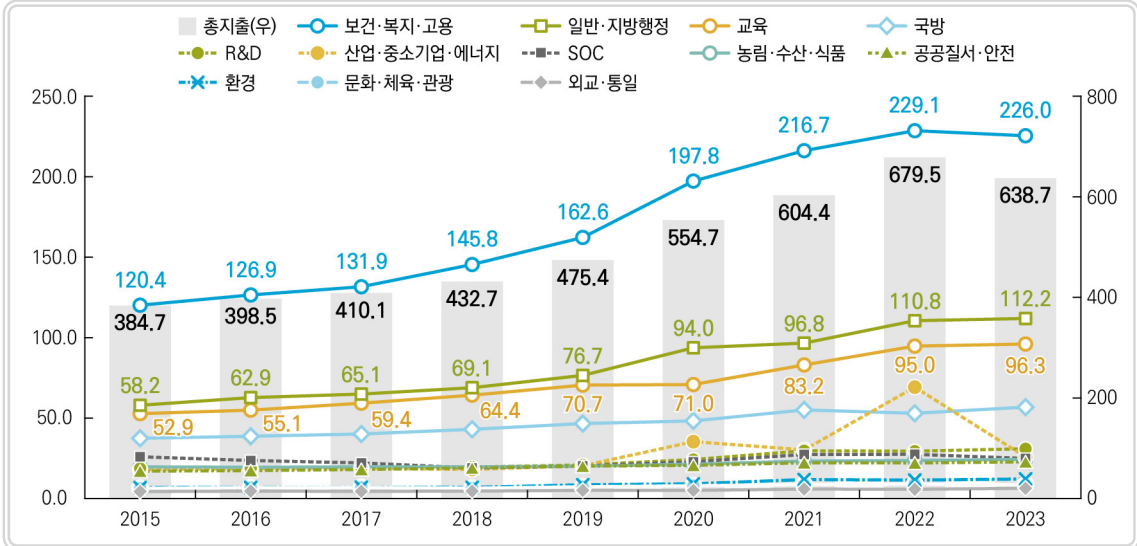


주: '22.12월 세외수입·기금수입 실적은 정부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3.4월 초)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진도율(월별 누계/전년동기대비) (www.nabostats.go.kr)

중앙정부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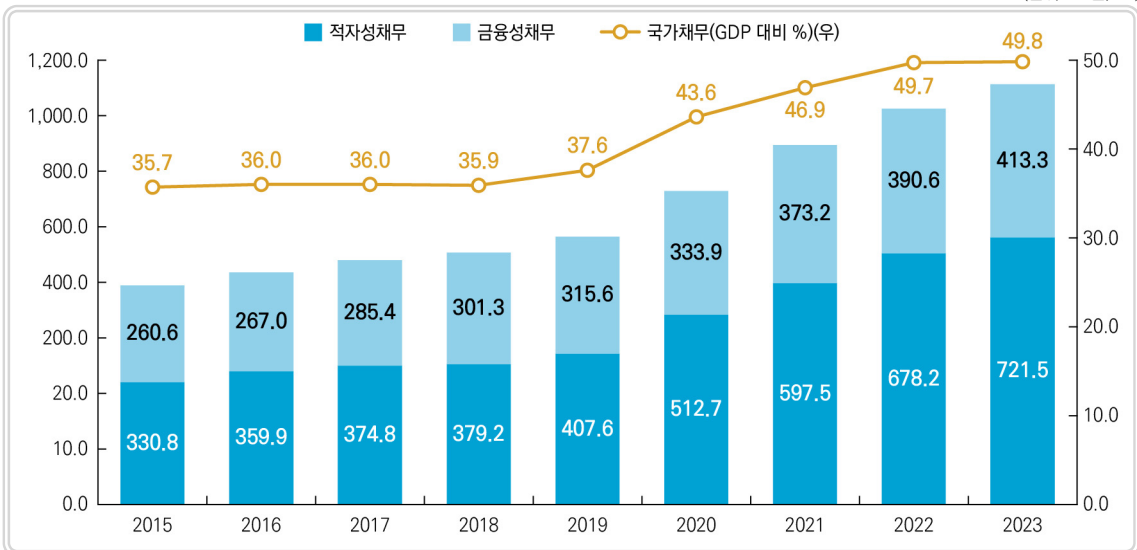


주: '20년까지 추경예산 기준, '21년 및 '22년 2차 추경예산 기준, '23년 본예산 기준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기타재정통계 - 분야별 예산 - 중앙정부 분야별 지출 (www.nabostats.go.kr)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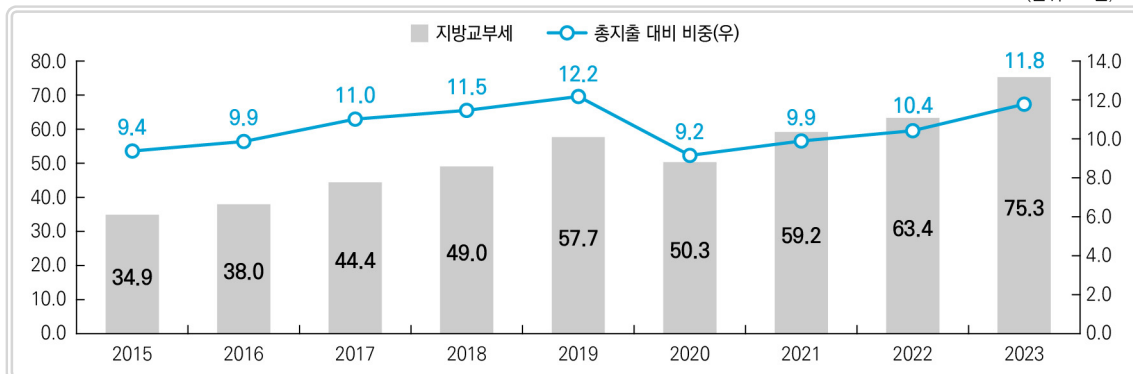
주: 1. '21년까지 결산 기준, '22년 2차 추경예산 기준, '23년 본예산 기준

2.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자원조성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국가채무추이(성질별)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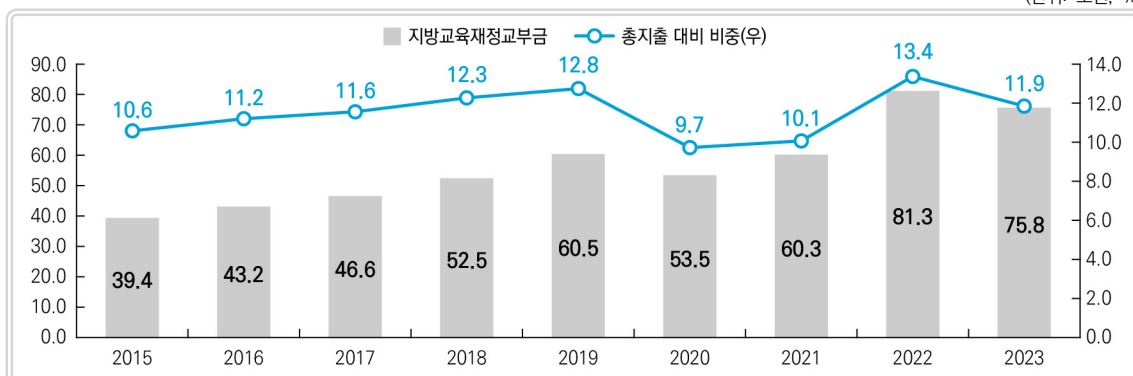
지방교부세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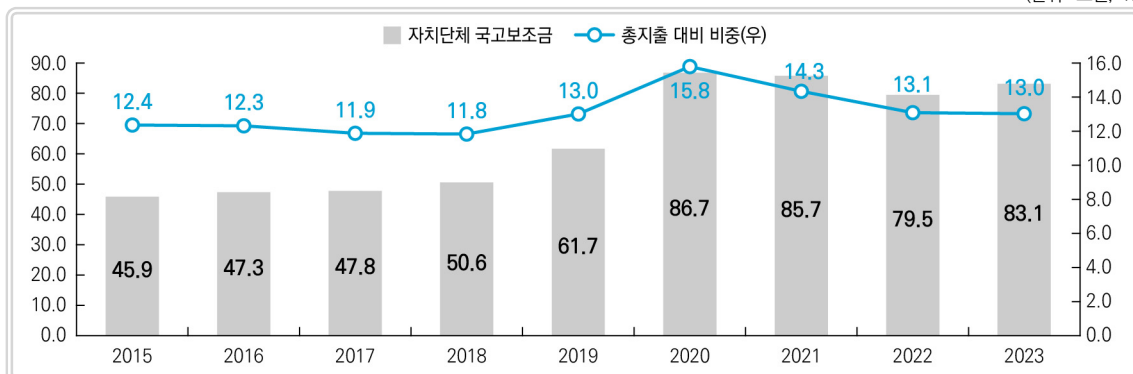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조원,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단위: 조원, %)



주: '21년까지 결산 기준, '22년 및 '23년 본예산 기준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지방재정 -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www.nabostats.go.kr)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3년 3월 1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